# 일자리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김주섭 · 이규용 · 박성재」



#### 2007 고용영향분석 · 평가 연구시리즈를 내면서

본 연구시리즈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중·장기 정책연구사업인 고용영향분석·평가사업의 첫 해(2007)년도 결과물이다. 경제의 세계화,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기술의 진보는 21세기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속성장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한편, 경제성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일자리창출을 이루지 못하는 '고용없는 성장(growth without employment)'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배태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the more the better job)'의 창출이 선진경제와 산업정책의 1차 목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도 2004년도에 '일자리 만들기'를 정부정책의 최우선과제로설정하고,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범부처적 일자리 창출정책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는 2006년 11월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마련하여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경제·산업, 노동시장, 교육정책의 연계체제를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과, 향후에도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고용전략의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창출이 경제·사회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정작 각종 정부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와 평가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산업기술개발,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균형 발전, 부품소재 산업육성,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 산업정책과 대외개방 정책 등은 고용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이나, 이들 정책의 고용 창출효과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고용정책기본법」제5조에 의하면, 노동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위해 국가의 중·장기 고용전략의 수립, 경제·산업정책에 대한 고용효과 분 석 및 고용관련 사업들에 대한 평가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리, 전담연구 기구에서는 고용전략 수립과 고용효과 분석을 통해 고용정책의 통합조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고용정책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며, 고용관련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해야할 것이다.

이에 본 사업은 (a)국가 고용전략의 수립 및 총괄 조정기능 구축을 위한 분석 · 평가기능 확립, (b)전담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고용영향분석 · 평가센터 구축 방안 연구, (c)고용영향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방법론의 개발과 관련 DB구축이라는 세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1차년도 고용영향분석·평가사업은 본 연구원의 방하남 선임연구위원의 총괄책임하에서 총 5개의 분과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각 분과별 구체적인 연구사업의 내용과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 총 괄: 사업총괄 및 고용영향분석·평가체계 구축(연구책임: 방하남 선임연구위원)
- 분과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전략 연구(연구책임: 김승택 선임연구위원)
- 분과 2: 산업정책의 일자리창출효과 분석(연구책임: 윤윤규 연구위원)
- 분과 3: 일자리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연구책임: 김주섭·이규용 연구위원)
- 분과 4: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현황과 발전전략(연구책임: 김주섭연구위원)
- 분과 5: 고용영향 분석·평가 방법론 연구(연구책임: 이인재·이규용 연구위원)

본 연구시리즈에 포함된 보고서들은 위에 열거한 각 분과사업들의 결과보고 서이다. 아무쪼록 1차년도 사업들의 연구결과들이 향후 고용영향분석·평가사업 의 지속적인 성공과 국가 고용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희망 한다.

## 목 차

I. 서론 ···································
II. 일자리 지원사업의 분류체계와 유형       5         1. 일자리 지원사업의 개념       5         2. 일자리 지원사업의 분류체계와 유형       10
III.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적 분석       47         1. 지원실적 현황       48         2. 취업 실적       56         3. 일자리 지원사업 평가       60
<ul> <li>Ⅳ. 일자리 지원사업 중복성 평가</li></ul>
V. 결론 ···································
참고문헌 101
<b>〈부록 1〉</b> 정책수단별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 103
<b>〈부록 2〉</b> 수혜집단별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

### 표목차

〈표 II-1〉OECD의 노동시장 관련 공공지출 분류와 정의 8
⟨௲ II-2⟩ Public expenditure in labour market programmes in OECD
countries
〈표 II-3〉 정책목표 대상별 사업분류 기준 ······ 12
〈표 II-4〉 정책수단별 사업분류 기준 ······ 13
〈표 II-5〉 수혜집단별 사업분류 기준 ······ 14
〈표 II-6〉고졸 미취업자(실업자) ······ 15
〈표 II-7〉대졸 미취업자(실업자) ······ 16
〈표 II-8〉고등학교 재학생 ····· 17
〈표 II-9〉 대학(원) 재학생 ····· 19
〈표 II-10〉 청년 실업자(미취업자) ······ 22
〈표 II-11〉 청년층 일반 ······ 24
〈표 II-12〉고령자 ······ 25
〈표 II-13〉여성(여성가장, 실업자) ····································
〈표 II-14〉 장애인 ······ 27
〈표 II-15〉 저소득자(기초생계비수급자, 차상위계층) ······ 28
〈표 II-16〉 장기실업자 ····· 29
〈표 II-17〉취약계층 일반 ······ 30
〈표 II-18〉여성(전업주부 등) ······ 31
〈표 II-19〉 실업자 ······· 32
〈표 II-20〉 전문인력 ······ 32
〈표 II-21〉국민 일반 ······ 37
〈표 II-22〉 재직근로자 ········· 42
〈표 III-1〉 정책수단별 지원금액과 지원인원 ······ 49
〈표 III-2〉 정책수단별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비중 ······ 49
〈표 III-3〉 정책대상별 지원금액과 지원인원 ······ 50
〈표 III-4〉 정책대상별 연도별 지원금액 및 비중 ······ 51
〈표 III-5〉 정책수단별 목표별 지원금액 비중(2006년) ······ 53
〈표 III-6〉 정책수단별 목표별 지원인원 비중(2006년) ······· 54

〈표 III-7〉 각 부처별 일자리 지원사업실적 ······ 5년
〈표 III-8〉 예산과목별 일자리 지원사업 실적 ······· 5년
〈표 III−9〉 정책수단별 연도별 취업자수와 지원금액 및 1억원당 취업자수 · 5€
〈표 III $-10$ 〉 정책대상별 연도별 취업자수와 지원금액 및 $1$ 억원당 취업자수 $\cdot$ $5\%$
〈표 III-11〉 정책수단별 목표별 취업인원 비중(2006년) ······· 55
〈표 III-12〉 목표대상 집단별 창출된 일자리 비중 ······ 6:
〈표 III-13〉 정책수단별 창출된 일자리 수 ······ 6:
〈표 IV-1〉서비스 대상과 소관부처 동일 여부에 따른 서비스 경합유형 · 6%
〈표 IV-2〉 사업의 비교 ···································
〈표 IV-3〉사업의 비교 ···································
〈표 IV-4〉사업의 비교 ······ 8.
〈표 IV-5〉지역복지서비스 영역구분 ····· 85
〈표 IV-6〉 간병서비스 사업의 비교 ······ 88
부록 1
〈부표 1〉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10:
〈부표 2〉노동시장 훈련104
〈부표 3〉고용 인센티브
〈부표 4〉 직접일자리 창출 105
〈부표 5〉 창업 인센티브 107
부록 2
〈부표 1〉장애아
〈부표 2〉청소년(초중고)108
〈부표 3〉취약아동, 청소년 109
〈부표 4〉노인
〈부표 5〉일반국민
〈부표 6〉 저소득계층 11
〈부표 7〉영유아
〈부표 8〉 결혼 이민자 11:
〈부표 9〉

# 서론 I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의 부진이라고 볼 수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창출된 일자리 수는 30만여 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2004년 41만 8천개, 2005년 29만 9천 개, 2006년 29만 5천 개, '07년에는 29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전의 연평균 40~50만 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이와 같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장률이 낮은 데다 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성과와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논점은 크게 일자리 창출의 둔화와 고용의 질과 관련된 논의이다. 먼저 일자리 창출의 둔화와 관련하여 최근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계수1)는 2000년 36.6명에서 2003년에는 33.4명 그리고 2006년에는 30.5명으로 하락하여 현실적으로 7~8% 이상의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자리 창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경제성장과 고용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간의 상관관계는 0.79로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함을 보여 주고 있다.

<sup>1)</sup> 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부가가치(GDP) 10억 원당 취업자 수로 표현된다.

셋째, 총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용흡수력의 둔화가 일관되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연도별로 살펴보면 차이점이 발견된다. 2001년의 경우 3.8%의 성장에 41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2004년에는 4.7%의 성장에 418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에 비해 2006년에는 5%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29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2007년에도 이와 유사한 실정이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경제가 고용흡수라는 측면에서 구조변화를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일정수준의 성장률을 통해서 여전히 높은 일자리 창출성과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중요한 관점은 고용의 질이라는 측면과 어떤 계층이 성장에 따른 고용성과를 가져가도록 하여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최근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저하되는 고용구조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고용구조의 양극화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높임으로써 일을 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 창출정책의 효과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성장 정책만이 아닌 목표대상별 일자리 정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근로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이 일자리 창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들을 대 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혹은 고용능력(employment ability)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갖고 있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정책수단(보조금, 훈련, 창업지원 등)을 동원하여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의 고용능력을 제고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현황

파악 및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들을 2004년부터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에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 외에 참여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여 온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청년실업대책(61개 사업), 사회적 일자리(40개 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20개 사업) 등 총 12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예산금액면에서 보면 2006년도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1조 9.725억 원이었으며 2007년도(계획)에는 전년에 비해 40.8%가 증가한 2조 7,776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에 직면했다. 첫째, 일자리 지원성과가 낮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낮은 질의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순효과의 미흡이라는 두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일자리 지원사업이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수행되는 관계로 일자리 지원사업의 유사성 혹은 중복성과 같은 일자리 지원사업의 전달체계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지적 이외에도 현행 일자리 지원사업이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 즉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정책 대상 그룹에게 유효한 정책수단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는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이 본질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원칙이 필요함을 문제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에게 일자리 지원사업을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의 100여 개 이상이고 각 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수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은 쉽지 않다. 이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자리 지원사업의 현 황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인식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 가라는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II장에서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개념 및 분류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해 현행 일자 리 지원사업의 고용성과를 살펴본다. 제IV장에서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중복성에 대해 평가하고 제V장에서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율화방안을 제시하다.

#### 1. 일자리 지원사업의 개념

기획예산처의 자료에 따르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실업 대책, 취약계층지원, 사회적 일자리사업, 기타 보조금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류체계에는 정책대상집단과 정책수단이 혼재되어 있다. 일자리 지원사업의 분류체계 문제는 정책대상별 유효한 정책수단의 발굴, 각정책대상 집단별 예산의 적절한 배분, 유사사업 간 중복성 여부 판단, 신규사업의 적절성 판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분류체계는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으로는 크게 일자리 창출정책과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일자리 지원사업)'의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일자리 창출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산업 정책 외에도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재정을 통한 일자리지원사업은 특정의 목표 대상집단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구체적인 사업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좁은 의미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첫째, 구체적인 정책대상이 존재할 것,

둘째, 특정 정책집단의 일자리 창출 혹은 고용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정책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틀 하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노동시장정책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과 '소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로 구분할 수 있다.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이란 실업자들의 취업활동을 돕고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에 반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y)은 실업보험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조기퇴직자 대책 등과 같이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노동시장정책을 가리킨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196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업소개서 비스와 상담만을 의미하였으나, 1970년대 초부터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한계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유럽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실업, 장기실업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보조금제도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노동시장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OECD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s)은 실업자의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을 통해 실업자의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을 증대시키고 노동시장의 인력수급기능(job matching process)의 효율성을 높여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종래의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

<sup>2)</sup> OECD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 래,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실업부조, 기타 공적부조를 실업자에게 지급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는 취업알선, 직업지도, 상담 등의 고용안정서비스(employment service),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 등이 포함된다.

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으로 정책의 중점을 변경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표 II-1〉은 OECD가 분류하고 있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항목별 분류를 나타내고 있다. OECD의 분류에 따르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크게 취업 알선, 교육・훈련, 고용보조금, 창업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눠 볼 수 있으며, 소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는 실업보조금 지급이나 조기퇴직자들을 위한 대책 등을 들고 있다.3)

OECD 데이터베이스는 노동시장정책(labor market program)을 9가지로 분류하고 분류된 각각의 정책에 대한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분류된 9가지 정책은 ① 공공고용서비스(PES)와 행정 ② 훈련 (training), ③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④ 고용 인센티브(employment incentives), ⑤ 장애인 통합(integration of the disabled), ⑥ 직접적 일자리 창출(direct job creation), ⑦ 창업 인센티브(start-up incentives), ⑧ 실직자소득보장 및 지원(out-of-work income maintenance and support), ⑨ 조기 은퇴(early retirement)이다. 4)

OECD는 이러한 다양한 노동시장정책을 크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나누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분류기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①-⑦까지로 분류되며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는 ⑧과 ⑨ 정책이 포함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분류된 정

<sup>3)</sup> 선진국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국가에 따라 각각 의 정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가 상이하다. 따라서 각국의 재정지출 규모의 비교를 위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수집된 자료가 필요하다.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자료는 현재 OECD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수록된 노동시장정책 관련 재정지 출 자료가 유일하다.

<sup>4)</sup> OECD는 2005년부터 노동시장정책의 분류방식을 변경하였다. 종래에는 ① 공공고용 서비스(PES)와 행정, ② 노동시장훈련(labor market training), ③ 청년 대책(youth measures), ④ 고용보조 (subsidized employment), ⑤ 장애인 정책(measure for the disabled), ⑥ 실업금여(unemployment compensation), ⑦ 조기퇴직(early retirement for labor market reasons)의 일곱 가지로 분류하고 있었다. 분류항목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유사한 분류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포괄되는 하위범주의 재정지출 내역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전 OECD자료와의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책들은 실업자들과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노동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으로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범위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노동시장 관련 공공지출이라는 관점에서 OECD가 분류한 틀의범위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해당되는 범주를 일자리 지원사업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부분 정부의 지출은 이러한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1〉 OECD의 노동시장 관련 공공지출 분류와 정의

분류	정의
1.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public employment service and administration)	고용안정서비스(PES)와 노동시장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정에 소용되는 지출
2. 노동시장훈련 (labor market training)	
2.1. 공공훈련 (institutional training)	훈련시간의 대부분(75%나 그 이상)을 훈련기관 (학교/대학, 훈련센터나 유사기관)이 실시되는 프로그램.
2.2. 작업장훈련 (workplace training)	훈련시간의 대부분(75%나 그 이상)이 작업장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
2.3. 통합훈련 (integrated training)	훈련시간의 대부분(75%나 그 이상)이 훈련기관이나 작업장 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
2.4. 견습특별지원 (special support for apprenticeship)	견습제도를 위한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새로 채용 하는 견습생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 특히 취약계층 견습생에 대한 훈련 수당을 포함
3. 일자리 순환과 일자리 나누기 (job rotation and job sharing)	일자리 순환은 일정 기간 실업자 또는 다른 목표집단(target group) 구성원으로 기존 근로자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 일자리 나누기는 개인이나 실업자에 의해 기존근로자를 부분적으로 대치시키는 제도,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다. 자료 미비로 OECD 2005년 자료에는수록되지 않음.
4. 고용인센티브 (employment incentives)	
4.1. 채용 인센티브 (recruitment incentives)	실업자 또는 다른 목표집단(target group) 구성원을 채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 단 대부분의 채용비용은 사용자에 의해 부담되어야 함, 목표 집단 구성원에게 직접 지불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나 새로운 일자리를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불되어야 함.
4.2. 고용유지 인센티브 (employment maintenance incentives)	구조조정 등에 있어 고용유지에 대한 보조

#### 〈표 Ⅱ-1〉계속

분류	정의
5. 장애인 통합	
(integration of the disabled)	
5.1. 정규 고용 (regular employment)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위의 4.1과 유사한 정책. 장애인을 위해 작업장 구조를 변경하는 고용주에 대한 보상을 포함.
5.2. 보호 고용 (sheltered employment)	보호된 환경에서 일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이나 훈련을 도모 하는 프로그램. 평생 동안 보호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됨.
5.3. 기타 재활 및 훈련 (other rehabilitation and training)	보호된 환경이나 작업장 외부에서 장애인의 재활이나 훈련 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6. 직접적 일자리 창출 (direct job creation)	장기실업자나 일자리를 얻는 것이 힘든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 지역사회 또는 사회에 유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 그램. 대부분 공공기관에 의해 행하여짐.
7. 창업 인센티브 (start-up incentives)	실업자 또는 목표 집단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영업 자가 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8 실직자 소득보장 및 지원	
(out-of-work income	
maintenance and support)	
8.1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수급자격을 갖춘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경과한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포함됨.
8.2 부분적 실업금여 (partial unemployment benefits)	고용관계는 지속되나 근로시간의 감소나 간헐적인 작업 스 케줄로 인해 임금이 상실된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8.3 파트타임 실업급여 (part-time unemployment benefits)	전일제 일자리를 상실한 파트타임 근로자 또는 더 많은 시 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8.4 정리해고 보상 (redundancy compensation)	기업의 폐업이나 다운사이징으로 인해 귀책사유 없이 해고 된 근로자를 보상하기 위해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출하는 프 로그램
8.5 파산보상 (bankruptcy compensation)	파산된 고용주가 미지불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보상하기 위 해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출하는 프로그램
9. 조기퇴직(early retirement)	구직가능성이 없는 고령 근로자의 완전한 혹은 부분적 조기 퇴직을 용이하게 하는 프로그램.

〈표 II-2〉는 OECD의 분류에 따른 공공지출 분야별 GDP 대비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국가별로 편차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PES와 훈련 또는 직접적 일자리 지원프로그램으로 나타나 있다.

(丑 II-2) Public expenditure in labour market programmes in OECD countries

(%, 2006년)

	PES	Training	Employment Incentive	Integration of the disabled	Direct job creation	Start up Incentive	Out of work Income maintenance and support	Early retirement
오스트리아	0.17	0.28	0.06	0.05	0.04	-	1,10	0.30
벨기에	0.23	0.20	0.15	0.11	0.46	1	1,97	0.43
체코	0.12	0.02	0.05	0.03	0.3	0.01	0.26	-
핀란드	0.20	0.41	0.18	0.10	0.09	0.01	1,58	0.48
프랑스	0.25	0.31	0.10	0.09	0,23	1	1.64	0.08
독일	0.29	0.36	0.09	0.15	0.13	0.13	2,27	0.04
헝가리	0.10	0.05	0.09	0.01	0.05	0.01	0.37	0.01
이탈리아	0.04	0.23	0.25	0.01	0.01	0.05	0,66	0.10
일본	0.21	0.04	0.02	0.01	-	-	0.46	-
한국	0.03	0.06	0.01	0.02	_	_	0.22	-
네덜란드	0.32	0.36	0.03	0.56	0.18	-	2,23	-
뉴질랜드	0.12	0.18	0.03	0.06	0.01	0.02	0.54	-
노르웨이	0.13	0.09	0.03	0.54	_	-	0.86	-
폴란드	1	0.03	0.06	0.03	0.06	0.01	0.40	0.39
슬로바키아	_	0.01	0.01	-	0.04	0.02	0,31	0.01
스페인	0.08	0.16	0.26	0.07	0.11	0.04	1.47	0.03
스웨덴	0.24	0.35	0.19	0.43	-	0.03	1,32	Т
스위스	0.13	0.30	0.08	0.25	-	0.01	1.03	-
영국	0.36	0.13	-	0.02	-	-	0.29	-
미국	0.04	0.05	-	0.03	0.01	_	0.37	-

Source: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 2. 일자리 지원사업의 분류체계와 유형

#### 가. 일자리 지원사업의 분류체계

일자리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크게 정책목표대상·정책수단·수혜집단 그리고 기타 분류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수혜집단별 분류는 일자리 지원사업과 사회서비스를 결합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사회서비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분류한 개념이다. 넷째의기타에는 부처소관별, 혹은 예산의 성격별 분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목표대상과 정책수단에 따른 분류로 이는 정 책대상별 사업의 중복성 평가,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석, 그리고 정책대상 별 노동시장성과의 상호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이하의 내용은 2007년도 기획예산처에서 수집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 자료를 토대로 분류한 것이다.

#### 1) 정책목표 대상별 분류기준

〈표 II-3〉은 기획예산처 자료를 토대로 일자리 지원사업을 정책목표 대 상별로 분류한 것이다. 정책목표 대상은 크게, 청년층·취약계층·일반으로 구분되며, 청년층은 다시 고졸미취업자(실업자) 등 6개의 소그룹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취약계층은 고령자,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등으로 이 또한 6개의 소그룹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세 번째, 일반은 여성(전업주부 등), 실업자, 전문인력 그리고 국민 일반으로 다시 분류가 가능하다. 끝으 로 '대상자 없음'의 분류는 특정 대상집단을 목표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여기에는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지원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분류는 노동시장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행 일자리 지원사업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만큼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직근로자를 대상 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재직근로자의 훈련사업 중 향상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소분류상의 청년층 일반은 청년층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청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기 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소분류 취약계층 일반은 취약계층의 특정 계층 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며, 대분 류 일반은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을 특별히 지칭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 당된다. 한편, 전문인력의 경우 범주 구분이 매우 광범위한데 여기에는 석·박사 등 고학력자를 위한 프로그램 외에도 사회적 일자리 군에 속하 는 사업 중, 예술강사, 보육교사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5)

<sup>5)</sup> 이에 대해서는 〈부록 1〉을 참조하라.

〈표 Ⅱ-3〉 정책목표 대상별 사업분류 기준

대분류	소분류
	11. 고졸 미취업자(실업자)
	12. 대졸 미취업자(실업자)
10. 청년층	13. 고등학교 재학생
10. 정단공	14. 대학(원) 재학생
	15. 청년 실업자(미취업자)
	16. 청년층 일반 <sup>1)</sup>
	21. 고령자
	22.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20 취임계초	23. 장애인
20. 취약계층	24. 저소득자(기초생계비수급자, 차상위계층)
	25. 장기실업자
	26. 취약계층 일반 <sup>2)</sup>
	32. 여성(전업주부 등)
30. 일반 <sup>3)</sup>	33. 실업자
	34. 전문인력 <sup>4)</sup>
	35. 국민 일반
90.	대상자 없음

- 주: 1) 소분류 청년층 일반 : 청년층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청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 는 경우
  - 2) 소분류 취약계층 일반 : 취약계층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취약계층 전체를 대상 으로 하는 경우
  - 3) 일반 :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을 특별히 지칭하지 않은 경우
  - 4) 전문인력 : 석박사 등 외에도 사회적 일자리 군에 속하는 사업중, 예술강사, 보육교사 등을 모두 여기에 포함하였음
  - 5) 단,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

#### 2) 정책수단별 분류기준

《표 II-4》는 기획예산처 자료를 토대로 일자리 지원사업을 정책수단별로 분류한 것이다. 정책수단별 범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크게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노동시장 훈련, 고용인센티브, 직접일자리 창출, 창업인센티브로 분류된다.

공공고용서비와 행정은 주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에 해당된다. 노동시장 훈련은 세부 범주로 크게 훈련사업과 교육·연수·체험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용인센티브는 보조금사업이 이에 해당되며 이는 직접인센티브사업과 간접인센티브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인센티브사업으로는 고용창출, 고용유지를 위해 인

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간접인센티브사업은 고용창출을 유도 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에 해당된다.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사업을 의미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서비스 수혜그룹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단기 일 자리사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된다. 즉, 일자리를 만들어 인력을 고용한 후 사회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이에 따른 서비스 수혜자 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는 단기 일자리사업에 해당된다.6

〈표 Ⅱ-4〉 정책수단별 사업분류 기준

대분류	소분류				
10.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22. 훈련				
20. 노동시장 훈련	23. 교육・연수・체험				
20 7 8 0 MICH	31. 직접 : 고용창출, 고용유지 등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				
30. 고용인센티브	32. 간접 :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40 지저이지기 차초	41. 단기 일자리				
40. 직접일자리 창출	42. 사회서비스 일자리				
50. 창업 인센티브					

#### 3) 수혜집단별 분류

수혜집단별 분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자리 지원 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서비스 수혜자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II-5〉에서 보듯이 현행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크게 장애아, 청소년(초 중고), 취약이동 및 청소년, 노인, 일반 국민, 저소득 계층, 영유아, 결혼 이민자 등 8개 분야로 수혜자 그룹을 분류할 수 있다.7)

<sup>6)</sup> 이에 대해서는 〈부록 2〉를 참조하라.

<sup>7)</sup> 이에 대해서는 〈부록 3〉을 참조하라.

〈표 II-5〉수혜집단별 사업분류 기준

	대분류
01.	장애아
02.	청소년(초중고)
03.	취약아동 및 청소년
04.	노인
05.	일반 국민
06.	저소득계층
07.	영유아
08.	결혼이민자
10.	없음

#### 4) 기타 분류

한편, 기타 분류방식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나, 분류의 유 용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분류방안으로 정 부부처별 혹은 예산과목별로 일자리 지원사업을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

#### 나. 사업현황

여기서는 앞에서 분류한 방식을 토대로 현행 일자리 지원사업의 내용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분류방식은 다양하지만 사업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책목표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8)

#### 1) 청년층

#### 가) 고졸 미취업자(실업자)

청년층 사업 중 고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우선선정 직종 훈련'사업이 유일하다. 동 사업은 노동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2007년 지원금액은 1,925억 원이며 19,250명에게 훈련을 지원하는 것으 로 되어 있으며 훈련비 및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2006년 취업실적을 보

<sup>8)</sup> 정책수단별 분류 및 정책대상별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부록 1〉 참조.

면 21.557명이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취업자는 13.331명으로 지원 인원대 비 61.8%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표 Ⅱ-6〉고졸 미취업자(실업자)

정책수단	사업명	사 업 내 용						
		소관부처	지원금액		지원인원		취업자	1억원당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1346	1925	21557	19250	13331	9.9
	우선선정직종 훈련	내용						
훈련		목적 -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및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 족한 직종을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 공급기간-06.1~06.12						
		규모—1,355억원 내용 — 정액지원,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 나) 대졸 미취업자(실업자)

대졸 미취업자 혹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산자부에서 수 행하는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사업과 노동부에서 수행하는 '해외취업지원 연수제' 및 '해외취업인턴제' 사업이 해당된다. 정책수단 면에서 보면 이 들 사업들은 모두 교육 및 연수체험에 해당된다.

산자부 사업은 이공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기업현장 연 수를 통해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사업인 데 비해, 노동부 사업은 신 규대졸자를 대상으로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사업의 취업실적을 보면 2006년 취업지원인이 2.510명인데 이 중 1.895명이 취업하여 75.5%의 높은 실적을 보여 주고 있다.

해외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해외취업 연수제'사업의 2006년 취업인원 수는 각각 1,073명으로 취업률은 53.9%인 데 비해 '해외취업인턴제 사업'은 333명 지원에 90명 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27.0%이다.

#### 〈표 II-7〉대졸 미취업자(실업자)

정책수단	사업명	사 업 내 용							
0 11 2	120		지위	실금액	지원		취업자	1억원당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산자부	100	100	2510	2000	1895	19.0	
					내용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기간 - 0 규모 - 2 내용 - E 변 연 근 전	년 및 기업 6.1~ 06 ,500명, 난체교육( 비 등, !수생-연 !수생-연	원 및 전문: 1 현장 연수 .12 10,000백민 연수기관~? 수수당 1인 연수기관~? 수수당 1인 연수기관~?	등을 실시 당사료, 연 당 월30만 면수전담인 당 월50만	(6개월), 실 수전담인력 ) 력 인건비, )	제 취업으 인건비, 지도강사	로 연결 교재 제작	
		. 711	지원	 월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70	90	1992	2250	1073	15.3	
교육,					내용				
연수체험	해외취업지원 (연수제) (해외취업연수제)	목적 - 신규 대졸자 등에게 해외취업 알선 및 해외현지기업에서의 인턴 근무 등을 통해 청년실업해소 및 해외실무경험 축적 기회 부여 기간 - 04~ 규모 - 10,415백만원, 2,000명 내용 - 해외취업 희망자 대상으로 1,500명 *1인당 4백만원 범위 3~10 개월 - 연수과정 운영, 면접, 고용 계약체결, 출국지원 등							
				 일금액	지원		취업자	1억원당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15	0	333	0	90	6.0	
					내용				
	해외취업지원 (인턴제) (해외인턴제)	목적 - 신규 대졸자 등에게 해외취업 알선 및 해외현지기업에서의 인턴 근무 등을 통해 청년실업해소 및 해외실무경험 축적 기회 부여 기간 - 04~ 규모 - 10,415백만원, 2,000명 내용 - 전문대졸 이상 미취업 청년실업자 대상으로 500명 *1인당 5백만원 범위=6,000백만원 - 6개월 - 대상자 모집, 선발, 출국지원, 인턴관리, 국내외 취업지원 등							

#### 다) 고등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정책수단에는 훈련 과 교육·연수체험이 있다. 훈련 사업으로는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기능 사 양성 특별 훈련'사업과 중기청에서 수행하는 '기업공공연계 맞춤형인

〈표 Ⅱ-8〉고등학교 재학생

정책수단	사업명			사	업 내 등	요 S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소선구시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283	279	7565	6925	_	_			
	71-11014		내용								
	기능사양성 특별훈련 (기능사 양성훈련)	기간 - 06.1 규모 - 29,2 내용 - 교육 기술	P를 수행 ~06.12 32백만원 훈련비용 자격기능	할 수 있는 , 8,170명 전액지원	· 인력 양	성 로제공, 훈	련수당 20	)만원, 국가			
			지우	!금액	지원	인워	취업자	1억워당			
훈련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중기청	50	70	1212	1500	1088	21.8			
		0.10			내용			-1.0			
	기업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난을 기간 - 06^ 규모 - 공업 내용 - 교괴	향의 열련   완화    고 40개,  라장개발  지원	린직업교육 학생 2,00 비 운영비	체제를 구 20명 , 학생 교	2축하고 2육훈련비	중소기업의 , 실습기계	기 기술인력			
		소관부처		금액	지원		취업자	1억원당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중기청	10	10	<u>0</u> 내용	0	_	_			
교육, 연수체험	Biz Cool 프로그램 활성화	Biz Cool     목적 - 청소년시기부터 기업가정신 및 기업경영(창업) 교육을 자기직업 개척능력 제고와 예비창업자 양성       프로그램     기간 - 06.1~06.12									

력 양성 프로그램'사업이 있다. 교육·연수체험 사업으로는 중기청에서 수행하는 'Biz Cool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이 있다. 앞의 두 사업은 모두 기능인력양성이라는 목표에서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Biz Cool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 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라) 대학(위) 재학생

대학(원)생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정책수단에는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훈련, 교육·연수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지 원사업'은 대학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경력개 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학력 여성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하기 위 해 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부가가치 특별인력양성사업'은 대학 3-4 학년을 대상으로 산업분야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 이다. 2006년의 경우 1,090명이 참여하여 538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 연수·체험사업에는 무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청년무역 인력 양성사업'과 대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수 행되는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사업'이 있다. 이 외에 영농분야로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생 창업연수 사업'과 '전문대학생들 에게 해외인턴십을 국내외 취업촉진을 도모하는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사업이 있다.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징을 보면, 각 부처에서 주로 관련된 전공분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이나 교육 · 연수체험을 제공하 고 있다. 개별 사업별로 보면 정책대상자 및 지원내용이 모두 다르지만, 대 학(원) 재학생의 취업능력제고를 위해 교육이나 연수체험을 수행하고 있다 는 점에서 사업의 유사성이 있는 만큼 재학생과 이들의 전공분야 및 해당 산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통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사업은 청년봉사단의 파견을 통해 수혜국의 정보격차 해소 및 파견국 내 우호적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자리 지원사업과는 관 련성이 거의 없는 만큼 일자리 지원사업의 범주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 <표 II-9⟩ 대학(원) 재학생

정책수단	사업명		사 업 내 용								
0 11 2	120		지원	연금액		인 I인원	취업자	1억원당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여성부	10	95	0	0	0	0.0			
			내용								
공공고용 서비스와 행정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지원	프 기간 - 03 규모 - 1,( -지원 - 센	:로그램 & ! 도모 }~ )00백만원 릴기간:03.; 터별 8천[	내용 3~05.12 만원(5대 대	고학력 학 차등 :	여성청년: 지원)	층의 경제	및 경력개발 활동참가 제			
			개 대학(신 개발센터		대, 전북대	대, 중남다	H, 한양대)	여대생커리			
				= E:1 년금액	지우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교육부	30	30	1090	2000	538	17.9			
					내용		'				
훈련	고부가가치 특별인력양성	적 교 기간 — 06 규모 — 06 내용 — 관 — 현	목적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분야의 긴급한 수요가 있는 생산인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해서 대학 3-4학년생을 대상으로 단기 집중 교육과정 운영 기간 - 06~08(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규모 - 06년 30,000백만원(사업단 6개정도, 지원대상학생수 600명) 내용 - 관련선수과목 등을 이수한 3~4학년 대상 - 현장적합성 있는 교육을 위한 산업체 전문가 등 인건비, 실험 실습,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 등 지원 - 대학, 산업체, 지방자								
		   소관부처 -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エゼーハ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중기청	24.5	25	0	0	0	0.0			
	_0 = 1 . 0				내용						
교육, 연수체험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단기)	기간 - 06 규모 - 20 내용 - 체 (2 - 업	목적 - 대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기간 - 06년 3월부터 06년 12월 규모 - 200여개 대학, 57,000명 내용 -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운영경비에 대하여 지원 (강사료, 홍보비, 통신비, 임차료, 업체 연계비용 등) - 업체 연계비용은 전공과 부합하는 중소기업의 연계를 위해 지원 - 1개 대학에 12,250천원(학생 1인당 43천원) - 1~3일 지원(CEO강의, 우수중소기업탐방 등)								

#### 〈표 Ⅱ-9〉 계속

〈並 II-9〉 /	"								
정책수단	사업명			人	나 업 내	용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エロナハ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정통부	15	18.5	288	300	0	0.0	
					내용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동 나 기간 -01 규모 - 1,6 내용 - 체 - 왕 - 소 - 해	등 전개함   우호적 연 ~ 853백만원 재비(1인당 복항공료 모품(유니語 외여행자토	으로써 수 신적 네트워 70만원) 폼, 모자, 비 L험 및 SOS	전략국가 혜국의 정 크 구성 배낭, 현수 S긴급의료	방보격차해 막, 태극 <i>7</i> 서비스 7	소에 기여 I, 봉사단7 I입	여   IT봉사활 하고 파견국     등)   IT장비는 사	
			느 <u></u> , 니시 후 현지 :		, >/W 등	11.9.11(5	ig 10c1,	미성미는 자	
		0		<u>/10/</u> 금액	TI의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소관부처	2006	百억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정통부	2	3	16	24	0	0.0	
		007				24		0.0	
		내용 목적 - 청년봉사단을 주요 IT전략국가 및 개도국에 파견하여 IT봉사							
교육, 연수체험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해외한민족 정보화 교육지원)	기간 - 01 규모 - 1,6 내용 - 체 - 왕 - 소 - 해	을 전개함   우호적 C ~ 253백만원 재비(1인당 복항공료 모품(유니語 외여행자도 트북, 디지 후 현지	으로써 수	혜국의 정 로 구성 원) 배낭, 현수 3긴급의료 S/W 등	막, 태극7 나서비스 7 IT장비(팀	소에 기여 I, 봉사단7 h입 h별 1SET,	하고 파견국 기 등) IT장비는 사	
		소관부처	지원		지원		취업자	1억원당	
		농림부	2006	2007 6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중남구	0	0		200	0	0.0	
	대학생 창업연수	내용  목적 -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대학생(연수생)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 부문에 우수 신규인력 유입 촉진기간 - 05~ 규모 - 200명, 600백만원 내용 - 만 32세 미만의 농학계 대학 재학생으로 4년제 경우 3~4학년 생, 전문대의 경우 2학년생 - 연수생은 연수기관(농과대학)에서 영농이론, 실습 및 현장체험을학기 및 방학 중에 이수 - 연수생 1인당 3백만원 한도로 연수기관의 연수비용을 위한 보조금 지급							

#### 〈표 Ⅱ-9〉계속

정책수단	사업명			J	나 업 내	용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조선구시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농림부	0	0	0	0	0	-		
					내용					
	대학생 영농창업연수 (대학재학생)	기간 — 0	르써 농업 ! 5년~	부문에 우수				를 제공함으		
	(917/1170)	규모 - 200명, 600백만원 내용 - 만 32세 미만의 농학계 대학 재학생으로 4년제 경우 3~4학년								
교육, 연수체험		- 01 - 01	생, 전문대의 경우 2학년생 - 연수생은 연수기관(농과대학)에서 영농이론, 실습 및 현장체험 을 학기 및 방학 중에 이수 - 연수생 1인당 3백만원 한도로 연수기관의 연수비용을 위한 보 조금 지급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70 I M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교육부	20	20	282	467	156	_		
					내용					
		목적 -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전문대생들에게 '해외 인턴십'을 경험케 하여 산업체 현장적합성과 국제경쟁력 있는 인력으로 양성, 창업 및 국내진출 외국기업과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취업기회 확대 도모 기간 - 06~ 규모 - 20,000백만원 내용 - 일정수준 이상의 어학수준이 되는 전문대학생 선발하여 1인당 최대 800만원 내외(인턴쉽 경비, 왕복항공료, 보험료 등) - 대응투자(국고지원금의 1/5이상)								

#### 마) 청년 실업자(미취업자)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일자리 지원사업이 종료된 '구인업체 개척사업'을 제외하면 훈련사업 1개, 교육·연수체험 3개, 직접 일자리 사업 1개 등 5개 사업이 있다.

훈련사업인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고용보험 미적용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이 유망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취업실적을 보면 2006년의 경우 18,566명에 대한 훈련이 지원되었으며 취업자는 10,665명이다. 교육·연수체험사업으로는 '중소기업청년패키지 사업'(노동 부),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노동부), '관광분야 청년인턴채용 사업'(문화 관광부)이 있다.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고용촉진장려금사업은 청년실 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지원사업 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 는 사업들의 경우 훈련사업 상호 간, 혹은 훈련사업과 보조금 사업 간의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취업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표 Ⅱ-10〉 청년 실업자(미취업자)

정책수단	사업명			,	사 업 내	용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エロナハ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469	420	18566	16832	10665	22.7
					내용			
훈련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0 기간 — 06 규모 — 16 내용 — 훈 — 훈	F의 직업 등 2에 부합히 3.1∼06.12 5,680명, 45 련기관:직 -련기관:1개  원금액:'즈	훈련을 실시는 인력 2 25억원 업능력개발 월 이상 11 1업능력개발	기함으로써 충성 훈련시설, 클 이내, 추 나사업 지원	취업능력을 법인, 학원 1업전 3회 1금 지급규	을 제고하고 J시설 등 까지 수강 2	유망한 분 산업계 수 가능 한 훈련직종
		소관부처	지원	월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중기청	129	105	4273	3500	2678	20.8
					내용			
교육, 연수체험	중소기업청년 채용패키지	목적 - 청년미취업자를 맞춤형 직무교육(2~3개월)과 기업현장연수(2~3 개월) 후 취업과 연계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실업 해소 도모 기간 - 06.1~06.12 규모 - 129억, 교육 4,500명, 취업목표 2,025 내용 - 총 5개월 - 〈집학교육〉: 직무교육수당 1인당 월 30만원(2~3개월) - 〈중소기업현장연수근무〉: 기업현장연수수당 1인당 월 50만원(2~3 개월) - 〈채용연계〉: 중소기업 채용연계서비스(최장 9개월)						실 청년실업 청년실업

#### 〈표 Ⅱ-10〉 계속

정책수단				J	나 업 내	용				
			지원	금액		인원	취업자	1억워당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332	347	64100	55000	186	0.6		
	청소년		'	<b>'</b>	내용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지원제)	설 기간 - 02 규모 - 62, 내용 - 연	목적 -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선택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경력형성 및 직업능력개발을지원 기간 - 02~ 규모 - 62,500명 내용 - 연수생:교통비와 중식비를 포함 월 30만원의 연수수당(최대 6개 월 한도) 지급.							
교육,		연수기관-		연수생을			에 연수생 구	지역 기억원당 취업인원 6 0.6 이 0.		
연수체험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2006 취업인원 186 0.6 공하여 직업선택과 진로 력개발을지원 원의 연수수당(최대 6개 데에 연수생 규모에 따리 취업자 1억원당 취업인원 135 11.3  겁난 해소하고, 관광분이 으로써 관광인력 양성에 나 취업자 1억원당 취업인원 40122 31.7	1억원당		
		소판무서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문화관광부	12	10	199	185	135	11.3		
					내용					
	관광분야 청년인턴채용	예 기간 - 06 규모 - 25 내용 - 청! - 채	비인력에게 여 ~ (단년도 )명(12억)	현장교육 계속) 중 18세 이월 600,000	·의 기회를 상 29세 ( )원	를 제공함으		,		
		A 71H 51	지원금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소관부처 -	2006	2007	2006	2007	2000 186 0.6  제공하여 직업선택과 진퇴 기업에 연수사당(최대 6기기업에 연수생 규모에 따라지원  취업자 1억원당 취업인원 35 135 11.3  전실업난 해소하고, 관광분이공함으로써 관광인력 양성에 관광으로써 관광인력 양성에 40122 31.7  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3기하는 사업주에게 신규(청년 기업은 사업주에게 신규(청년 기업은 60만원)씩 연중소기업은 60만원)씩 연	취업인원		
		노동부	1267	1006	40122	30700	40122	31.7		
직접:고용					내용					
창출, 고용유지 등을 위해 인건비 지원	청년고용촉 진장려금	목적 - 청년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3개 월을 초과한 2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기간 - 04.10~07.9 규모 - 27,0000명, 85백만원 내용 -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등록하고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 청 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지급 - 6개월간 60만원, 이후 6개월간 30만원(중소기업은 60만원)씩 연 간 540만원(중소기업은 720만원) 지원								

#### 〈표 Ⅱ-10〉계속

정책수단	사업명		사 업 내 용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오선구시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19	06년완료	1148	0	0	0.0		
					내용					
단기 일자리	구인업체 개척사업 ('06년완료)	기간 - 19 규모 - 1, 내용 - 장	를 중심으로 취업을 지원 999~ 993백만원 형액지원 디원조건:주 기뢰딘 업체	로 틈새 일자 <sup>强</sup> !, 분기당 2	자리를 개 <sup>초</sup> 00명(연간 인 및 여E 학인, 각종	성하여 본인 800명) 사 실업자를 실업대채시	! 및 타 실( 를 위한 구인  업홍보)	층 구인업체 업자에 대한 기개척, 구인		

#### 바) 청년층 일반

청년층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으로는 '해외취업지원사 업'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매니저 사업'이 있다.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신 규 대졸자 등에게 해외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정보화마 을 프로그램 매니저 사업은 340개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운영 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해당된다.

〈표 Ⅱ-11〉 청년층 일반

, ,	JEO EL	1								
정책수단	사업명			人	<b>)</b> 업 내	용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조선구시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19	14	5967	5000	0	0.0		
					내용					
		목적 - 신규	내졸자	등에게 해	외취업 일	선 및 해	외현지기업	걸에서의 인턴		
	해외취업	근두	근무 등을 통해 청년실업해소 및 해외실무경험 축적 기회 부여							
공공고용서	지원	기간 - 04~	,							
비스와 행정	(알선)	규모 - 10,4	15백만원,	2,000명						
	(	내용 - (해외	리취업연수	<u>-</u> 제〉						
		3~	10개월, 1	500명 대·	상으로 19	인당 4백단	반원, 연수	:과정운영, 면		
			_	체결, 출 <del>고</del>	지원 등					
			외인턴제〉							
		6개월, 500명 대상으로 1인당 5백만원, 대상자 모집, 선발, 출								
		국자	1원, 인턴	관리, 국내	1외 취업		1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사회서비스	정보화마을	포인구시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일자리	프로그램	행자부	0	20	0	305	0	_		
	매니저	내용								
		340개	정보화마	을에 프로	그램 관리	자 육성 (	1인당 110	만원/월)		

#### 2) 취약계층

#### 가) 고령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으로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다. 동 사업의 경우 단기 일자리이고 지원수준도 매우 미미하지만 취업자 수에서 보면 매우 높은 실적을 보여 주고 있어 상대적으로 일자리 지원실적을 과대평가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총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높은 취업성과를 보이지만 일자리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단기 일자리로서 노인들의 소득지원 성격이 강하다.

〈표 Ⅱ-12〉고령자

정책수단	사업명	사 업 내 용						
단기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조선구시	2006	2007	2006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인일자리	복지부	520	763	83038	110000	83038	159.7
일자리	지원	내용						
		일자리지원		L원보수 및   운영비 지	_	지원노인	일자리박림	회 지원

#### 나)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여성가장이나 여성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사업'과 '여성창업지원사업'이 있다. 여성가장 실업자취업훈련사업은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186명과 975명에게 훈련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 취업자는 558명이다. 여성창업지원사업은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에 생계형 창업점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가장이나 실업자의 인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sup>9)</sup> 여성부의 '여성창업지원지원'사업이 경우 2007년에 사업이 종료되었다.

〈표 II-13〉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정책수단	사업명			人	업 내용	<u>2</u>					
		A 71H -	지원	금액	지원인원		취업자	1억원당			
	어서기자시어지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훈련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노동부	20	18	1186	975	558	27.9			
	커숍운턴 				내용						
			훈련비 및 훈련수당(5-40만원)								
	신서카어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여성창업 지그지의	조선구시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자금지원 (여성창업자금	여성부	30	사업종료	82	사업종료	0	0			
	지원사업)		내용								
창업	시간시티/	저	저소득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 지원-5천만원대출(3.0%)								
인센티브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자영업창업지원	エセナベ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실직여성가장	노동부	0	80	0	270	0	_			
	점포지원사업)				내용						
			장기실업지	ŀ, 실직여성	성가장에 상	계형 창업	점포 지원				

#### 다) 장애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훈련사업 2개와 창업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이 있다. 훈련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에 대 해 고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취업지원사업'과 '산재장애인 직업훈련사업'이 있다. 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의 경우 2006년에 724명에게 훈련을 지원하여 448명이 취업(취업률 61.9%)하였다. 2007년에는 1,200명에게 훈련을 지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산재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은 2006년 5,680명에 게 훈련을 지원하여 1,779명이 취업(취업률 31.3%)하였으며 2007년에는 4,000명에게 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창업인센티브 사업은 자립자금 혹은 창업자금이나 창업을 위한 전세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있다. 두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의 전 달체계나 지원요건은 상이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을 수행하 는 점에서 유사하다.

#### 〈표 Ⅱ-14〉 장애인

정책수단	사업명	사 업 내 용								
		A ZLH FL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장애인취업지원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중증장애인	노동부	5	12	724	1200	448	89.6		
	고용지원)				내용					
훈련			중증	장애인고용	유지비용-	-1인당 월6	0만원			
포근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산재장애인	エゼナバ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직업훈련	노동부	115	133	5680	4000	1779	15.5		
	7620				내용					
			훈	년비(130만	원) 및 훈련	년수당(509	천원)			
			지원	금액	지원인원		취업자	1억원당		
	장애인자립자금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대여사업	복지부	129	160	893	800	0	0		
	9101/18				내용					
		1가구당 15백만원 융자(4%)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창업	장애인취업지원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인센티브	(장애인자영업	노동부	38	30	89	60	0	0		
	창업자금융자)				내용					
				자영업창업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취업자	1억원당		
	장애인취업지원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장애인자영업	노동부	20	88	37	100	0	0		
	전세금융자)				내용	-101/- 1				
				자영업전	세금융자-	1억원(3%)				

#### 라) 저소득자(기초생계비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계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훈련, 단기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업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제공되고 있다.

훈련사업으로는 '자활직업훈련'과 '자활직업적응훈련'이 있다. 자활훈련의 경우 2006년에는 1,566명이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취업자는 514명이고, 2007년에는 1,800명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활직업훈련 사업자에게는 훈련수당으로 월 24만 원이 지급된다. 자활직업주양훈련의 경우 2006년에 2,794명이 참여하여 195명이 취업하였고 2007년에는 4,432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활직업적응훈련 참여자에게는 자활수당 5~10만 원과 식비 및 교통비로 일일 8천 원이 지급된다.

단기 일자리지원 제공사업으로는 자활취업촉진사업, 차상위계층 사회적 일자리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이 있다. 이들은 대개 1일 2~4 만 원가량의 수당을 받는다.

저소득자 대상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자활후견기관 기능 활성화' 사업이 있다. 앞의 두 사업은 참여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자활후견기관 기능활 성화 사업은 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끝으로 자활공동체 1개당 2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들 사업들은 주로 단기 일자리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일자리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소득을 안정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II-15〉 저소득자(기초생계비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책수단	사업명	사 업 내 용						
훈련	자활훈련 (자활직업훈련)	소관부처	지원금액		지원인원		취업자	1억원당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47	57	1566	1800	514	10.9
		내용						
		자활직업훈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훈련비 및 훈련수당 (월 24만)						
	자활훈련 (직업적응훈련 (자활대상자))	소관부처	지원금액		지원인원		취업자	1억원당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17	27	2794	4432	195	11.5
		내용						
		자활직업적응훈련-수급자 훈련비 및 훈련수당						
		(자활수당 5~10만원, 식비,교통비 8천원)						
단기 일자리	자활취업촉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사회적일자리) 자활근로 (기초생활수급 자 자활근로)	소관부처	지원		지원		취업자	1억원당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11	14	602	800	87	7.9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구직자-36천원						
			기소생활보정수 지원금액		가급사 중 구식사 ( 지원인원			
		소관부처			시면 2006	인면 2007	취업자	1억원당 취업인원
		HTIH	2006	2007			2006	
		복지부	2245	2594	48746	70000	48746	21.7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일 2-3만원 지급						
		,	지원금액		지원인원		취업자 1억원당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복지부	0	0	0	0	0	TIBCC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일 2-3만원 지급						
		기포 () 글포 () T 남자 첫 시 () 제계() 「글 ( <sup>2</sup> )간 년 시남						

#### 〈표 Ⅱ-15〉계속

정책수단	사업명			人	나 업 내	용						
		A 교니터 루티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Y F C Y I Y H V I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복지부	38	151	864	1418	864	22.7				
	포구미 시년 				내용							
		출산가정 도우미서비스 제공(도우미 지원단가 60				단가 60만	원)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사회	가사간병 기사간병	エセナハ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서비스 일자리	기시신당 도우미	복지부	612	739	11124	10833	11124	18.2				
			내용									
			사회적 일	실자리 제공	및 방문	도우미 /	서비스 제공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エゼナバ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기능 활성화	복지부	0	270	_	1340	0	-				
	/10 필명되	내용						2006 취업인원 864 22.7 난가 60만원) 취업자 1억원당 2006 취업인원 11124 18.2 비스 제공 취업자 1억원당 2006 취업인원 0 –				
				기관	반 운영비	지원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창업	자활공동체	エセナハ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영립 인센티브	시설등등세 창업자금지원	복지부	20	20	188	200	_	_				
근건니프	0 8718712	내용										
			자활 <sup>-</sup>	공통체 창업	업자금지원	일(2천만원	/1개소)					

# 마) 장기실업자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창업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 영업창업지원사업이 있다.10)

〈표 Ⅱ-16〉 장기실업자

정책수단	사업명	사 업 내 용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창업 인센티브	자영업창업지원	소년구시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장기실업자	노동부	0	150	0	144	0	_
한센디트	자영업창업지원)	내용						
					0			

<sup>10)</sup> 노동부의 고용안정사업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직접인센티브)의 경우 장기구 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이 외에도 여성, 장애 인 등 다양한 범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취약계층 일반으로 분류하 였다

### 바) 취약계층 일반

특정 취약계층을 지칭하지 않고 취약계층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 그램으로는 훈련사업,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 출사업이 있다.

훈련사업의 경우 고용촉진훈련이 있다. 동 사업은 2006년에 5,229명이 참여하였으며 취업자는 2,305명에 이른다. 2007년에는 3,53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경우 2006년과 2007년에 각 각 17,840명과 17,068명이 보조금을 통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 층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는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과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이 있다. 이 사업들은 취약계 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들이다. 사회적 일자리 제 공사업의 2007년도 계획금액은 1,215억 원이고 지원인원은 12,000명이며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2007년 1,981명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참 여인원은 11,144명으로 사업규모가 여타 사업들에 비해 매우 크다

〈표 Ⅱ-17〉취약계층 일반

정책수단	사업명	사 업 내 용								
		A 고나는 루!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고용촉진훈련	조선구시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훈련	(고용촉진훈련	노동부	74.6	70	5229	3530	2305	30.9		
	(일반))				내용			취업인원 30.9		
		-	고용촉진	훈련- 훈	련비/ 훈	련수당(1인	<u> </u>	4)		
コス・コ 〇 かえ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직접:고용창출,	٨١٦	조선무서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고용유지등을 위해 인건비 지원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노동부	454	460	17840	17067	17840	39.3		
	고등국신경너금	내용								
			장기구직자-월30만원 (1년간)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사회적 일자리	조선무서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지외적 될지다 제공	노동부	483	금액 지원인원 취업자 1억원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   3530 2305 30.6	17.6					
	110				내용		2006 취업인원 2305 30.9 IS 20만원) 취업자 1억원당 2006 취업인원 17840 39.3 간) 취업자 1억원당 2006 취업인원 8502 17.6 월77만원) 취업자 1억원당 2006 취업인원 10198 6.5			
사회서비스			- 한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 - 도동부 74.6 70 5229 3530 2305 30.9 내용 - 고용촉진훈련- 훈련비/ 훈련수당(1인당 20만원) - 관부처 2006 2007 2006 취업인 - 조동부 454 460 17840 17067 17840 39.3 내용 - 장기구직자-월30만원 (1년간) - 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 - 조동부 483 1215 8502 12000 8502 17.6 내용 - 공익성 높은 일자리 제공(인건비 월77만원) - 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 - 조무부 483 1215 8502 12000 8502 17.6 내용 - 공익성 높은 일자리 제공(인건비 월77만원) - 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 - 관부처 10원금액 지원인원 취업자 1억원 - 관부처 1억원 300 2007 2006 취업인 - 관부처 1억원 310 10198 11133 10198 6.5 - 내용							
일자리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조선구시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숲가꾸기	산림청	1579	1981	10198	11133	10198	6.5		
		내용								
				기능인 연	인건비 및	사업부대	H			

### 3) 일반

#### 가) 여성(전업주부 등)

전업주부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으로는 중기청의 '여성창업활성화 사업'과 여성부의 '전업주부재취업훈련 지원사업'이 있다. 여성창업활성화 사업은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및 여성창업강좌 운영 등 창업지원프로그램이다. 전업주부재취업훈련 지원사업은 창업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의 특성을 감안하되, 노동공급을 늘리기 위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표 Ⅱ-18〉 여성(전업주부 등)

정책수단	사업명	사 업 내 용									
		소관부	지원	금액	지원인원		취업자	1억원당			
7770		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공공고용	여성창업	중기청	24	24	3279	3310	0	0.0			
서비스와	활성화	내용									
행정		여성창업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시설 설치비 및 비용지원								
		여성창업	여성창업강좌-교육비여성창업경연대회-대회 포상금 등 행사경비								
		소관부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전업주부	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훈련	재취업	여성부	5	4.5	1157	1000	773	154.6			
	훈련지원				내용						
			Ž	상업 및 취업	교육지원(취	천만원/1개소	<u>-</u> )				

### 나) 실업자

일반적인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노동부의 '실업자재취직 훈련지원금 사업'과 농림부에서 18-44세의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업인턴쉽 지원'제도가 있다. 실업자재취직 훈련지원금 사업은 훈련생들에게 1인당 5~3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농업인턴쉽 지원사업은 실업자의 농업부문으로의 취업촉진을 위해 실무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 〈표 Ⅱ-19〉 실업자

ᄑᅜᆒᇫᇊ	HOR		니 전 네 오								
정책수단	사업명			<u>_</u>	나업 내용	5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인원		취업자	1억원당			
	실업자	소선구서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훈련	재취직훈련	노동부	1285	1575	53625	63177	32816	25.5			
	지원금	내용									
			훈련비/ 훈련수당(1인당 5-30만원)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소선구서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농림부 농	3.5	4.2	104	100	0	_			
					내용						
		목적 - 잠자	농업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	정착 동기 부	여로 농업			
교육,	농업인턴쉽	부분	신규인력	유입 촉진							
연수체험	지원	기간 - 05~	,								
인구세임	시견	규모 - 1005	명, 350백민	l 원							
		내용 - 만 1	8~44세의	미취업자 !	또는 사업시	행년도 3월	31일 현재	2006 취업인원 32816 25.5 취업자 1억원당 2006 취업인원			
		등학	교에 3학년	면으로 재학	중인 자 및	농업계 대	학에 재학 중	인 자			
		- 인턴	1인당 월50	)만원 한도,	월보수의	50%이내로	연간 5백만	원까지, 예			
		산이	가능하면	6백만원까?	지 지원 가능	5					
		- 1개월	월~12개월								

#### 다) 전문인력

앞에서도 밝혔듯이 전문인력의 범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석·박사 등 고학력 분야 외에도 특정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모두 전문인력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격을 필요로 하는 상당수의 사업들이 전문인력 대상 일자리 지원사업 에 포함된다. 그러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단기 일자리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

〈표 II-20〉 전문인력

정책수단	사업명	사 업 내 용							
		소관부처	2006 150 학생의 현장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소선구시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공공고용	학교기업	교육부	교육부 150 150 234 150 0 0.0						
서비스와	역표기합 육성	내용							
행정	平6	목적 - 흐	<b> </b>  생의 현장	실습과 교원	일의 연구능	력 발전, 신	난업체로 기·	술이전 촉진	
		등 산학협력 활성화							
	- 학교기업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신규 일자리 창출								

(五 11-20)	711 -								
정책수단	사업명			J	사업 내용	3			
공공고용 서비스와 행정	학교기업 육성	기간 - 06~07 규모 - 150억원 내용 - 〈대학, 전문대학, 실업계고의 학교기업 50개〉 제1기:(04~05) 지원학교 중 14교 선정(계속지원) 제2기:(06~07) 신규지원 학교 36교 선정 - 인건비, 운영관리비, 현장실습비, 생산시설장비구입비, 시설유지, 보수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エゼナバ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교육부	59	59	394	340	0	0.0	
		소관부처		금액		인원	취업자	1억원당	
		704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교육부	59	59	394 내용	340	0	0.0	
교육.	문제해결형				내용				
교육, 연수체험	연구지원	기: 고: 기간 — 199 규모 — 5,8 내용 — 이당 사 — 석사	회를 제공하용창출 8년부터 계 80백만원, 4 당계 신진 4 업에 연구 9 나과정 월 8	수 4 400명 내외 석박사 인력 연수토록 1년 0만원, 박시	력을 향상, : 들이 출연 및	기술혁신형 및 대학 등0 만원, 석사	과학기술인   서 수행하 월 120만원	l힐 수 있는 J재 양성 및 는 연구개발	
		소관부처	지원		지원인		취업자	1억원당 취업인원 8.9	
		UTIH	2006	2007	2006	2007	2006		
		산자부	60	60	534	430	534	8.9	
직접: 고용창출, 고용유지등 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내용  목적 - 이공계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자(취득예정자) 중 미취업자들 중소기업에서 연구 인력으로 고용시 인건비 보조를 통해 고용창출기간 - 06.1~06.12년(1년) 규모 - 430명, 6,000만원 내용 - 석사 1,440만원/년(기준연봉 2,200만원/년), 박사1,800만원/년(기준연봉 800만원/년) - 지원기간 1년 - 기관당 최대 2명 이내							
인건비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인	l원	취업자	1억원당	
지원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385	384	4686	5331	4686	12.2	
	중소기업 중소기업				내용				
	전문인력 채용지원	기간 - 04. 규모 - 1,12 내용 - 전된 하	10~ 5명, 8,100 문인력을 신 는 사업주를	백만원 규로 채용하 를 대상	및 전문인력의 가거나 대규도 월 120만원	그 기업의 전		파견받아 용	

\ <u>11-</u> 20/											
정책수단	사업명			)	사업 내용	용					
		소관부처		!금액	지원역		취업자	1억원당			
			2006	2007	2006	2007		지역인원 7.5 기타운영비) 1억원당 취업인원 3.0 기타운영비) 1억원당 취업인원 3.7 교육학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44	40	330	180	330	7.5			
	문화원형 창작디지털 콘텐츠화	쟁력 - 관련 기간 - 02^	을 한 단기 분야의 재	계 발전할 수 능과 능력을	- 있는 기조 을 갖춘 인적	마련 자원의 고	용창출				
		함), 고증, 자문, 콘텐츠 제작 및 개발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 대상 - 지원기간:개별과제마다 상이(대략 1년) - 지원금액:개별과제마다 상이(대략 1년)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역	<u> </u>	취업자	1억원당			
		エゼナハ -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복지부	33	32	100	100	98	3.0			
					내용						
단기 일자리	통합복지 콜센터	제: 기간 - 06^ 규모 -3,361 내용 - 인건 - 비정 - 장소 - 관소	공받을 수 (단년도 백만원, 10 비:2,042박 규직 사회 임차비용:4	있는 보건 <sup>5</sup> 계속사업) 00명 박만원, 1009 보험료 등:1 408백만원 5백만원(홍5	경(비정규직 58백만원	당					
		소관부처	지원	!금액		<u> </u>	취업자	1억원당			
			2006	2007	2006			330 7.5  취함으로써 다양성과 창출 로 제공(신규 확보 포수 있는 기관 대상 취업자 1억원당 2006 취업인원 98 3.0  라서비스를 한곳에서  매식비, 기타운영비) 취업자 1억원당 2006 취업인원 1604 3.7  나사, 문화, 교육학술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가경쟁력 강화 취업자 1억원당 2006 취업인원 40745 18.5			
		정통부	430	271	1604	1050	1604	3.7			
	-111701				내용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	목적 - 국가적으로 보존, 이용가치가 높은 과학기술, 역사, 문화, 교육학술 등의 자료를 DB로 구축하고, 인터넷으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마련하여 지식 정보의 이용촉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 기간 - 1999~ 규모 - 06년 신규 2천만건 지식DB구축, 43,000백만원 내용 - DB구축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소관부처	지원	원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보육시설	오선구서	2006	2007	2006	2007		취업인원			
	종사자	여성부	2196.6	2471.6	40745 내용	43935	40745	18.5			
사회	인건비										
서비스					육교사 인건			1			
일자리		소관부처		일금액		[인원 					
	민간시설		2006	2007	2006	2007					
	영아반 지원	여성부	988.8	1327.3	34940	36674	34940	35.3			
	이 전 시년			미가ㅂ의	내용	그 지원					
	민간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並 II-2U〉	게속									
정책수단	사업명			J	나업 내	용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결혼이민자	오선무서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가족	여성부	-	19.2	0	208	0	-		
	아동양육지원				내용					
				결혼이민자:	가정 도우미	서비스 지원	4			
		. =	지원	금액	지원	<u> </u>	취업자	1억워당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장애아가족	여성부	_	23,3	0	192	0	-		
	아동양육지원				내용	l	II.	2006 취업인원 0 - 21 기억원당 2006 취업인원 0 - 22 기억원당 2006 취업인원 0 - 23 기억원당 2006 취업인원 0 9,2 21 100만원/월 21 1억원당 2006 취업인원 22 9,2 23 100만원/월 23 1억원당 24 1억원당 25 26 1억원당 26 26 1억원당 27 27 27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소득층 장이	배아가족 돌·	복서비스 저	  공			
				금액	지원		취업자	1억워당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지역아동센터	복지부	98	366	902	4540	902			
	운영지원				내용					
				금액	지원		취업자			
	의료급여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의묘급어 관리	복지부	37	60	3686	6034	3686			
	(사례관리사)	7/11	07	- 00	내용	000+	0000	00.0		
	(*1=12=1*1)			이로근0		거비 지원				
			지원	<u> </u>	지원		취업자	1어워다		
사회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특수교육지원	교육부	0	65 2	0	604		11862		
서비스	인력확충		· ·	00.2	L 내용	004	0			
일자리				트스교유	 지원인력 인	거비 지워				
			지외	금액	지원근국 근		취업자	1어위다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깨끗한 학교	교육부	0	172	0	4231		TIBCC		
	만들기	#4T		112	L 내용	4201	0			
				ㅂ죠	 인력 인건비	지원				
			지의	<u> </u>	지원		취업자	1어의다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청소년 동반자	청소년위원회	16	26	300	400	300			
	프로그램운영	01LT1C4	10	20	<u> </u>	400	000	10.0		
				의기처소년	<u> </u>	로바자 지원				
			지위	<u> </u>	지원		취업자	1어위다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 — —		
	청소년 방과	청소년위원회	77	120	600	900	600			
	후 활동지원	STETTEN	11	120	<u> </u>	900	000	7.0		
	(아카데미)	0	ratulul ou	 ^게시 으며		여다다 채여	) TL/10∩∏⊦Ω	1)		
				<u>- 근까</u> 금액	지원		취업자			
	사회취약계층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대상	문화관광부	50	55	303	225	303	-		
	문화예술교육	내용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장애인 시설 대상 예술 강사 및 교보재 지원								
		이중속시시킬 첫 포한당에만 시킬 대형 에칠 당시 첫 교모제 시년								

정책수단					I OH III	0			
성색구단	사업명		TI01		나 업 내 ·		카이크!	4010151	
		소관부처		금액		인원	취업자	1억원당	
	문화관광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해설사	문화관광부	11	15	1200	1400	1200	-	
	양성배치				내용				
				월	45만원 지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분야별	포인무지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예술강사	문화관광부	89	178	1431	2000	1431	16.1	
	풀제운영지원				내용				
			(	예술관련 전	공자 강의(/	시간당 4만원	일)		
		. 714-1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생활체육	문화관광부	125	143	1237	1400	1237		
	지도자 지원	_ 1201			내용				
		시 사	· 함체요현여	의회 배치 사	., 0	자에게 월	146만워 지	급	
				금액	지원		취업자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5대강	환경부	5	40	7	167	7		
	환경지킴이	원경구	J	40	L/ 내용	107	- /	1.4	
사회			ıl	지 1억원당 취업인원 1.4 1억원당 취업인원 6.9 1억원당 취업인원 7 - 1억원당 1억원당 1억원당 1억원당 1억원당 1억원당 1억원당 1억원당					
서비스				<u> 원성시점에</u>  금액	지용, 인신	<u>비 및 부대</u>		1010151	
일자리		소관부처					취업자		
	생태우수지역	취거니	2006	2007	2006	2007	2006		
	일자리 창출	환경부	71	82	492	528	492	6.9	
				지어된거이	내용	L DI Hellui			
			-10			및 부대비	-101-1	취업인원 6.9 1억원당 취업인원	
		소관부처		금액	지원		취업자		
	산림서비스		2006	2007	2006	2007	2006		
	증진사업	산림청	24	114	200	767	200	8.3	
					내용				
						스 요원 인		1	
		소관부처		금액		인원	취업자	1	
		-C171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산림보호강화	산림청	13	328	87	3263	87	_	
					내용				
			저소득층	고용확대 5	및 산림서비	스 요원 인	건비 지원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거시나기	エゼナ ハ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정신보건 센터운영	복지부	38	88	315	560	315	8.3	
	센티正경				내용				
					운영비 지원	븬			
	여성창업자금	. 71 - 1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101	지원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1	
창업	(여성기술인력	여성부	73.6	사업종료	196	사업종료	0		
인센티브	창업자금	.51			내용				
	지원사업)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사업-1억대출(4.5%)							
	1	어정기물인덕 상업사금 시원사업-1억대술(4,5%)							

# 라) 국민 일반

특정의 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 업으로서 훈련, 교육연수체험, 간접 고용인센티브 제공, 단기 일자리, 사 회서비스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이 중 간접고용 인센티브 사업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 출지원금', '교대제 전환지원금'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대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외의 사업들은 대부분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구성되며, 특히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대부분은 전문인력과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Ⅱ-21〉 국민 일반

정책수단	사업명			٨	사업 내 :	용				
		. 71 - 1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191	228	14699	16935	8070	42.3		
	기능사양성				내용					
훈련	특별훈련 (다기능기술자 양성)	인 기간 - 06 규모 - 19	력 양성, 3.1~06.12 ,154백만원	228 14699 16935 8070 42.3  내용  대용  대, 기술발전에 필요한 산업현장 수요 중심의 기술  당급 , 17,905명 승재료비, 등 교육훈련비용 일부지원, 중식비 일부 호 우수 기업체 취업 알선 및 사후 지도 금액 지원인원 취업자 1억원당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12 426 480 214 20.2  내용  독진훈련-훈련비 및 훈련수당(1인당 20만원) 금액 지원인원 취업자 1억원당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금액 지원인원 취업자 1억원당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285 1435 1358 0 0.0						
			보조. 수료후 우수 기업체 취업 알선 및 사후 지도							
	-0+H-3			<u></u> !금액				1억원당		
	고용촉진훈련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노동부	10.6	12	426	480	214	20.2		
	(농특))				내용					
	(0=//	농(	거민 고용	촉진훈련-	훈련비 및	훈련수당(1	인당 20만	원)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エピナバ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외교부	291	285		1358	0	0.0		
교육, 연수체험	KOICA 개발협력단 사업	기간 — 19 규모(200) 내용 — 동 — 조								

정책수단	사업명				사업 내							
		소관부처		금액	지원			_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85	64	2423	2500	2423	_				
	o.				내용							
	중소기업					선을 지원하	하여 정년증	등 유류				
	고용환경개선	_		·기업 유입	확산							
	지원금	기간 - 04	•	),353백만원	J			2006 취업인원 2423 -   청년충 등 유휴  위한 시설설비개 자수가 증가한 사 로자인건비 1인당  취업자 1억원당 2006 취업인원 609 30.5  함 및 일자리 창  또는 업종추가를  기업당 30인 한도)  취업자 1억원당 2006 취업인원 7058 22.3				
						요하겨개서	으 이하 시	006 취업인원 423				
								. — —				
		_	체를 대성		17/10/1	"""		5/12 /1				
		_		-	3,000만	원)와 증가	근로자인건	l비 1인당				
		12	120만원(최대 30인) 1회 지급									
		소관부처	지원	년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간접:고용		4. イン・イン・イン・イン・イン・イン・イン・イン・イン・イン・イン・イン・イン・イ	2006	2007	2006	2007	원   취업자   1억원당   2007   2006   취업인원   2500   2423   −	취업인원				
창출을		노동부	20	25	609	700	609	30.5				
유도하기			내용									
위한	중소기업 시그어조지츠	목적 - 중소기업의 신규업종 진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										
사업비	신규업종진출	_	출 지원					# 취업인원				
지원	지원	기간 - 0		. • • • • • • • • • • • • • • • • • • •	) I							
				,040백만원	_	중 어조지	え にし 0	オスティルコ				
								지설설비개 증가한 사 번비 1인당 1억원당 취업인원 30.5 일자리 창 2조추가를 30인 한도) 1억원당 취업인원 22.3 여 교대제 한함)하고				
							-	이이 하도)				
				H금액	지원							
		소관부처	2006	2007	2006							
		노동부	316	230	7058	6390	7058	22.3				
					내용							
	교대제전환				한 근로자	의 고용촉	진을 위하여	겨 교대제				
	지원금	기간 — 0	전환 사업	주 지원								
				1,509백만원	깈							
		내용	고용보험	가입사업주	가 교대제		드 이하에	한함)하고				
					기업을 대성							
		- 1		180만권~ 년금액	식 1년간 지 지원		치어나	1010171				
		소관부처	2006	2007	2006							
		행자부	43	41	293			취업인원 30.5 일자리 창  업종추가를 30인 한도) 1억원당 취업인원 22.3 여 교대제 한함)하고  1억원당 취업인원 6.8  전한 보존,				
		0/11	1 40	71	<u> </u>	200	200	0.0				
-Lal		목적 - 중	- - - - - - - - - - - - - - - - - - -	을 체계적		하여 기록위	유산의 안전	22.3 년 교대제 한함)하고 1억원당 취업인원 6.8 한 보존,				
단기 일자리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전	선증 및 국	민에게 열	람 서비스를	를 제공하기	위함.					
크시디	영니사립	기간 - 19	98.8~02	12(공공근	로사업), 03	1.1~						
								리기기 구				
	L		- ,	_,	및 토요일	! 임금지급	, 4대보험기	l입, 연차				
유급휴가 15일 부여												

۱۱-۲۱/	<b>∕1</b> 1 ¬											
정책수단	사업명			J	사업 내	용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4. イン・イン・イン・イン・イン・イン・イン・イン・イン・イン・イン・イン・イン・イ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행자부	700	515	13305	4203	13305	19.0				
					내용							
	행정정보 DB구축		·민생활과 ·동활용 형 ·진	밀접한 형 할 수 있는	l정기관 보 · 기반을 2	유 공공정 <u>!</u> 조성하여 일	보를 DB로 별린 전자정	구축하고 성부구현을				
		기간 - 06 규모 - 70 내용 - 38 - 지	0억원 3,239원(중	·소기업협동 일~11월(각	S조합중앙화 사업별 지	회 자료입력 원기간이 성	1원 단가) 상이함)					
단기				금액	지원		취업자	1억원당				
일자리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국민연금 상담사 채용	복지부	224	171	1654	1200	1654	7.4				
					내용							
						해소 대책(	에 부응					
		기간 - 0										
				년원 1,650당								
		내용 - 〈인건비〉19,333백만원										
		봉급:1,650명 *790천원 *11월=14,339백만원										
		사회보험료:1,364백만원(17,968백만원 *8,385%=14,339백만원) 중식비,교통비:1,650명 *11월=18,150명										
							<b>⊢</b> *					
		- (				겨비:1,6505		.0101=1				
	아이돌보미	소관부처		금액	지원		취업자	1억원당				
		A HH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사회적일자리	여성부	_	26.9	0	798	0	_				
	사업	내용 돌보미 이용비용 지원										
			T10				카이 기	4010151				
	E 711 01	소관부처		금액	지원		취업자	1억원당				
	독거노인	HTIH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생활지도사	복지부	0	236	0	7200	0	_				
	파견사업		비원도	1-11 1141	내용		10 II OI)					
사회						!시(1인당 3		4010151				
서비스	011-05	소관부처		금액	지원		취업자	1억원당				
일자리	요보호아동	W-1U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그룹홈형태	복지부	9	26	120	352	120	13.3				
	보호사업			UI-1-1-1-1	내용	UEL COST	01.401)					
						배당 262천	1	.010:-1				
		소관부처		금액	지원		취업자	1억원당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활동보조인	복지부	0	296	0	11000	0	-				
	지원	내용										
		장애인 바우처 제공 및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10 X 20	>/101-	- 10								

١١-٢١/	711-7										
정책수단	사업명	사 업 내 용									
		소관부처	지원	현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노인돌보미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바우처	복지부	0	322	0	4683	0	-			
					내용						
					봄서비스 저	_	-101-1	.0.01=1			
		소관부처		실금액 - 0007	지원		취업자	1억원당			
	지역복지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서비스 혁신사업	복지부	0	771	<u>0</u> 내용	17400	0	_			
	학전시대				<u> </u>						
			지유		지원	이위	취업자	1억원당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방문보건사업	복지부	0	150	0	2000	0	-			
	활성화	1.11	내용								
			의료	로취약계층	위한 보건의	료서비스	제공				
	TINIOI	시 기 터 크	지원	념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장애인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복지부	0	50	0	2000	0	-			
	지원사업				내용						
	Mente				원, 장애인						
		소관부처		년금액	지원		취업자	1억원당			
사회	농촌여성결혼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서비스	이민자 지원	농림부	0	19	0	300	0	_			
일자리				ныппо	내용 도우미 프로	그래 되어					
			т19	<u> </u>	포우미 프도 지원		취업자	1억원당			
		소관부처	2006	2007	2006	<u> 2007</u>	2006	취업인원			
	자원봉사	행자부	0	17	해당없음	496	해당없음	-			
	도우미	0/11			내용	400	MO WO				
				센터별 :	코디네이터	2명 지원					
		171111	지원	 실금액	지원		취업자	1억원당			
	장애아동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특수교육	교육부	0	197	2452	4000	2452	-			
	보조원				내용						
		특수교:			남강사,방과		1				
		소관부처		년금액	지원		취업자	1억원당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방과 후 학교	교육부	40	610	476	10335	476	11.9			
				U T /	내용	TI01					
			T10	<u>모소՝</u> 년금액	인력 인건비 지원		취업자	1010151			
		소관부처	2006	2007	시년 2006	인원 2007	위입사 2006	1억원당 취업인원			
	고구여자우여	문화재청	0.6	16	11	36	해당없음	HB28			
	고궁연장운영	문화새성   0.6   16   11   36   해당없음   - 내용									
				과랑권 매표		내 관란 제국	로				
		관람권 매표 및 문화재 관람 제공									

#### 〈표 Ⅱ-21〉계속

정책수단	사업명			人	나 업 내 왕	를			
		A 교타를	지원	년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ㅁ딁케ㅌㅃ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문화재특별 관리비 지원	문화재청	0	29	0	356	0	-	
	[전다마 시간				내용				
			국자지정 문화재 관리비 지원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포근구시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문화관광부	5	60	80	333	80	-	
				•	내용				
사회			C	연장운영 인	<u> </u> 건비 및 원	은영비 지원			
서비스	박물관 연장운영		지원	년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일자리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문화관광부	30	33	29	92	29	-	
					내용				
			Ç	연장운영 인	<u> </u> 건비 및 은	2영비 지원			
		소관부처	지원	년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エロナハ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미술관 연장운영	문화관광부	2	11	12	15	12	-	
					내용				
			(	연장운영 인	<u> </u> 건비 및 은	은영비 지원			

#### 4) 특정 대상자가 없는 지원사업

특정의 목표집단이 없는 사업들은 대부분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과 관 련된 사업들로 주로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사업들이 이에 해 당된다. 그런데 이들 사업 중에는 일자리 지원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 이 없는 사업들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즉 이 사업들 중 조사 및 연구와 관련된 사업들은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 〈표 Ⅱ-22〉 재직근로자

〈並 II-22〉	재식근로자									
정책수단	사업명			人	업 내	용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그 오 기 이 세 디	조선무지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고용지원센터 육성	노동부	50	34	_	-	-	_		
	폭경				내용					
				고용지	원센터 기	l능강화				
		A ZUH FI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최어지의	노동부	49	49	0	0	0	0.0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축	내용								
	(직업정보제공	목적 - 노동시장 및 직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직업								
	및 직업지도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학생, 구직자들의 진로설								
	(2007자료					지원하0	1 산업현장	의 고용안		
	직업지도))	정	및 청년(	실업 해소0	베 기여					
		기간 - ㅈ	—							
			900백만원		. =1 =10					
		내용 - 일					서비스를 제			
	취업지원	소관부처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프로그램 구축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노동부	25	21	0	0	0	0.0		
	및 직접시도 (2007자료				내용					
7770	직업지도))				0					
공공고용 서비스와		4 71 H =1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행정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00		노동부	31	25	0	0	0	0.0		
		내용								
	고용정보망	목적 –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용관련 서비스의								
	운영			_		_	고용 관련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를 통한 노	동시장 홀	날성화에 기	기여			
		기간 - 계	—							
		규모 - 3,			117					
		내용 - 일	반국민에기			0101	카이 기	1010151		
		소관부처	지원		지원		취업자	1억원당		
		I EH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14.9	14		0	U	0.0		
		ㅁᅯ -	200101 (	) ] ] A A	내용	7211		E 71 01		
	   중장기인력수급		<u> </u>				_, 공시시 <sup>_</sup> 대표하는			
	전망기초통계생		1시는 인구 11자료 제공		등 중인 포	-6시6글	네포이는	구세식 중		
	산(산업직업별	)   기간 — 01								
	고용구조조사)			일(제세고고	I글 21배(	마워 인터	반운영비 1.4	421배마워		
	"		,+00 국 년 2 겨비 47백년		10 2171		2001 1,			
				/	한 신규	표본구입	비(30백만원	l). 조사표		
			. —	. —						
		본 증가(25천) 및 물가상승률 반영 내용 - 전국 7만5천 표본가구 조사를 통해 산업소분류(194개), 직업								
		세분류(391개)별 고용구조 파악 및 직업전								

정책수단	사업명		사 업 내 용													
0 11 2	120		지원		지원		취업자	1억원당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4	78	0	0	0	0.0								
				1.0	<u></u> 내용			0.0								
	중장기인력수급 전망기초통계생 산(청년패널구축)	지간 — 0' 규모 — 4 - E	지입과정 동력수급 자료로 홀 ~ 00백만원( 비 4백만원 남례품현실:	성 및 노동 예측에 <sup>홀</sup> 용 제세공과금 , 업무추진화(15,000위	를 통한 인 시장 경 가용하고 E 라 4백만원 보비 6백민 원, 자문	험의 분석 단기 및 경 명, 일반운 (원) 회의 개최	의 축적과정 성을 통하여 중장기 정책 음영비 386박	청년층의 수립의 기 백만원, 여 업무추진비								
			(1년증 5,00 1입과정, 2		인적자본	의 형성괴	청과 노동시	시장으로의								
		A ZLH 로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19	18	0	0	0	0.0								
				1	내용		•									
공공고용 서비스와 행정	중장기인력수급 전망기초통계생 산(대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	음 ( 기간 — 00	원활한 이형 대와 대학 명 DB로 구 수급정보 7 6~	행을 지원하 졸업자의 경 구축함으로 제공 및 인	하기 위한 명력개발 써 교육 ! 력 수급불	다각적인 및 직업0 ェ동시장 불일치 완화		의 요구증 추적조사하 있는 인력								
			규모 - 1,854백만원(제세공과금 10백만원, 일반운영비 1,759백만원, 여비 85백만원) 내용 - 대학졸업자의 6만명의 경력개발 및 직업이동경로를 추적 조사													
			지원		지워		취업자	1억원당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250	276	0	0	0	0.0								
	종합직업체험관	<u> </u>			L 내용			· ·								
	(Job World)	기간 - 09 규모 - 2,	i를 제공하 5~10	h여 건전한	네 대한 대		험 및 직업 기식을 정립	탐색의 기								
			지원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실업계고교	노동부	0	47	0	0	0	-								
	취업지원기능확충	내용														
				취업지원	관련 사	업비 보조										
						취업지원 관련 사업비 보조										

		사 업 내 용									
정책수단	사업명		101								
		소관부처	지원		지원		취업자	1억원당			
	인적자원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종합정보망 	교육부	2	4	0	0	0	0.0			
	구축				내용						
					0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꼬만구시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50	97	0	0	0	0.0			
		내용									
	지역고용창출	목적 - 지방자치단체, 노사단체, 대학 등이 함께 협력하여 당해 지									
	및						관련이 있는	_			
	인적지원개발 지원						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 6.1∼06.12(		고용안성(	세 기여					
			000백만원	. —,							
		, ,		=	20억원 공	<b>악역자치</b> 도	·체(기초지지	다체 포함)			
		단위별로 지자체, 지역 노사단체, 비영리단체 등이 제안한									
		;	지역 고용	항출 및 고	용안정 시	서업 중 평	기를 통해	선정			
	- 학교에서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공공고용		エゼナバ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서비스와		교육부	0	21	0	0	0	_			
행정		내용									
	직업세계로의	목적 - 국민의 생애단계별 진로관리 능력의 개발 지원 및 진로정보									
	원활한	인프라 구축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평생교육 확대									
	이행촉진	기간 - 19   그ㅁ - x		다 1개人 ㅁ	I 커피에	네 1조 으	여 서바냐?	5 J L E EOO			
		규모 - 진로정보센터 1개소 및 커리어넷 1종 운영, 석박사조사 5,500   명, 진로정보서 3종 발간, 직무능력표준 개발 인트라 구축 및									
		_	,  범개발	- 1 - 0 - 2	,	0 !					
		내용 - 직	무능력표	준 개발 인	트라 구축	후 및 시범	개발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エピナバ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19	19	0	0	0	_			
	뉴패러다임				내용						
	확산	목적 - 고	고대제 전환	한고 교육	훈련강화	등 기업의	의 인적자원	개발 혁신			
		_	을 유도함의	으로써 일지	h리 창출(	게 기여					
		기간 - 0									
		, ,	936백만원  버사어체(		서티 ㅊㅍ	:1					
	노사협력능력 <i>4</i> 개발지원 —	네공 - ^	용 - 시범사업체에 대한 컨설   지원금액		기월당 주신 지원인원		취업자	1010171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1억원당 취업인원			
		I E U	5		0	0	0	пасс			
		노동부	5	5	U	U	U	_			

계속 											
사업명		사업내용									
노사협력능력 개발지원	처 및 ㅎ 기간 — 00 규모 — 50 내용 — 신	에서 업종   자격종도  는 경우 t  3.1~06.12  20백만원   남업내 직종   나업내 자격	환련기관 등내 직종별 내 직종별 당 개발 등 비용을 지원 별 인력, 병훈련 기준	내용 으로 구 <sup>4</sup> 인력수급 산업특수 로 로 및 교육	성된 산업 급 실태조. 수적 인적 실태분석 훈련 프로	사, 교육훈련 자원개발사 연구, 컨설	변프로그램 업을 실시 팅비용 및				
	노동부						-				
	401	10	10								
채용박람회지원	추 산 기간 - 지 규모 - 1,	목적 - 구인구직자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취업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사업체에게는 필요인력을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 - 지속사업 규모 - 1,007백만원 내용 - 채용박람회 개최									
대학취업지원 기능확충	소관부처 노동부	지원 2006 101	금액 2007 147	지원 2006 0 내용	인원 2007 0	취업자 2006 0	1억원당 취업인원 -				
	지간 - 00 규모 - 10 내용 - 7	목적 - 청년층 접근이 쉬운 대학의 취업지원기능 확충을 통한 직업 진로지도 강화로 청년층의 직장선택, 직업능력 제고 및 실업 예방 도모 기간 - 06~(신규사업) 규모 - 10,098백만원(사업비:10,000백만원, 사업운영비:98백만원) 내용 - 지원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 심사후 선정하여 사업 전반에 걸쳐 재학생수에 따라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3억5천만원까지 지원									
	A 과비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오선무서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노동부	6	5.7	0	0	0	0.0				
	J .										
지역별인력 및 직업훈련수요조사	목적 -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에 맞는 훈련과정을 공급, 수요자 중심의 실업자 훈련 체계를 마련하여 훈련과 취업의 연계 강화기간 - 06.1~06.12 규모 - 6억원 내용 -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사업명  노사협력능력 개발지원  대학취업지원 기능확충	사업명 목적 - 노차 등 등 기간 - 00 기간 - 00 기간 - 00 기간 - 00 기간 - 1.1 내용 - 차 모두부 목적 - 구추 산 기간 - 00	사업명  목적 - 노사, 교육 등 체에서 업종 및 자격 종독 하는 경우 년 기간 - 06.1~06.12 대용 등 사업내 지점 사업내 자기 100 등	사업명  목적 - 노사, 교육훈련기관 등 체에서 업종내 직종별 및 자격종목 개발 등 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기간 - 06.1~06.12 규모 - 500백만원 내용 - 산업내 직종별 인력, 사업내 자격훈련 기준 2006 2007 노동부 10 15  목적 - 구인구직자에게 만남 취업정보와 기회를 자신속히 채용할 수 있었기간 - 지속사업 규모 - 1,007백만원 내용 - 채용박람회 개최  작관부처 지원금액 2006 2007 노동부 101 147  목적 - 청년층 접근이 쉬운 대원 대왕 도모 기간 - 06~(신규사업) 규모 - 10,098백만원(사업비:1내용 - 지원대학으로부터 시사업 전반에 걸쳐 자 3억5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학으로부터 시사업 전반에 걸쳐 자 3억5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학으로부터 시사업 전반에 걸쳐 자 3억5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1년  작관부처 지원금액 2006 2007 노동부 6 5.7  목적 - 지역별인력 및 조련 및 근련 및 근련하여 훈련과 취임기간 - 06.1~06.12 규모 - 6억원 내용 - 지역별 인력 및 훈련 기간 - 06.1~06.12 규모 - 6억원 내용 - 지역별 인력 및 훈련 기간 - 06.1~06.12 규모 - 6억원 내용 - 지역별 인력 및 훈련 기간 - 06.1~06.12 규모 - 6억원 내용 - 지역별 인력 및 훈련	사업명	사업명  - 사업 내용 - 내용	사업명  사업 내용  내용  목적 - 노사, 교육훈련기관 등으로 구성된 산업별 인적자원 체에서 업종내 직종별 인력수급 실태조사, 교육훈련 및 자격종목 개발 등 산업특수적 인적자원개발사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 기간 - 06.1~06.12 규모 - 500백만원 내용 - 산업내 직종별 인력, 훈련수요실태분석 연구, 컨설사업내 자격훈련 기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조관부처 지원금액 지원인원 취업자 2006 2007 2006 노동부 10 15 0 0 0 0 대용  목적 - 구인구직자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에게 참접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사업체에게는 됩심장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사업체에게는 됩심장 해공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 - 지속사업 규모 - 1,007백만원 내용 - 채용박람회 개최  조관부처 지원금액 지원인원 취업자 2006 노동부 101 147 0 0 0 0 대용  목적 - 청년총 접근이 쉬운 대학의 취업지원기능 확충을 진로지도 강화로 청년총의 직장선택, 직업능력 제과예방 도모 기간 - 06~(신규사업) 규모 - 10,099백만원(사업비:10,000백만원, 사업능력 제과예방 도모 기간 - 06~(신규사업) 규모 - 10,099백만원(사업비:10,000백만원, 사업운명비:98박 내용 - 지원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 심사후 사업 전반에 걸쳐 재학생수에 따라 최소 3천만원 3억5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1년  조관부처 지원금액 지원인원 취업자 2006 보통부 6 5.7 0 0 0 대용  목적 -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 및는 훈련과정을 공급, 수요자 중심의 실업자 훈 마련하여 훈련과 취업의 연계 강화 기간 - 06.1~06.12 규모 - 6억원 내용 -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연구기관을 대상으				

정책수단	사업명			人	업 내	용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노인인력기관 보인인력기관	조선구시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 도인인탁기된 - 운영지원	복지부	17	30	0	0	0	0.0		
	T 0/1/2				내용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정	정보시스턴	구축비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_ 74 = 101 = 10 = 11	エゼナバ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고령자인재은행	노동부	7	8	0	0	0	_		
공공고용	지원	내용								
			인:	건비 및 부	!대비(840	)만원/507	내소)			
서비스와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행정	자네이치어지의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장애인취업지원 (장애인취업알	노동부	13	19	0	0	0	0.0		
	선관리)				내용					
			장애인	고용보조금	-장애정.	도와 근속	에 따라			
			지급장	애인고용정	y려금-1인	<u>l당 고시</u>	금액지원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취업자	1억원당		
	노사공동재취업		2006	2007	2006	2007	2006	취업인원		
	지원센터지원	노동부	22	31	0	0	0	0.0		
					내용					
			노사공통	등채취업지	원센터 운	은영비 사업	설비 지원			

#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적 분석



제Ⅲ장에서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적분석을 통해 현행 일자리 지원사 업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평가지표 및 여기에 적합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는 현재로서는 가능하지가 않다. 따라서 본 장에서 는 지원실적 및 취업자 통계를 중심으로 실적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의 수집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기획예산처는 매년 각 부처로부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 자료 를 수집하여 집계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지원금액과 지원인원 수만 기 록되어 있다. 그런데 지원인원과 취업자 통계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고용인센티브(보조금)사업이나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원인원이 취업자 를 의미하지만, 훈련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획 예산처를 통해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취업자 통계를 수집하였다. 다만 창업인센티브의 경우 창업자금지원이나 전세금융자 등으로 직접적인 취 업의 의미가 아니어서 취업자 통계에서는 제외하였으며, 공공고용서비스 와 행정의 경우에도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한 취업실적이 발표되고 있으나 취업자 통계의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의 제약상 고용에 대한 질적인 측면은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취업자 통계는 단순히 지원인원의 개념을 취업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리한 정도이다.

# 1 지원실적 현황

#### 가. 정책수단별 지원실적

〈표 Ⅲ-1〉과 〈표 Ⅲ-2〉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인원과 지원금액을 정책수단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2005년 에 1조 5,781억 원에서 2006년에는 2조 109억 원, 2007년에는 2조 7,124 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사회서비스 일자 리사업의 지원증가가 두드러진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경우 2005년 에 9,671억 원에서 2007년에는 1조 7,380억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운 증 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금액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 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에는 동 사업은 전체 일자리 지원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47.7%를 차지하고 있 다. 단기 일자리 지원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은 전체 지원금액의 2/3에 이르고 있다.

지원인원 면에서 보면 2005년 47만여 명에서 2005년에는 57만여 명으로 그리고 2007년에는 68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1인당 지원금액을 보면 2005년에 0.033억 원에서 2005년에는 0.035억 원 그리고 2007년에는 0.040억 원으로 나타나 일자리 지원사업이 사업 수에서도 증가하였지만 사 업단위당 지원금액도 함께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Ⅲ-1〉 정책수단별 지원금액과 지원인원

(단위: 억원, 명)

		;	지원금의	<b></b>	;	지원인원	4	1인당 지원금액			게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계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403.6	919.4	1044.0	8163	9480	8460	0.049	0.097	0.123	0.270
	훈련	3383.0	3948.2	4860.5	142237	137076	144036	0.024	0.029	0.034	0.086
노동 시장 훈련	교육, 연수체험	1514.7	1089.0	1082.7	77877	76128	65724	0.019	0.014	0.016	0.050
운년	계	4897.7	5037.2	5943.2	220114	213204	209760	0.022	0.024	0.028	0.074
고용	직접	417.0	2166.0	1910.0	28418	63182	53528	0.015	0.034	0.036	0.085
인센티	간접	106.0	421.0	319.0	4347	10090	9590	0.024	0.042	0.033	0.099
브	계	523.0	2587.0	2229.0	32765	73272	63118	0.016	0.035	0.035	0.087
T.   T.	단기일자리	4427.0	4269.0	4441.0	117249	150820	187783	0.038	0.028	0.024	0.090
직접 일자리 차추	사회서비 스 일자리	5244.0	6986.4	12939.5	92427	121653	206453	0.057	0.057	0.063	0.177
창출 -	계	9671.0	11255.4	17380.5	209676	272473	394236	0.046	0.041	0.044	0.132
창업역	창업인센티브		310.6	528.0	1733	1485	1574	0.165	0.209	0.335	0.710
	계		20109.6	27124.7	472451	569914	677148	0.033	0.035	0.040	0.109

# 〈표 Ⅲ-2〉 정책수단별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비중

(단위: 억원, 명)

		X	원금액비	S	Х	원인원비	중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공공고용서년	비스와 행정	2.6	4.6	3.8	1.7	1.7	1.2
노동시장 훈련	훈련	21.4	19.6	17.9	30.1	24.1	21.3
	교육, 연수체험	9.6	5.4	4.0	16.5	13.4	9.7
	계	31.0	25 <u>.</u> 0	21.9	46.6	37.4	31.0
	직접	2.6	10.8	7.0	6.0	11.1	7.9
고용인센티브	간접	0.7	2.1	1,2	0.9	1.8	1.4
	계	3.3	12.9	8.2	6.9	12.9	9.3
	단기일자리	28.1	21,2	16.4	24.8	26.5	27.7
직접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33.2	34.7	47.7	19.6	21.3	30.5
	계	61.3	56.0	64.1	44.4	47.8	58.2
창업인	창업인센티브		1.5	1.9	0.4	0.3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나. 정책대상별 지원실적

〈표 Ⅲ-3〉과 〈표 Ⅲ-4〉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인원과 지원금액을 정책대상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먼저 정책대상별 지원금액을 대분류상으 로 보면 청년층에 대한 지원금액 비중이 21.0%, 취약계층 33.4%, 이들을 제외한 일반이 42.0%로 나타났다. 일자리 지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정책관점인데,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비중 이 낮게 나타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경우 고졸 미취업자 와 청년실업자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으며,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저소득 자와 취약계층 일반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다. 이러한 특징은 대상자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나 고령자에 대한 지원비중이 매우 낮은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일반의

〈표 Ⅲ-3〉 정책대상별 지원금액과 지원인원

(단위: 억원, 명)

			금액		인원			1인당 지원금액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고졸 미취업자	830	1346	1925	14479	21557	19250	0.057	0.062	0.100
	대졸 미취업자	240	185	190	5788	4835	4250	0.041	0.038	0.045
	고등학교 재학생	264	343	359	9559	8777	8425	0.028	0.039	0.043
청년층	대학(원) 재학생	65	107.5	112	792	1878	2991	0.082	0.057	0.037
	청년 실업자	1608	2228	1888	111202	128408	106217	0.014	0.017	0.018
	청년층 일반	17	19	34	5283	5967	5305	0.003	0.003	0.006
	계	3024	4228.5	4508	147103	171422	146438	0.021	0.025	0.031
	고령자	200	520	763	35127	83038	110000	0.006	0.006	0.007
	여성 (여성가장, 업자)	52.6	50	98	1419	1268	1245	0.037	0.039	0.079
취약	장애인	291	307	423	6289	7423	6160	0.046	0.041	0.069
계층	저소득자	2685	3251	3872	64783	67224	90823	0.041	0.048	0.043
	장기실업자	0	0	150	0	0	144	-	-	1.042
	취약계층일반	1885	2590.6	3726	26511	41769	43730	0.071	0.062	0.085
	계	5113.6	6718.6	9032	134129	200722	252102	0.038	0.033	0.036
	여성(전업주부 등)	29.1	29	28.5	3702	4436	4310	0.008	0.007	0.007
	실업자	1371.5	1288.5	1579.2	64299	53729	63277	0.021	0.024	0.025
일반	전문인력	4071.6	5074	6689.6	75087	94523	115609	0.054	0.054	0.058
	국민 일반	1943.3	2054.6	4440.9	48131	45082	95412	0.040	0.046	0.047
	계		8446.1	12738.2	191219	197770	278608	0.039	0.043	0.046
[	대상자 없음		716.4	846.5	0	0	0	-	-	-
	계		20109.6	27124.7	472451	569914	677148	0.033	0.035	0.040

〈표 Ⅲ-4〉 정책대상별 연도별 지원금액 및 비중

			지원금액			지원인원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고졸 미취업자	5.3	6.7	7.1	3.1	3.8	2.8
	대졸 미취업자	1.5	0.9	0.7	1,2	0.8	0.6
	고등학교 재학생	1.7	1.7	1.3	2.0	1.5	1.2
청년층	대학(원) 재학생	0.4	0.5	0.4	0.2	0.3	0.4
	청년 실업자	10.2	11,1	7.0	23.5	22.5	15.7
	청년층 일반	0.1	0.1	0.1	1,1	1.0	0.8
	계	19.2	21.0	16.6	31.1	30.1	21.6
	고령자	1.3	2.6	2.8	7.4	14.6	16.2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0.3	0.2	0.4	0.3	0.2	0.2
	장애인	1.8	1,5	1.6	1.3	1.3	0.9
취약계층	저소득자	17.0	16.2	14.3	13.7	11.8	13.4
	장기실업자	0.0	0.0	0.6	0.0	0.0	0.0
	취약계층일반	11.9	12.9	13.7	5.6	7.3	6.5
	계	32.4	33.4	33.3	28.4	35.2	37.2
	여성(전업주부 등)	0.2	0.1	0.1	0.8	0.8	0.6
	실업자	8.7	6.4	5.8	13.6	9.4	9.3
일반	전문인력	25.8	25.2	24.7	15.9	16.6	17.1
	국민일반	12.3	10.2	16.4	10.2	7.9	14.1
	계		42.0	47.0	40.5	34.7	41.1
	대상자없음		3.6	3.1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우 실업자의 비중이 낮은 반면에 전문인력이나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지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순취업효과를 낮추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1인당 지원금액 면에서 보면 고졸 미취업자와 장기실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이 높다.

### 다. 정책수단 및 대상별 지원실적

〈표 Ⅲ-5〉와 〈표 Ⅲ-6〉은 정책수단 및 대상별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을 보여 주고 있다. 표의 윗부분은 정책대상을 100으로 한 것이고 아랫부분 은 정책수단을 100으로 하여 각 비중을 구한 것이다. 이는 정책대상별로 어떤 정책수단이 지원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정책대상을 기준으 로 살펴보면, 청년층의 경우 노동시장훈련에 대한 지원비중이 68.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직접인센티브가 30.0%로 두 수단이 거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층을 세분하여 보면 차이가 있 음을 발견할 수 있다. 고졸 미취업자는 훈련이 100%이며, 고등학교 재학 생은 97.1%를 차지하고 있어 고졸 수준의 대상자에게는 훈련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대졸 미취업자나 재학생은 교육, 연 수체험 수단이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년층 일반은 공공고용서비 스와 행정이 100%이며, 청년실업자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비중이 56.9%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 단기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지원 비중이 8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보다 세분하여 살펴보면 이 또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단기일자리가 100%인 데 비해, 장애인의 경우에는 창업인센티브가 60.9%이고 훈련이 39.1%를 차 지하여 직접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원이 전혀 없다. 여성가장 등 여성취 약계층의 경우에도 창업인센티브와 훈련 외에 다른 지원실적은 없다. 이 에 비해 저소득자나 취약계층 일반의 경우 직접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지 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끝으로 일반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전업주부 등 여성은 공공고용서비 스와 행정이 82.8%이고 실업자는 노동시장 훈련이 100%이다. 이에 비해 국민 일반은 직접일자리 창출지원 비중이 62.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경우도 직접일자리 창출비중이 85.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자리 지원사업이 필요한 대상에게 어떤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정책대상 그룹들 에게 유효한 정책수단을 발굴, 제공하여야 하며 이울러 정책수단의 연계 를 통해 일자리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일자리 지원사업은 이런 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낮은 직접일자리 지원이 비중이 높은 데다 취약계층에게는 대부분 직접일자리 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는 점은 이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단기 처방적 성격의 일자리 지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Ⅲ-5〉 정책수단별 목표별 지원금액 비중(2006년)

	150/ 영색구인달			끡 미궁(4			=1=10	<del>_</del>		
20	006 지원금액	공공고용	노동시	장 훈련	고용인	센티브		자리 창출	창업	
	비중(수단별)	서비스와 행정	훈련	교육연 수체험	직접	간접	단기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인센티브	계
	고졸 미취업자	0.0	34.1	0.0	0.0	0.0	0.0	0.0	0.0	6.7
	대졸 미취업자	0.0	0.0	17.0	0.0	0.0	0.0	0.0	0.0	0.9
	고등학교 재학생	0.0	8.4	0.9	0.0	0.0	0.0	0.0	0.0	1,7
청년층	대학(원) 재학생	1,1	0.8	6.2	0.0	0.0	0.0	0.0	0.0	0.5
	청년 실업자	0.0	11.9	43.4	58.5	0.0	0.4	0.0	0.0	11,1
	청년층 일반	2,1	0.0	0.0	0.0	0.0	0.0	0.0	0.0	0.1
	계	3,2	55.2	67.5	58,5	0.0	0.4	0.0	0.0	21.0
	고령자	0.0	0.0	0.0	0.0	0.0	12.2	0.0	0.0	2,6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0.0	0.5	0.0	0.0	0.0	0.0	0.0	9.7	0.2
취약	장애인	0.0	3.0	0.0	0.0	0.0	0.0	0.0	60,2	1,5
계층	저소득자	0.0	1,6	0.0	0.0	0.0	52,8	13.0	6.4	16.2
	장기실업자	0.0	0.0	0.0	0.0	0.0	0.0	0.0	0.0	0.0
	취약계층 일반	0.0	1,9	0.0	21.0	0.0	0.0	29.5	0.0	12,9
	계	0.0	7.1	0.0	21.0	0.0	65.0	42.6	76.3	33.4
	여성(전업주부 등)	2,6	0.1	0.0	0.0	0.0	0.0	0.0	0.0	0.1
	실업자	0.0	32,5	0.3	0.0	0.0	0.0	0.0	0.0	6.4
일반	전문인력	16.3	0.0	5.4	20,5	0.0	11.9	55.0	23.7	25.2
	국민 일반	0.0	5.1	26.7	0.0	100.0	22.7	2,5	0.0	10.2
	계	18,9	37.8	32,5	20,5	100.0	34.5	57.4	23.7	42.0
	대상자 없음	77.9	0.0	0.0	0.0	0.0	0.0	0.0	0.0	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공고용	ᇓ	약계층	ᄀ오이	센티브	지젓인	!자리 창출		
20	006 지원금액		T1-		1.0 -			· · · <u> </u>	창업	
	006 지원금액 비중(대상별)	서비스와 행정	훈련	교육연수 체험	직접	간접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업 인센티브	계
		서비스와		교육연수			단기	사회서비스		계 100.0
	비중(대상별)	서비스와 행정	훈련	교육연수 체험	직접	간접	단기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인센티브	
	비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서비스와 행정 0,0	훈련 100.0	교육연수 체험 0.0	직접 0.0	간접 0.0	단기 일자리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인센티브 0.0	100.0
	비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서비스와 행정 0.0 0.0	훈련 100.0 0.0	교육연수 체험 0.0 100.0	직접 0.0 0.0	간접 0.0 0.0	단기 일자리 0.0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인센티브 0.0 0.0	100.0
t	비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훈련 100.0 0.0 97.1	교육연수 체험 0.0 100.0 2.9	직접 0.0 0.0 0.0	ン접 0,0 0,0 0,0	단기 일자리 0.0 0.0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인센티브 0.0 0.0 0.0	100.0 100.0 100.0
t	비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9.3	훈련 100.0 0.0 97.1 27.9	교육연수 체험 0.0 100.0 2.9 62.8	직접 0.0 0.0 0.0 0.0	ン접 0.0 0.0 0.0 0.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인센티브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t	비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0.0 9.3 0.0	훈련 100.0 0.0 97.1 27.9 21.1	교육연수 체험 0.0 100.0 2.9 62.8 21.2	지접 0.0 0.0 0.0 0.0 0.0 56.9	ンな 0.0 0.0 0.0 0.0 0.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인센티브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t	비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0.0 9.3 0.0	훈련 100,0 0,0 97,1 27,9 21,1 0,0	교육연수 체험 0,0 100,0 2,9 62,8 21,2 0,0	직접 0.0 0.0 0.0 0.0 56.9 0.0	ンでは 0.0 0.0 0.0 0.0 0.0 0.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0,9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인센티브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t	비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9,3 0,0 100,0 0,7	훈련 100.0 0.0 97.1 27.9 21.1 0.0 51.5	교육연수 체험 0.0 100.0 2.9 62.8 21.2 0.0	지접 0,0 0,0 0,0 0,0 56,9 0,0 30,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0,9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인센티브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t	비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9,3 0,0 100,0 0,7 0,0	훈련 100,0 0,0 97,1 27,9 21,1 0,0 51,5 0,0	교육연수 체험 0.0 100.0 2.9 62.8 21.2 0.0 17.4 0.0	직접 0,0 0,0 0,0 0,0 56,9 0,0 30,0	ンでは 0.0 0.0 0.0 0.0 0.0 0.0 0.0 0.0 0.0	UND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천충	비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9,3 0,0 100,0 0,7 0,0	定년 100,0 0,0 97,1 27,9 21,1 0,0 51,5 0,0 40,0	교육연수 체현 0,0 100,0 2,9 62,8 21,2 0,0 17,4 0,0	지접 0,0 0,0 0,0 0,0 56,9 0,0 30,0 0,0	とな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0.9 0.0 0.4 10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인센티브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천충 취약	비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압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9,3 0,0 100,0 0,7 0,0 0,0	定년 100.0 0.0 97.1 27.9 21.1 0.0 51.5 0.0 40.0	교육연수 체험 0,0 100,0 2,9 62,8 21,2 0,0 17,4 0,0 0,0	지접 0.0 0.0 0.0 0.0 56.9 0.0 30.0 0.0 0.0	2. では 0.0 0.0 0.0 0.0 0.0 0.0 0.0 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0,9 0,0 0,4 100,0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인센티브 0.0 0.0 0.0 0.0 0.0 0.0 0.0 0.0 6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천충 취약	비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압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9,3 0,0 100,0 0,7 0,0 0,0	定년 100.0 0.0 97.1 27.9 21.1 0.0 51.5 0.0 40.0	교육연수 체험 0,0 100,0 2,9 62,8 21,2 0,0 17,4 0,0 0,0	지접 0.0 0.0 0.0 0.0 56.9 0.0 30.0 0.0 0.0	2. では 0.0 0.0 0.0 0.0 0.0 0.0 0.0 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0,9 0,0 0,4 100,0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인센티브 0.0 0.0 0.0 0.0 0.0 0.0 0.0 0.0 6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천충 취약	비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9,3 0,0 100,0 0,7 0,0 0,0 0,0 0,0	<ul><li>記号</li><li>100,0</li><li>0,0</li><li>97,1</li><li>27,9</li><li>21,1</li><li>0,0</li><li>51,5</li><li>0,0</li><li>40,0</li><li>39,1</li><li>2,0</li><li>-</li></ul>	교육연수 체험 0,0 100,0 2,9 62,8 21,2 0,0 17,4 0,0 0,0 0,0	지접 0,0 0,0 0,0 0,0 56,9 0,0 30,0 0,0 0,0 0,0	2년 0.0 0.0 0.0 0.0 0.0 0.0 0.0 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4 100,0 0,0 69,4 -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0.0 6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천충 취약	비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 증일반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9,3 0,0 100,0 0,7 0,0 0,0 0,0 0,0 0,0	<ul><li>記述</li><li>100.0</li><li>0.0</li><li>97.1</li><li>27.9</li><li>21.1</li><li>0.0</li><li>51.5</li><li>0.0</li><li>40.0</li><li>39.1</li><li>2.0</li><li>-</li><li>2.9</li></ul>	교육연수 체험 0,0 100,0 2,9 62,8 21,2 0,0 17,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6.9 0.0 30.0 0.0 0.0 0.0 - 17.5	プロ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4 100,0 0,0 69,4 -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0.0 60.9 0.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천충 취약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계	서비스와 행정 0,0 0,0 9,3 0,0 100,0 0,7 0,0 0,0 0,0 - 0,0 0,0	<ul><li>記号</li><li>100.0</li><li>0.0</li><li>97.1</li><li>27.9</li><li>21.1</li><li>0.0</li><li>51.5</li><li>0.0</li><li>40.0</li><li>39.1</li><li>2.0</li><li>-</li><li>2.9</li><li>4.1</li></ul>	교육연수 체험 0,0 100,0 2,9 62,8 21,2 0,0 17,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56.9 0.0 30.0 0.0 0.0 0.0 - 17.5 6.8	プロ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4 100,0 0,0 69,4 - 0,0 41,3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0.0 60.9 0.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천충 취약	교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계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9,3 0,0 100,0 0,7 0,0 0,0 0,0 - 0,0 0,0 0,0 0,0 0,0	100,0 0,0 97,1 27,9 21,1 0,0 51,5 0,0 40,0 39,1 2,0 - 2,9 4,1 17,2	교육연수 체험 0,0 100,0 2,9 62,8 21,2 0,0 17,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6.9 0.0 30.0 0.0 0.0 0.0 	21점 0,0 0,0 0,0 0,0 0,0 0,0 0,0 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4 100,0 0,0 69,4 - 0,0 41,3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년층 취약 계층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계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9,3 0,0 100,0 0,7 0,0 0,0 0,0 - 0,0 0,0 0,0 82,8 0,0	<ul> <li>記さ</li> <li>100,0</li> <li>0,0</li> <li>97,1</li> <li>27,9</li> <li>21,1</li> <li>0,0</li> <li>51,5</li> <li>0,0</li> <li>40,0</li> <li>39,1</li> <li>2,0</li> <li>2,9</li> <li>4,1</li> <li>17,2</li> <li>99,7</li> </ul>	교육연수 체험 0,0 100,0 2,9 62,8 21,2 0,0 17,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69,4 - 0,0 41,3 0,0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년층 취약 계층	교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계 여성(전업주부 등) 실업자 전문인력 국민 일반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9,3 0,0 100,0 0,7 0,0 0,0 0,0 0,0 0,0 0,0 0,0 0,0	<ul> <li>記さ</li> <li>100,0</li> <li>0,0</li> <li>97,1</li> <li>27,9</li> <li>21,1</li> <li>0,0</li> <li>51,5</li> <li>0,0</li> <li>40,0</li> <li>39,1</li> <li>2,0</li> <li>-</li> <li>2,9</li> <li>4,1</li> <li>17,2</li> <li>99,7</li> <li>0,0</li> </ul>	교육연수 체험 0.0 100,0 2.9 62.8 21.2 0.0 17.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1位 0.0 0.0 0.0 0.0 0.0 0.0 0.0 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69,4 - 0,0 41,3 0,0 0,0	ト・ラストリー	0.0 0.0 0.0 0.0 0.0 0.0 0.0 0.0 0.0 60.0 60.9 0.6 - 0.0 3.5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년층 취약 계층	교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계 여성(전업주부 등) 실업자 전문인력 국민 일반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9,3 0,0 100,0 0,7 0,0 0,0 0,0 0,0 0,0 0,0 0,0 0,0	記されている。 記されている。 記されている。 記されている。 記されている。 記されている。 記されている。 記されている。 記されている。 記されている。 記されている。 記されている。 にはい。 にはいる。 にはい。 にはい。 にはい。 にはいる。 にはいる。 にはい。 にはい。 にはいる。 にはい。 にはい。 にはい。	元号で入 利容 0.0 100,0 2.9 62.8 21.2 0.0 17.4 0.0 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2d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69,4 - 0,0 41,3 0,0 0,0 10,0 47,1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0.0 60.9 0.6 - 0.0 3.5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년층 취약 계층	교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계 여성(전업주부 등) 실업자 전문인력 국민 일반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9,3 0,0 100,0 0,7 0,0 0,0 0,0 0,0 0,0 82,8 0,0 3,0 0,0 0,0	<ul> <li>記さ</li> <li>100,0</li> <li>0,0</li> <li>97,1</li> <li>27,9</li> <li>21,1</li> <li>0,0</li> <li>51,5</li> <li>0,0</li> <li>40,0</li> <li>39,1</li> <li>2,0</li> <li>-</li> <li>2,9</li> <li>4,1</li> <li>17,2</li> <li>99,7</li> <li>0,0</li> <li>9,8</li> <li>17,7</li> </ul>	元号で入 利容 0.0 100,0 2.9 62.8 21.2 0.0 17.4 0.0 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2d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69,4 - 0,0 41,3 0,0 0,0 10,0 47,1 17,5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0.0 60.9 0.6 - 0.0 3.5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Ⅲ-6〉 정책수단별 목표별 지원인원 비중(2006년)

				18(2000						
		공공고용 공공고용	노동시	장 훈련	고용인	센티브	직접일자	리 창출	창업	
	)6지원인원 중(수단별)	( 정비스와 행정	훈련	교육연 수체험	직접	간접	단기 일자리	사회 서비스 일자리	인센 티브	계
	고졸 미취업자	0.0	15.7	0.0	0.0	0.0	0.0	0.0	0.0	3.8
	대졸 미취업자	0.0	0.0	6.4	0.0	0.0	0.0	0.0	0.0	0.8
	고등학교 재학생	0,0	6.4	0,0	0,0	0.0	0,0	0,0	0.0	1,5
청년층	대학(원) 재학생	0.0	0.8	1.0	0.0	0.0	0.0	0.0	0.0	0.3
	청년 실업자	0.0	13.5	90.1	63,5	0.0	0.8	0.0	0.0	22,5
	청년층 일반	62,9	0,0	0,0	0,0	0,0	0,0	0,0	0.0	1.0
	계	62.9	36,5	97.5	63,5	0.0	0,8	0.0	0.0	30,1
	고령자	0.0	0.0	0.0	0.0	0.0	55,1	0.0	0.0	14.6
	여성 (여성기장, 실업자)	0.0	0.9	0.0	0.0	0.0	0.0	0.0	5.5	0.2
취약계층	장애인	0.0	4.7	0.0	0.0	0.0	0.0	0.0	68.6	1.3
귀작계승	저소득자	0.0	3.2	0.0	0.0	0.0	32.7	11.0	12.7	11.8
	장기실업자	0.0	0.0	0.0	0.0	0.0	0.0	0.0	0.0	0.0
	취약계층 일반	0.0	3.8	0.0	28,2	0.0	0.0	15.4	0.0	7.3
	계	0.0	12.5	0.0	28,2	0.0	87.8	26.3	86.8	35.2
	여성 (전업주부 등)	34.6	0.8	0.0	0.0	0.0	0.0	0.0	0.0	0.8
OIHI	실업자	0.0	39.1	0.1	0.0	0.0	0.0	0.0	0.0	9.4
일반	전문인력	2.5	0.0	0.5	8.3	0.0	1.3	71.1	13 2	16.6
	국민 일반	0.0	11.0	1,9	0.0	100.0	10.1	2,6	0.0	7.9
	계	37.1	51.0	2.5	8.3	100.0	11.5	73.7	13.2	34 7
гШ	 상자 없음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니		-	_	-		_		-		
	계	100.0	100.0	100.0	100.0	100 <u>.</u> 0  세티브	100.0	100.0	100.0	100.0
000	6지원인원	공공고용	쉬드	계층	고공인	<u> </u>	직접일자	디 싱물	창업	
									1 O H	
	중(대상별)	서비스와 행정	훈련	교육연 수체험	직접	간접	단기 일자리	사회서 비스 일자리	인센 티브	계
	중(대상별) 	서비스와 행정		수체험	. –		일자리	비스 일자리	인센 티브	
	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서비스와 행정 0.0	100.0	수체험 0.0	0.0	0.0	으 일자리 0.0	비스 일자리 0.0	인센 티브 0.0	100.0
	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서비스와 행정 0.0 0.0	100.0	수체험 0.0 100.0	0.0	0.0	으 일자리 0.0 0.0	비스 일자리 0.0 0.0	인센 티브 0.0 0.0	100.0
비	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100.0 0.0 100.0	수체험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인지리 의자리 0.0 0.0 0.0	비스 일자리 0.0 0.0 0.0	인센 티브 0.0 0.0 0.0	100.0 100.0 100.0
	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어비스와 행정 0.0 0.0 0.0 0.0	100.0 0.0 100.0 58.0	수체험 0.0 100.0 0.0 42.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비스 일자리 0.0 0.0 0.0 0.0	인센 티브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비	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0.0 0.0	100.0 0.0 100.0 58.0 14.5	수체험 0.0 100.0 0.0 42.0 53.4	0.0 0.0 0.0 0.0 31.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	조(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58.0 14.5 0.0	수체험 0.0 100.0 0.0 42.0 53.4 0.0	0.0 0.0 0.0 0.0 31.2 0.0	0.0 0.0 0.0 0.0 0.0 0.0	일자리 0.0 0.0 0.0 0.0 0.0 0.9 0.0	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인센 티브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	조(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0.0 0.0 0.0 100.0 3.5	100.0 0.0 100.0 58.0 14.5 0.0 29.2	수체험 0.0 100.0 0.0 42.0 53.4 0.0 43.3	0.0 0.0 0.0 0.0 31.2 0.0 23.4	0.0 0.0 0.0 0.0 0.0 0.0 0.0	일자리 0,0 0,0 0,0 0,0 0,0 0,9 0,0	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	조(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 실업만 계 고령자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58.0 14.5 0.0	수체험 0.0 100.0 0.0 42.0 53.4 0.0	0.0 0.0 0.0 0.0 31.2 0.0	0.0 0.0 0.0 0.0 0.0 0.0	일자리 0.0 0.0 0.0 0.0 0.0 0.9 0.0	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인센 티브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	조(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여성) 당, 실업자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0.0 0.0 100.0 3.5 0.0	100.0 0.0 100.0 58.0 14.5 0.0 29.2 0.0	수체험 0.0 100,0 0.0 42,0 53,4 0.0 43,3 0.0	0.0 0.0 0.0 0.0 31.2 0.0 23.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자리 0.0 0.0 0.0 0.0 0.9 0.0 0.7 100.0	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인센 티브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 청년층	조(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0,0 0,0 100,0 3,5 0,0 0,0	100.0 0.0 100.0 58.0 14.5 0.0 29.2 0.0 93.5	수체험 0.0 100.0 0.0 42.0 53.4 0.0 43.3 0.0 0.0	0.0 0.0 0.0 0.0 31.2 0.0 23.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	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인센 티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	조(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여성) 당, 실업자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0.0 0.0 100.0 3.5 0.0	100.0 0.0 100.0 58.0 14.5 0.0 29.2 0.0	수체험 0.0 100,0 0.0 42,0 53,4 0.0 43,3 0.0	0.0 0.0 0.0 0.0 31.2 0.0 23.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	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인센 티브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 청년층	조(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0,0 0,0 100,0 3,5 0,0 0,0	100.0 0.0 100.0 58.0 14.5 0.0 29.2 0.0 93.5	수체험 0.0 100.0 0.0 42.0 53.4 0.0 43.3 0.0 0.0	0.0 0.0 0.0 0.0 31.2 0.0 23.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자리 0.0 0.0 0.0 0.0 0.9 0.0 0.7 100.0	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인센 티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 청년층	조(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0,0 0,0 100,0 3,5 0,0 0,0	100.0 0.0 100.0 58.0 14.5 0.0 29.2 0.0 93.5	수체험 0.0 100.0 0.0 42.0 53.4 0.0 43.3 0.0 0.0	0.0 0.0 0.0 0.0 31.2 0.0 23.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	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인센 티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 청년층	조(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0,0 100,0 3,5 0,0 0,0 0,0 0,0	100,0 0,0 100,0 58,0 14,5 0,0 29,2 0,0 93,5 86,3 6,5 —	수체험 0.0 100.0 0.0 42.0 53.4 0.0 4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1.2 0.0 23.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7 100,0 0.0 0.0 73,4 -	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인센 티브 0.0 0.0 0.0 0.0 0.0 0.0 0.0 6.5 13.7 0.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 청년층	조(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출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 (여성기장, 실업자) 장애인 자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계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0,0 100,0 3,5 0,0 0,0 0,0	100.0 0.0 100.0 58.0 14.5 0.0 29.2 0.0 93.5 86.3 6.5	수체험 0,0 100,0 0,0 42,0 53,4 0,0 43,3 0,0 0,0 0,0 0,0	0.0 0.0 0.0 0.0 31.2 0.0 23.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② 下口 0,0 0,0 0,0 0,0 0,0 0,0 0,0 0,	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인센 티브 0.0 0.0 0.0 0.0 0.0 0.0 0.0 0.0 6.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년층	조(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계 여성 (전업주부 등)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0.0 100.0 3.5 0.0 0.0 0.0 0.0 0.0 73.9	100,0 0,0 100,0 58,0 14,5 0,0 29,2 0,0 93,5 86,3 6,5 - 12,5 8,6 26,1	0.0 100.0 42.0 53.4 0.0 4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1.2 0.0 23.4 0.0 0.0 0.0 0.0 -42.7 8.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② 下口 0.0 0.0 0.0 0.0 0.0 0.0 0.7 100.0 0.0 0.0 0.0 0.0 0.0 0.0 0	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 청년층	조(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출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계 여성 (전업주부 등) 실업자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0.0 100.0 3.5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58.0 14.5 0.0 29.2 0.0 93.5 86.3 6.5 - 12.5 8.6 26.1	0,0 100,0 42,0 53,4 0,0 4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1.2 0.0 23.4 0.0 0.0 0.0 - 42.7 8.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7 100.0 0.0 0.0 73.4 - 0.0 66.0 0.0	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년층	조(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계 여성 (전업주부 등) 실업자 전문인력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0,0 100,0 3,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100.0 0.0 100.0 58.0 14.5 0.0 29.2 0.0 93.5 86.3 6.5 - 12.5 8.6 26.1	수체험 0.0 100.0 0.0 42.0 53.4 0.0 4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1.2 0.0 23.4 0.0 0.0 0.0 0.0 - 42.7 8.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② 下口 0.0 0.0 0.0 0.0 0.0 0.0 0.0 0.	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년층 취약계층	조(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계 여성 (전업주부 등) 실업자 전문인력 국민 일반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0,0 100,0 3,5 0,0 0,0 0,0 0,0 - 0,0 0,0 0,0 0,0	100,0 0,0 100,0 58,0 14,5 0,0 29,2 0,0 93,5 86,3 6,5 - 12,5 8,6 26,1 99,8 0,0 33,5	0.0 100.0 0.0 42.0 53.4 0.0 4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1,2 0,0 0,0 0,0 0,0 0,0 -42,7 8,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② 下口 0.0 0.0 0.0 0.0 0.0 0.0 0.0 0.	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 청년층 취약계층 일반	조(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계 여성 (전업주부 등) 실업자 전문인력 국민 일반 계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0,0 100,0 3,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100.0 0.0 100.0 58.0 14.5 0.0 29.2 0.0 93.5 86.3 6.5 - 12.5 8.6 26.1	수체험 0.0 100.0 0.0 42.0 53.4 0.0 4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1.2 0.0 23.4 0.0 0.0 0.0 0.0 - 42.7 8.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② 下口 0.0 0.0 0.0 0.0 0.0 0.0 0.0 0.	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 청년층 취약계층 일반	조(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 (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계 여성 (전업주부 등) 실업자 전문인력 국민 일반	서비스와 행정 0,0 0,0 0,0 0,0 100,0 3,5 0,0 0,0 0,0 0,0 - 0,0 0,0 0,0 0,0	100,0 0,0 100,0 58,0 14,5 0,0 29,2 0,0 93,5 86,3 6,5 - 12,5 8,6 26,1 99,8 0,0 33,5	0.0 100.0 0.0 42.0 53.4 0.0 4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1,2 0,0 0,0 0,0 0,0 0,0 -42,7 8,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② 下口 0.0 0.0 0.0 0.0 0.0 0.0 0.0 0.	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라. 기타 지원실적

〈표 Ⅲ-7〉은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지원실적을 보여 주고 있 다.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중이 3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보 건복지부(26.9%), 여성부(14.3%)의 순으로 되어 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7〉 각 부처별 일자리 지원사업실적

에사기무	2006년	일적	2007년 계획		
예산과목	금액(억원)	비중(%)	금액(억원)	비중(%)	
노동부	8073.1	40.1	9744.5	35.9	
보건복지부	4281	21.3	7295	26.9	
중소기업청	237.5	1,2	234	0.9	
여성부	3304	16.4	3882.3	14.3	
교육인적자원부	409.9	2.0	1328.2	4.9	
산림청	1616	8.0	2423	8.9	
환경부	76	0.4	122	0.4	
문화부	368	1.8	545	2.0	
청소년위원회	93	0.5	146	0.5	
산자부	160	0.8	160	0.6	
정통부	447	2.2	292.5	1,1	
농림부	9.5	0.0	29.2	0.1	
행정자치부	743	3.7	593	2.2	
외교통상부	291	1.4	285	1,1	
문화재청	0.6	0.0	45	0.2	
소계	20109,6	100.0	27124,7	100,0	

〈표 Ⅲ-8〉 예산과목별 일자리 지원사업 실적

에사티므	2006է	크 실적	2007년 계획		
예산과목	금액(억원)	비중(%)	금액(억원)	비중(%)	
일반회계	10675.6	53.087	16025	59.079	
고용보험기금	6143 <u>.</u> 9	30,552	6767 <u>.</u> 5	24.95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15	0.572	133	0.490	
근로자복지진흥기금	0	0.000	230	0.84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76	0.378	149	0.549	
복권기금	662	3,292	794	2.927	
국민체육진흥기금	125	0.622	143	0.527	
청소년육성기금	93	0.462	146	0.538	
관광진흥개발기금	12	0.060	10	0.037	
여성발전기금	113,6	0,565	52	0.192	

〈표 Ⅲ-8〉 계속

에사되므	2006է	<sup>년</sup> 실적	2007년 계획		
예산과목	금액(억원)	비중(%)	금액(억원)	비중(%)	
국민연금기금	224	1,114	171	0,630	
환경개선특별회계	71	0.353	82	0.302	
국가균형발전위 특별회계	170	0.845	320	1,180	
국민건강증진기금	38	0.189	88	0.32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88,5	7.899	2010.2	7,411	
없음	2	0.010	4	0.015	
소계	20109.6	100	27124.7	100	

자료: 기획예산처, 2007에서 재구성.

# 2. 취업 실적

앞에서는 지원인원 면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취업실적을 살펴보도 록 하자. 취업실적은 노동시장 훈련, 고용인센티브, 직접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 가. 정책수단별 취업실적

2005년에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 수는 31만여 개이고

〈표 Ⅲ-9〉 정책수단별 연도별 취업지수와 지원금액 및 1억원당 취업지수

		취업자수		비중		1억원당 취업인원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훈련	68553	73294	22.0	17.3	20.3	18.6
노동시장 훈련	교육, 연수체험	4576	6254	1.5	1.5	3.0	5.7
	계	73129	79548	23.4	18.8	14.9	15.8
7.0	직접	28418	63182	9.1	14.9	68.1	29.2
고용 인센티브	간접	4347	10090	1.4	2.4	41.0	24.0
	계	32765	73272	10.5	17.3	62,6	28.3
	단기일자리	113790	149155	36.5	35.2	25.7	34.9
직접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92427	121642	29.6	28.7	17.6	17.4
	계	206217	270797	66.1	63.9	21.3	24.1
	계	312111	423617	100.0	100.0	19.8	21.1

2006년에는 42만여 개이다. 이를 정책수단별로 보면 직접일자리 창출비 중이 2006년 기준으로 63.9%로 가장 많으며, 훈련이나 고용인센티브는 각각 18.8%와 17.3%에 불과하다. 정책수단별 지원실적에서 알 수 있듯 이 고용인센티브는 시중손실이 높고, 직접일자리 창출은 단기성 일자리 라는 점에서 일자리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 나. 정책목표 대상별 취업실적

정책대상별 취업실적을 살펴보면 창출된 일자리 수 중 2006년도 기준 으로 취약계층 비중이 44.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반(38.7%)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고령자(19.6%)와 저소득자(14.8%) 비중이 높으며, 일반

〈표 Ⅲ-10〉 정책대상별 연도별 취업자수와 지원금액 및 1억원당 취업자수

		취업	자수	취업지	l 비중	1억원당	취업인원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고졸 미취업자	8590	13331	2,8	3.1	10.3	9.9
	대졸 미취업자	3719	3058	1,2	0.7	15.5	16.5
	고등학교 재학생	4023	1088	1.3	0.3	15.2	3,2
청년층	대학(원) 재학생	268	694	0.1	0.2	4.1	6.5
	청년 실업자	30793	53786	9.9	12.7	19.1	24.1
	청년층 일반	0	0	0.0	0.0	0.0	0.0
	계	47393	71957	15.2	17.0	15.7	17.0
	고령자	35127	83038	11.3	19.6	175.6	159.7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524	558	0.2	0.1	10.0	11.2
=10h	장애인	1639	2227	0.5	0.5	5.6	7.3
취약 계층	저소득자	58591	62870	18.8	14.8	21.8	19.3
/110	장기실업자	0	0	0.0	0.0	-	_
	취약계층 일반	22647	38845	7.3	9.2	12.0	15.0
	계	118528	187538	38.0	44.3	23.2	27.9
	여성(전업주부 등)	756	773	0.2	0.2	26.0	26.7
	실업자	35020	32816	11,2	7.7	25.5	25.5
일반	전문인력	73852	93738	23.7	22.1	18.1	18.5
	국민 일반	36562	36795	11.7	8.7	18.8	17.9
	계	146190	164122	46.8	38.7	19.7	19.4
	대상자 없음	0	0	0.0	0.0	0.0	0.0
	계	312111	423617	100.0	100.0	19.8	21.1

의 경우에는 전문인력 비중이 높다. 지원금액 1억원당 창출된 취업인원 을 보면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청년층의 경우 훈련지원사업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 다. 정책수단 및 대상별 취업실적

끝으로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별 취업실적을 창출된 일자리의 성격이라 는 관점에서 살펴보자 한다. 정책수단 및 정책대상별 취업실적은 2005년 과 2006년의 경우 창출된 일자리가 30-40만여 개이지만 일자리의 순효과 및 일자리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먼저 일자리 지원대상으로 미취업자나 실업자 혹은 비경활을 대상으로 한 취업실적 비중이 높지 않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창출된 일자리의 상당 수가 추가적으로 창출된 일자리라기보다는 노동이동을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고용의 순효과라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효 과가 미흡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일자리 지원이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의 경우 직접일자리 창출이 대부분이어서 낮은 수준 의 일자리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결국 재정부담만 가중 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준다.

결국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를 정책대상으 로 하여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선택된 대상에 대한 일자리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사업의 재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표 Ⅲ-11〉 정책수단별 목표별 취업인원 비중(2006년)

,		ᆫᄃ	시장 훈련	7801	센티브	지저이기	대 창출	
20	006 취업자수	<u> </u>	교육	_ 프용한	엔디브	- 역접될/ 단기	사회서비스	계
ŀ	비중(수단별)	훈련	<del>깔퓩</del>   연수체험	직접	간접	전기 일자리	시회시미 <u>스</u>   일자리	/1
	고졸 미취업자	18,2	0.0	0.0	0.0	0.0	0.0	3.1
	대졸 미취업자	0.0	48.9	0,0	0,0	0.0	0,0	0.7
청	고등학교 재학생	1,5	0.0	0,0	0,0	0.0	0.0	0,3
년 층	대학(원) 재학생	0.7	2.5	0.0	0.0	0.0	0.0	0.2
	청년 실업자	14.6	48.0	63.5	0.0	0.0	0.0	12.7
	청년층 일반	0.0	0.0	0.0	0.0	0.0	0.0	0.0
	계	35.0	99.3	63,5	0.0	0.0	0.0	17.0
	고령자	0.0	0.0	0.0	0.0	55.7	0.0	19.6
취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0.8	0.0	0.0	0.0	0.0	0.0	0.1
약	장애인	3.0	0.0	0.0	0.0	0.0	0.0	0.5
계	저소득자	1.0	0.0	0.0	0.0	32,7	11.0	14.8
층	장기실업자	0.0	0.0	0.0	0.0	0.0	0.0	0.0
	취약계층 일반	3,1	0.0	28.2	0.0	0.0	15.4	9.2
	계	7.9	0.0	28.2	0.0	88.4	26.3	44.3
	여성(전업주부 등)	1,1	0.0	0.0	0.0	0.0	0.0	0.2
OI	실업자	44.8	0.0	0.0	0.0	0.0	0.0	7.7
일 바	전문인력	0.0	0.7	8.3	0.0	1.4	71.1	22.1
근	국민 일반	11.3	0.0	0.0	100.0	10.2	2.6	8.7
	계	57.1	0.7	8.3	100.0	11.6	73.7	38.7
	대상자 없음	0.0	0.0	0.0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	)06 취업자수	취'	약계층	고용인	센티브		리 창출	
	)06 취업자수 비중(대상별)	취' 훈련	교육	고용인 직접	센티브 간접	단기	사회서비스	계
	네중(대상별)	훈련	교육 연수체험	직접	간접	단기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훈련 100,0	교육 연수체험 0.0	직접 0,0	간접 0.0	단기 일자리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100.0
t	비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훈련 100,0 0,0	교육 연수체험 0.0 100.0	직접 0.0 0.0	간접 0.0 0.0	단기 일자리 0.0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100.0
b 청	기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훈련 100.0 0.0 100.0	교육 연수체험 0,0 100,0 0,0	직접 0.0 0.0 0.0	간접 0.0 0.0 0.0	단기 일자리 0.0 0.0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100.0 100.0 100.0
청 년	기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훈련 100.0 0.0 100.0 77.5	교육 연수체험 0.0 100.0 0.0 22.5	직접 0.0 0.0 0.0 0.0	간접 0.0 0.0 0.0 0.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b 청	비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훈련 100.0 0.0 100.0	교육 연수체험 0,0 100,0 0,0	직접 0.0 0.0 0.0	간접 0.0 0.0 0.0	단기 일자리 0.0 0.0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100.0 100.0 100.0
청 년	비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훈련 100,0 0,0 100,0 77,5 19,8	교육 연수체험 0,0 100,0 0,0 22,5 5,6	직접 0.0 0.0 0.0 0.0 0.0 74.6	プ <b>접</b> 0,0 0,0 0,0 0,0 0,0 0,0 0,0 -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 년	기중(대상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훈련 100,0 0,0 100,0 77,5 19,8 - 35,6	교육 연수체험 0,0 100,0 0,0 22,5 5,6 - 8,6	직접 0.0 0.0 0.0 0.0 0.0 74.6 - 55.8	ンセン では できます できます こうしゅう こう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0,0 -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 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천 년 층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여성가장,	훈련 100,0 0,0 100,0 77,5 19,8	교육 연수체험 0,0 100,0 0,0 22,5 5,6	직접 0.0 0.0 0.0 0.0 0.0 74.6	プ <b>접</b> 0,0 0,0 0,0 0,0 0,0 0,0 0,0 -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년 충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훈련 100,0 0,0 100,0 77,5 19,8 - 35,6 0,0 100,0	교육 연수제험 0,0 100,0 0,0 22,5 5,6 - 8,6 0,0	지선 0,0 0,0 0,0 0,0 0,0 74,6 - 55,8 0,0	- できまして できます できます できます できます できます できます できます できます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 0,0 10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청년 층 취약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여성가장,	훈련 100,0 0,0 100,0 77,5 19,8 - 35,6 0,0 100,0	교육 연수제험 0,0 100,0 0,0 22,5 5,6 - 8,6 0,0 0,0	지점 0,0 0,0 0,0 0,0 0,0 74,6 - 55,8 0,0 0,0	<b>北점</b>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 0,0 100,0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청년 충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훈련 100,0 0,0 100,0 77,5 19,8 - 35,6 0,0 100,0	교육 연수제험 0,0 100,0 0,0 22,5 5,6 - 8,6 0,0	지선 0,0 0,0 0,0 0,0 0,0 74,6 - 55,8 0,0	- できまして できます できます できます できます できます できます できます できます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 0,0 10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청년 증 취약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업자 계 고령자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훈련 100,0 0,0 100,0 77,5 19,8 - 35,6 0,0 100,0	교육 연수제험 0,0 100,0 0,0 22,5 5,6 - 8,6 0,0 0,0	지점 0,0 0,0 0,0 0,0 74,6 - 55,8 0,0 0,0 0,0	<b>北점</b>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 0,0 100,0 0,0 0,0 77,7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청년 증 취약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훈련 100,0 0,0 100,0 77,5 19,8 - 35,6 0,0 100,0 100,0	교육 연수제험 0,0 100,0 0,0 22,5 5,6  8,6 0,0 0,0 0,0	지점 0,0 0,0 0,0 0,0 0,0 74,6 - 55,8 0,0 0,0	<b>北점</b>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 0,0 100,0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 0,0 0,0 0,0 0,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청년 증 취약계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문년 100,0 0,0 100,0 77,5 19,8 - 35,6 0,0 100,0 100,0 1,1 - 5,9 3,1	교육 연수제험 0,0 100,0 0,0 22,5 5,6 - 8,6 0,0 0,0 0,0 0,0 0,0	지선 0,0 0,0 0,0 0,0 74,6 - 55,8 0,0 0,0 0,0 0,0 - 45,9 9,5	<b>北점</b>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 0,0 100,0 0,0 77,7 - 0,0 70,3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 0,0 0,0 0,0 0,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천년 층 취약계층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훈련 100,0 0,0 100,0 77,5 19,8 - 35,6 0,0 100,0 100,0 1,1 - 5,9	교육 연수제험 0,0 100,0 0,0 22,5 5,6 - 8,6 0,0 0,0 0,0 0,0	지점 0,0 0,0 0,0 0,0 74,6 - 55,8 0,0 0,0 0,0 - 45,9	<b>北점</b>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 0,0 100,0 0,0 77,7 -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 0,0 0,0 0,0 0,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청년 층 취약 계층 일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계	문년 100,0 0,0 100,0 77,5 19,8 - 35,6 0,0 100,0 100,0 1,1 - 5,9 3,1 100,0	교육 연수제험 0,0 100,0 0,0 22,5 5,6 - 8,6 0,0 0,0 0,0 0,0 0,0 0,0 0,0	지점 0,0 0,0 0,0 0,0 74,6 - 55,8 0,0 0,0 0,0 - 45,9 9,5 0,0	<ul> <li>ごと</li> <li>この</li> <l>この <li>この</li> <li>この</li> <li>この</li> <li></li></l></ul>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 0,0 100,0 0,0 77,7 - 0,0 70,3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천년 층 취약계층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계	型性 100,0 0,0 100,0 77,5 19,8 - 35,6 0,0 100,0 100,0 1,1 - 5,9 3,1 100,0 100,0	교육 연수제험 0,0 100,0 0,0 22,5 5,6 - 8,6 0,0 0,0 0,0 0,0 0,0 0,0	지점 0,0 0,0 0,0 0,0 74,6 - 55,8 0,0 0,0 0,0 - 45,9 9,5 0,0 0,0	<ul> <li>ごと</li> <li>この</li> <l>この <li>この</li> <li>この</li> <li>この</li> <li></li></l></ul>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 0,0 100,0 0,0 77,7 - 0,0 70,3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년 층 취약 계층 <u>일</u>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계	記されている。 100,0 での 10	교육 연수체험 0,0 100,0 0,0 22,5 5,6 - 8,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4.6 - 55.8 0.0 0.0 0.0 - 45.9 9.5 0.0 0.0 5.6	214 0,0 0,0 0,0 0,0 0,0 0,0 0,0 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 0,0 100,0 0,0 77,7 - 0,0 70,3 0,0 0,0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21,2 - 48,1 17,1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년 층 취약계층 일반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계 여성(전업주부 등) 실업자 전문인력 국민 일반	100,0 0,0 100,0 100,0 77,5 19,8 - 35,6 0,0 100,0 100,0 1,1 - 5,9 3,1 100,0 100,0 0,0 22,5	교육 연수체험 0,0 100,0 0,0 22,5 5,6 - 8,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74.6 - 55.8 0.0 0.0 0.0 - 45.9 9.5 0.0 0.0 0.0	212 0,0 0,0 0,0 0,0 0,0 0,0 0,0 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 0,0 100,0 0,0 77,7 - 0,0 70,3 0,0 0,0 2,2 41,5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21,2 - 48,1 17,1 0,0 0,0 0,0 92,2 8,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청년 층 취약계층 일반	고졸 미취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청년 실업자 청년층 일반 계 고령자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취약계층 일반 계 여성(전업주부 등) 실업자 전문인력 국민 일반	100,0 0,0 100,0 100,0 77,5 19,8 - 35,6 0,0 100,0 100,0 1,1 - 5,9 3,1 100,0 100,0 0,0 22,5	교육 연수체험 0,0 100,0 0,0 22,5 5,6 - 8,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0.0 0.0 0.0 0.0 0.0 74.6 - 55.8 0.0 0.0 0.0 - 45.9 9.5 0.0 0.0 0.0	212 0,0 0,0 0,0 0,0 0,0 0,0 0,0 0,	단기 일자리 0,0 0,0 0,0 0,0 0,0 - 0,0 100,0 0,0 77,7 - 0,0 70,3 0,0 0,0 2,2 41,5	사회서비스 일자리 0,0 0,0 0,0 0,0 0,0 0,0 0,0 0,0 0,0 21,2 - 48,1 17,1 0,0 0,0 0,0 92,2 8,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3 일자리 지원사업 평가

여기서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 가. 일자리 창출의 순효과 미흡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간 단하지가 않다.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되 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이들의 취업효 과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여기서는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창출된 일자리 수를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 중 공공고용서비스와 창업인센티브를 제외한 사업들 을 대상으로 창출된 일자리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훈련이나 교육연 수 체험 사업의 경우 이를 통해 취업한 통계를 확보하였으며 고용인센티 브나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은 참여근로자를 취업자 통계로 파악하였다. 이렇게 할 경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취업자 수 를 보면 2005년의 31만여 개, 2006년에는 42만여 개에 이르고 있다.1)

그러나 창출된 일자리에 참여한 인력의 상당수가 기존에 일자리를 갖 고 있는 대상이 포함됨에 따라 실제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가령, 2006년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창출된 일자리 수 중 고령자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 반면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만일 상당수의 일자리가 기 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 의 순고용효과는 그만큼 감소하였을 것이다.2)

또한 같은 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창출된 일자리 수의 세부 계층

<sup>1)</sup>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별 창출된 일자리 수에 대해서는 〈부표〉 참조

<sup>2)</sup> 이에 대해서는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직전의 노동시장 상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가 기존 일자리의 대체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확인이 가능하나 현재 로서는 자료의 제약상 불가능하다.

을 보면 전문인력의 비중이 가장 높고 실업자가 취업한 비중은 일반취업 자 중 19.8%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창출된 일자리의 상당부분이 기 존의 일자리를 대체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표 Ⅲ-12〉에서 보듯이 사중손실이 높은 보조금을 통한 일자리 도 2006년에는 17.3%에 이르고 있어 일자리 순효과를 더욱 낮추는 작용 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Ⅲ-12〉 목표대상 집단별 창출된 일자리 비중

	청년층	취약계층	일반	계
2005년	47,393(15.2)	118,528(38.0)	146,190(46.8)	312,211(100.0)
2006년	71,957(19.6)	187,538(44.3)	164,122(38.7)	423,617(100.0)

### 나. 취업의 질적 측면: 단기일자리 위주의 정책

2005년과 2006년에 창출된 일자리 수의 2/3가 사회적 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로 나타나 있다. 이를 취업계층별로 보면 청년층의 경우 훈련이나 보조금을 통해 취업된 비중이 높은 데 비해 취약계층의 경우 창출된 일자리 중 48.1%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나타났으며, 일반의 경우도 단기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합한 비중이 전체 일반 취업자 중 65.1%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아직은 초기단계인 관계로 저임금, 불안정 고용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취업과 미취업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이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불안정한 소득지원의 성격을 갖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표 Ⅲ-13〉 정책수단별 창출된 일자리 수

	교육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보조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직접일자리 창출 (단기일자리+사회적 일자리)	계
2005년	73,192(23.4)	32,765(10.5)	206,217(66.1)	312,211(100.0)
2006년	79,548(18.8)	73,272(17.3)	270,797(63.9)	423,617(100.0)

### 다. 목표 집단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의 부족

현행 일자리 사업의 정책대상을 보면 청년층, 취약계층 그리고 국민 일 반으로 되어 있다. 2007년 재정지원 수준(계획)을 보면 청년층이 16.6%, 취약계층 33.3%, 국민 일반은 47.0%, 기타 인프라 관련 사업 3.1%이다. 재 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 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목표와도 관련된 것 으로 일차적으로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 원사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 지원사업이 일자리가 필요한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배정을 어떻게 하고 이 들에 대한 정책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 없이 각 부처 단위에서 개별 사업이 진행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와 같이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이 진행될 경우 추가적인 재 원소요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 라. 일자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 간 유기적 연계의 부족

일자리 지원사업이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목표대상 집단에 적합한 정책수단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일자리 지원사 업은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일자리의 효과성 증대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가 령, 훈련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경우 훈련기간 동안 소득보전이 이루어지 지 않으면 훈련참여가 어렵고 따라서 단기일자리 위주로 참여할 가능성 이 높아 결과적으로 취업과 미취업의 반복이라는 재정의 비효율성을 야 기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 경우 훈련기간 동안 소득지원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훈련을 통 해 취업능력이 제고되어 취업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불필요 할 수도 있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마. 일자리 지원사업의 총괄적 조정기능 미흡

현행 일자리 지원사업이 갖는 문제 중의 하나는 총괄적 조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유사 중복 사업의 존재 및이의 조정의 어려움, 전달체계의 효율화 제고 기능 부재, 노동시장여건에부응하는 사업의 발굴 및 재원의 분배기능 부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유사 중복성의 문제이다. 일자리 지원사업은 부처 간 개별 사업의 발굴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 온 만큼 유사 중복 사업의 문제는 항상 발생 가능한 문제이다. 모든 일자리 사업 중 동일한 목표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정책수단을 실시하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유사중복문제는 개별 사업만을 고려할 때 판단이 쉽지가 않다. 그러나 노동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목표대상 집단에 대한 유효한 정책수단의 적용 및 사업의 전달체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유사중복문제는 예산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종합적인 관점 없이 접근하면 개별부처의 입장에서는 중복성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유사한 사업을 계속 발굴할 가능성이 큰 만큼 특정 사업중심의 평가는 이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둘째, 전달체계의 효율화 제고 기능 부재이다. 다양한 사업들이 수행됨에 따라 전달체계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자리 참여자나 혹은 수행기관에서의 관련정보 획득을 위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가령, 장애인 창업(혹은 자립자금) 융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부와 복지부 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이 상이할 뿐 만 아니라 융자조건에도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셋째,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인 사업의 운용부재이다. 신규사업의 발굴, 기존 사업의 예산배분의 효율적 조정, 사업의 퇴출 등에 대한합리적인 판단은 노동시장 여건에 부응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행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사업의 탄력적인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사업 평가체계의 부재이다.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율화기능이 지

속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평가체계의 구축 및 정기적인 평가가 수행 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평가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현행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재정의 효율화,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볼 때 평 가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 일자리 지원사업 중복성 평가10

# IV

# 1. 서비스 중복과 경합의 의의

#### 가. 서비스 중복과 경합의 구분

'서비스 중복'이라는 쟁점과 관련하여 우선 서비스 중복과 서비스 경합을 구분해야 한다. 먼저 '서비스 중복'이란 용어는 행정 일선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착된 용어는 아니다. 행정 일선에서 사용되고 있는 1차적 의미는 동일한 사유에 의거하여 서로 다른 복수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중복수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서비스 중복'이란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의 중복 제공 여부보다는 실제 중복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 측면의 현상에 초점을 두고 사용된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가진 서비스가 상이한 공급주체에 의하여 다른 사업명으로 공급되는 경우, 비록 중간과정에서 중복수급이 걸러져 실제 중복수급 사례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가 다른 명칭의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상 자체를 두고 서비스가 중복 공급되고 있다고 말

<sup>\*</sup> 본 장의 내용은 기획예산처의 연구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06년에 발간한 『일자리지원사업 평가』에서 중복추진사업으로 지적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장의 내용 중 '사 업의 비교표' 및 이를 소개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언급은 예산정책처의 보 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였거나 이를 토대로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sup>1)</sup> 이 장은 박능후 교수(경기대)와 조성은 교수(서울기독대학)가 주도적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중복은 논리적으로 볼 때 소비 측면에서만 접 근할 문제는 아니다. 즉, 서비스 중복은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 수요 차원 양쪽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공급 차원에서 서비스가 중복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 드시 중복수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서비스 전달과정 에서 중복수급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면 최종 소비자의 중복 수급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복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가운 데 전달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중복수급은 발생하지 않게 되고, 조 정과정이 결여되면 중복수급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일선에서 '서비스 중복'이 문제시되는 경우는 공급상의 중 복과 수요상의 중복이 동시에 발생하여 부정수급이 이뤄지는 경우이며, 공급상으로는 중복이 발생하나 수요 면에서는 실제 중복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 경우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급상의 중복과 수급상의 중복은 구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복수급'을 의미하는 '서비스 중복'은 공급과 소비 면에서 모 두 중복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지 유사한 내용의 서 비스가 다수 시행되고 있는 공급 측면만을 놓고 '서비스 중복'이라고 규 정하는 것은 상황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 다. 다시 말해 서비스 공급 면에서 다수의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 는 현상은 '서비스 중복'이 아니라 '공급 상의 중복' 혹은 단순히 '서비스 경합'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서비스 경합'이란 대상에 대하여 유사한 급여내용을 가진 복수의 서비 스들이 경쟁적으로 공급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비스가 실제 중 복 수급되고 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공급 상태만을 기준으로 현상 을 파악한 규정이다. 따라서 공급 면에서 경합하는 서비스 중에는 중첩 되는 내용을 가진 서비스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실제 수요 면에서 중복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서비스 경합'의 중복 수급 여부는 최종적으로 소비 단계에 이르러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수의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다 다각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공급 면에서 서비스 경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유사한 내용을 가진 서비스를 복수로 제공하는 것과 소비 단계에서 중복 수급 발생은 분리된 현상이므로, 서비스 공급을 분석할 경우에는 서비스 경합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요컨대, 서비스 중복과 중복수급의 혼 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서비스가 다수 공급되는 상태는 서비스 경합으로 명명하고, 공급상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중복으로 수급하고 있는 상태에 한해서만 서비스 중복으로 파악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 나. 서비스 제공상의 경합 유형

행정서비스의 경합 현상은 유사한 기능을 행하는 다수의 서비스가 존재함을 전제로 성립한다. 유사한 서비스가 다수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서비스 경합 문제는 서비스 대상의 유사 여부 및 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앙부처의 동일 여부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인다. 공급 측면에서 접근하는 중앙부처의 서비스 제공 경합은 다음 그림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표 IV-1〉 서비스 대상과 소관부처 동일 여부에 따른 서비스 경합유형

7	н	소관부처		
一 ブ	분	동일	상이	
서비스 대상	동일	유형	유형 ॥	
	상이	를 하 하	유형 Ⅳ	

# 1) 경합유형 |

서비스 경합유형 I은 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동일하면서 서비스 대상도 동일한 다수의 행정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중앙부처가 동일하지만 서비스별 담당팀은 상이한 경우가 일반적인데, 서비스를 제공받는 참여(근로)자의 경우 조금씩 상이한 지원서비스를 모두 누리는 것이 좋

을 수 있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는 약점 또한 존재한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에 정보가 공유되 지 않으면 서비스 중복제공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경 합유형 I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에 정보가 공유되어 중복제 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수급자 입장에서는 다양 한 서비스 중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대로 가려 내어 이용할 수 있도 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선택권 부여가 필요하다.

#### 2) 경합유형 II

서비스 경합유형 II는 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상이하지만 서비 스 대상은 동일한 다수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이다. 경합유형 II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기능을 기준으로 편성된 중앙부처에 대상을 기준으 로 하는 중앙부처가 추가된 데 있다.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합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기능상 주무부처에 해당하는 부서로 통합해야 한다. 만약 업무통합이 이뤄지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면 그 이전단계에 서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서비스 중복제공을 막는 것이 필수적이다.

#### 3) 경합유형 Ⅲ

서비스 경합유형 Ⅲ은 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동일하지만 서비 스 대상은 상이한 다수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서 비스의 기능이 유사하지만 대상이 다르므로 경합유형 Ⅲ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념상 구분되어 있는 서비스 대상이 실제의 경우 겹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비스 경합 문제가 여기서도 발생한다. 즉, 한 개인이 중복적인 속성을 가질 경우 서비스 경합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복적 속성을 가진 대상에 대하여 경합하는 여러 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를 우선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다 수의 서비스 간에 중복적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중앙정부에서 사전 에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선 집행기관이 직면하는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4) 경합유형 Ⅳ

경합유형 IV는 서비스를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상이하고, 서비스 대상도 상이한 다수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로, 이들 서비스의 기능이유사하여 경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경합유형 IV는 주무부처는 보편적인 대상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비해 비주무부처는 보다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유사한, 그러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 간에 특정/일반의 관계가 성립하고, 특정한 대상이보다 우월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중복제공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특정한 대상에게 주어지는 서비스가 일반적 대상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와 내용과 수준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중복제공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통합조정이 필요하다. 요컨대 경합유형 IV의 경우는 특정/일반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통합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 다. 서비스 수급상의 중복

서비스 수급상의 중복은 하나의 사유에 의거하여 서로 다른 다수의 사업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실직으로 빈곤해진 가구가 고용보험제도에 의해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생계급여를 추가적으로 받는다면 서비스수급상의 중복에 해당된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중복수급이 반드시 불법이거나 부당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중복으로 지급되는 급여들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거나 주급여/보충급여의 관계를 갖는 경우 중복수급을 금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일률적인 서비스의 급여수준이 지역에 따라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중복급여라 하여 금할

것은 아닐 것이다.

중복수급이 문제시되는 경우는 중복되는 각 급여들이 보완・보충 관계 에 있지 않고 하나의 급여만으로도 적절성이 확보되거나, 중복급여의 합 이 적절성을 초과할 때이다. 적정 수준 이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은 보다 욕구가 높은 계층에게 배분되어야 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 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라. 서비스 중복이 문제시되는 조건

일반적으로 서비스 중복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를 말한다. 우선, 유사한 기능을 행하는 서비스가 다수로 공급되는 경우이다. 이는 정책수단의 유사성을 일컫는 것으로, 서비스 공 급상의 경합이 존재할 때이다. 둘째, 최종 소비자가 동일한 사유에 의해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때이다. 최종 소비 대상자가 분리될 수 없을 때 중복수급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중 복수급하고 있는 서비스의 합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야 한다. 즉, 행정 서비스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적정 수준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중 복수급의 결과 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급상으로 서비스 경합이 이뤄지고 있더라도 소비단계에서 중 복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중복수급이 되더라도 중복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의 합이 적정 수준 이내에 머물고 있다면 서비스 경합은 크게 문제 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현안이 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공급상의 경합 문제를 실질적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최종 소비단계의 중복 여부와 중복 제공되는 서비스의 적정초과 여부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 2. 서비스 중복제공의 원인

만약 중앙부서의 대부분이 기능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각 부서의 기능이 개념적·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정의되고, 그 정의된 개념 에 입각하여 행정이 시행된다면 중앙행정기관이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 중앙정부 조직은 18개 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18개 중앙부처 중에서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부는 기능을 기준으로 편성된 것이며, 여성가족부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편성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첫째,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중앙부서 조직에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는 부서가 겹쳐서 편성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전반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노동부의 실업자직업훈련사업과 여성만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전업주부재취업지원사업은 실직주부에 대해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는 특정수익자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겨난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이 추가 편성됨으로써 기능 중심의 행정서비스와 대상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일정 부분 중첩될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둘째, 기능 중심으로 편제된 각 중앙행정부서 내에 대상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위기관이 생겨나는 경우에도 행정서비스가 중복제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실업자 전반에 대해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 능력개발지원팀과 여성실업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 여성고용팀은 동일한 여성에 대해 유사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중복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

# 3. 서비스 중복 여부 분석

# 가. 장애인 취업지원사업과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사업

- 1) 사업의 비교
- 가) 공통점

노동부의 '장애인의 취업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자금대

여사업'은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립 지원 등 경제적 기반 마련을 목적 으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해 준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이 두 사업 모두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단 보건복지부 사업은 월소득 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200%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나) 차이점

노동부의 '장애인 취업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사업'은 사업수행 주체, 지원 조건, 그리고 세부 지원대상에 있어서 차이 점을 갖는다. 먼저 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사 업수행 주체인데 비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사업은 보건복지 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노동부 사업은 개인 기준으로 1인당 5,000만~1억 원 이내의 자 금을 대여해 주는 데 비해, 보건복지부 사업은 가구 기준으로 1가구당 2,000만 원 이내의 자금을 대여해 준다는 점에서 지원조건상 차이를 보 인다. 지원기간 또한 노동부 자영업창업융자는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 로 7년, 자영업전세융자는 1년(5년까지 연장가능)이며, 보건복지부 사업 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10년으로 차이가 난다.

셋째, 노동부 사업은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최저생계비 200% 이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차이점에 근거해서 두 사업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LICH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TINIO   TINIO	
사업명	자영업창업융자	자영업전세금융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소관부처		노동부		
사업기간	,	91년 ~ 계속	'92년 ~ 계속	
사업수행 주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예산	40	20	160	
재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계획인원	80	88	800	
1인당 지원금액	1인당 5천만원내	1인당 1억원내	1가구당 2,000만원 한도 (단, 농협중앙회는 1,500만원)	
1인당 지원금리	연 3%	지원액의 연 3% (선납시 연2%)	연 3%(고정금리)	
지원기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1년 (1년 단위로 5년까지 연장가능)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지원대상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채권 보전 등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제시자	저소득 장애인(월소득인정액이 최 저생계비의 200%이하)	
용도	시설장비구입비, 영업장소 매입비 및 임차보증금, 상 품구입비 등	영업장소를 장애인에게 전대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창업에 필요한 비용 등	
사업목적	장애인 창업지원을 통한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기반 마련으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직업안정 도모	담보 부족 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영업장소 전세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창업활성화를 통한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 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 활·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 2) 사업의 중복 여부 분석

노동부의 '장애인 취업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사 업'의 중복 여부는 사업 대상 및 내용의 동일성 여부, 전달체계 중첩 및 중 복수급의 가능성, 사회적 수요 대비 공급량의 적정성 여부를 기준으로 분 석해 볼 수 있다.

먼저 두 사업의 사업 대상 및 내용의 동일성 여부를 살펴보면, 노동부 장애인취업지원사업 중 장애인 창업을 위한 융자 및 전세금융자사업과 보 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자금융자사업은 둘 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상과 서비스 내용 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노동부 사업은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보건복지부 사업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상의 일반/특정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사업은 연간 지원대상이 200명 이내의 소수이며, 보건복지부 사업은 1,000명 내외 가 되어 상대적으로 대상 인원이 많다.

융자조건을 보면 노동부 사업은 창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 당하는 것에 한정되는 데 비해, 보건복지부 사업은 창업비용 외에 생업 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지원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 의 재활기기 구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서도 융자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융자조건 면에서는 보건복지부 사업이 보다 탄력적이고, 노동부 사 업은 제한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가) 전달체계 중첩 및 중복수급의 가능성

두 사업의 전달체계 중첩 여부를 통해 중복수급 가능성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부 장애인취업지원사업은 노동부(장애인고용팀) →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 금융기관의 전달체계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 부 장애인자립자금융자사업은 보건복지부(장애인소득보장팀) → 시・군・ 구 → 읍·면·동 → 금융기관의 전달체계로 구성된다. 즉, 두 사업의 전 달체계가 외형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융자금를 지급하는 최종 단계는 금융기관으로 동일하다.

융자를 행하는 금융기관은 상환능력을 검토한 후 자신들의 책임하에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금융기관은 수급자 의 신용도 조회를 하게 되며 그 일환으로 다른 용도의 대출이 기존에 존 재하는지 등을 모두 파악하게 된다. 중복융자 등 이중수급 문제는 이 단 계에서 걸러지게 되며 따라서 수급상의 중복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나) 사회적 수요 대비 공급량의 적정성 여부

두 사업의 사회적 수요 대비 공급량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급 대상이 되는 장애인 수와 수급대상자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2005년 현재 장애인 수는 2,150,000명으로 추정된다. 2000년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중 46.6%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 취업률은 34.3%로 파악되고 있다.<sup>2)</sup> 장애인 중 약 13.3%가 취업을 희망하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율을 2005년 장애인 수에 적용하면 대략 300,000명의 장애인이취업을 희망하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들은 자영업창업융자사업과 장애인자립자금융자사업의 잠재적 수요자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정부가 매년 공급하는 융자사업의 대상자의 수는 노동부의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중 자영업창업융자(60명)와 자영업전세금융자사업(100명)의 수급자 수 등 연간 총 200명 이내이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자금융자사업의 수급자는 연 1,000명 수준으로서 두 부처의 사업 수급자는 모두 합하여 1,200명 이내의 소수이다. 이수는 잠재수요자 300,000명의 불과 0.4%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융자사업의 공급규모는 사회적 수요에 비해 현격히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 3) 중복 여부에 대한 결론 및 정책제언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분석 대상이 된 장애인 관련 노동 부 융자사업과 보건복지부 융자사업은 지원대상이 분리되어 있고, 최종 융자단계에서 중복수급이 걸러지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두 사업으로 인 해 중복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내용의 융자 사업이 공급 면에서 경합하고 있다고는 말할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공급 면의 경합이 문제시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대신 유사한 두 사업이 경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업의 지원조건이 상이하다는 점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융자조건의 차이는 대상자의 구분에 따른 차이에 기인하기보다는 사업 관할 부처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평

<sup>2)</sup> 여기에서 언급된 장애인 수, 취업률, 취업희망자 비율 등은 통계청, ≪2006 한국의 사회지표≫, 2006에서 인용한 것임.

가를 통해 지원방식이나 지원내용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지원요건 등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체 장애인 지원사업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체 체계 하에서 수요자의 요구별 다양한 지원조건을 갖춘 프로 그램을 제시하고 수요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 과 더불어 사업에 따라 다른 창구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상담창구에서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운영상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보건 복지부 사업의 경우 1992년 제도 시행 이후 1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아직 융자금의 상환율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등 제도운영상의 관리기능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즉, 상환율 파악, 제도시행의 효과검증 등 제도운영 상의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 융자 및 회수가능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창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컨설팅 등 사후 지원프로그램의 개선이 또한 필수적이다.

# 나. 신규실업자훈련사업과 전업주부재취업훈련사업

# 1) 사업의 비교

# 가) 공통점

노동부의 신규실업자훈련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전업주부재취업훈련사업 은 모두 노동부의 직업훈련 교육과정에 따른다. 여성가족부가 위탁하는 교 육훈련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노동부의 직업훈련도 동일하게 수행 중 이며, 따라서 전업주부재취업훈련지원사업 교육과정도 노동부의 직업훈련 교육과정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노동부 사업은 졸업예정자를 포함하여 고 용보험이 미적용되는 신규실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지만, 여성가족부 사 업의 경우 연령에 제한 없이 경력단절 전업주부 및 미취업여성에 한정하고 있는 만큼 일부 훈련대상이 중복되고 있다.

#### 나) 차이점

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사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 는 만큼 미취업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동부사업에 비해 여성취 업가능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노동부 사업은 훈련비를 전액 지급하고 교 통비와 식비를 별도 지급하는 데 비해 여성가족부 사업은 교육생이 20% 이내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 〈표 Ⅳ-3〉사업의 비교

(단위: 억원, 명)

사업명	신규실업자직업훈련	전업주부재취업훈련지원사업
소관부처	노동부	여성가족부
사업기간		'02년 ~ 계속
사업수행주체	직접수행 (훈련은 직업훈련기관 위탁)	직접수행 (훈련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위탁)
예산	426	5
재원	일반회계	여성발전기금
계획인원	17,075	800
1인당 지원금액	훈련비:〈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원 지원	교육훈련자 중 80% 국고지원 (교육생 20% 이내 부담)
지원근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	경력단절 전업주부 및 미취업여성 (연령제한 없음)
사업목적	고용보험 미적용 청년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이 유망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실시 함으로써 이들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 업계 수요에 부합한 인력 양성	전업주부 및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연계를 지원함으로써 경력단절 여 성인력 개발 및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난 해소 도모

# 2) 사업의 중복 여부 분석

# 가) 사업 대상 및 내용의 동일성 여부

노동부의 신규실업자훈련사업은 신규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 에 필요한, 예를 들어 제빵, 컴퓨터, 광고, 세무, 인테리어 등과 같은 다 양한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반면, 여성가족부의 전업주부재취업훈련사업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제도상으로 보면, 전업주부 중에서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 이 없는 경우 노동부 신규실업자직업훈련사업에도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 므로 부분적으로 대상의 중복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신규실업자직 업훈련사업에서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 중에는 전업주부에게 적합한 훈 련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의 내용도 일정 부분 동일하거나 유 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대상과 훈련내용 측면에서 보면 노 동부 신규실업자직업훈련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전업주부재취업지원사업은 일반/특정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 나) 전달체계 중첩 및 중복수급의 가능성

두 사업은 별개의 독립된 전달체계에 의하여 사업이 계획되고 집행되 고 있다. 노동부 신규실업자직업훈련사업의 최종 훈련서비스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법인, 일반학원 등에 의해 제공됨에 비해, 여성가족부의 전업주부재취업지원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의해서 훈련서비스가 제 공된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노동부의 일반 직업훈련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전업주부재취업훈련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공하는 여러 가 지 훈련 프로그램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노동부 신규실 업자직업훈련 참여자가 여성가족부 전업주부재취업훈련사업에 중복 참여 한다고 해도 이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현재로서는 부재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복참여를 금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노동부 신규실업자직업훈련은 자체 내에 서 취업이 될 때까지 연속 3회의 훈련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다른 사업에서 제공하는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하여 이것 을 중복급여로 금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두 사업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전업주부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부 신 규실업자직업훈련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전업주부재취업지원사업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두 사업에서 제공되는 훈련 프로그램 의 적합성, 물리적 접근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될 것 이다. 혹은 한 사업에 참여한 후 필요성이 있으면 다른 사업에도 차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즉, 현금급여가 아니라 훈련비 지원이라는 현물급여 가 중심이 되어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수급자가 자신의 취업능력 향 상을 위해 다수의 사업에 중복 참여한다 하여 이를 중복급여로 규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분석 대상인 두 사업의 중복수급은 원천적으로 문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중복 여부에 대한 결론 및 정책제언

이상에서 보듯 노동부 신규실업자직업훈련사업과 여성가족부 전업주부 재취업훈련지원사업은 사업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일반 /특정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특정의 프로그램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보 편적 프로그램에 비해 대상자들의 접근성이 높거나,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적합도가 높거나 효과성이 높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특수 프로그램이 존속할 근거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전업주부재취업훈련지원사업이 노동부의 신규 실업자직업훈련사업에 비해 어떤 면에서 효과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체계적인 사업평가가 요청된다. 다만, 사업평가나 훈련수요자의 수요 파악이라는 측면에서 전업주부재취업훈련 참여자의 정보가 노동부의 훈련 관련 기초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가 구 축되어야 훈련사업 간 비교 평가가 가능할 것이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며 훈련 프로그램의 공급과 관리의 효율화의 도모가 가능해질 것이다.

#### 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 부처공모형사업과 지역복지서비스 사업

#### 1) 사업의 비교

#### 가) 공통점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공모형 사업과 지역복지서비스 사업은 모 두 사회적 일자리 신규 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순수공모형 사업의 한계 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급필요성 은 높으나 정부재정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신규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해 중앙부처 혹은 지자체가 사업을 발굴, 기획하여 해당 부처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두 사업 모두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 체제로서 지방자치단 체·중앙행정기관·국민 등이 신청하는 사회서비스를 노동부(중앙사회적 일자리위원회),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하여 이를 지자체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 추진 체계 면에서 볼 때, 지자체가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자 등을 선정하며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기능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가 지자체라는 점에서 중복성을 갖고 있다. 노동부 사업은 저소득층에 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나 일반 국민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사업과 사회서비스 수혜자 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선정 과정에서 두 사업 모두 일자리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

#### 나) 차이젂

먼저 사업내용에서의 차이점을 보면, 일단 기존에 시행되고 있지 않는 사회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지원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상으로는 사업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는 않는다. 다만,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내용을 적극 발굴하는 형식 이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 사업내용 측면을 보면 두 사업이 상호 배

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사업수행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보건복지부 사업은 서비스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 〈표 Ⅳ-4〉사업의 비교

(단위: 억원, 명)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 중 부처 공모형사업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소관부처	노동부	보건복지부
사업기간	'07년 신규사업	'07년 신규사업
사업수행주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재원	일반회계	일반회계
1인당 지원금액	77만원	
서비스수혜대상	사회서비스의 공익성에 따라 고령자, 장애 인 등 저소득층에 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 정이나 일반 국민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전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한 정하지 않음)
사업목적	새로운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제 구축을 목적으 로 함	중앙 중앙주도형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추진방식	사회서비스 수급실태분석과 중앙행정기 관·지자체·일반 국민으로부터 공모를 통 해 공모형 사업으로 수행한 사회서비스 분 야 결정	지역별 특성과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 로 사회투자 영역별로 사업을 공모하 고,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 선정
지원내용		서비스 대상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바우 처 지원

# 2) 사업의 중복 여부 분석

# 가) 사업 대상 및 내용의 동일성 여부

먼저 사업내용 면에서 볼 때, 기존에 시행되고 있지 않는 사회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상으로는 사업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없다. 다만,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내용을 적극 발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사업내용 측면에서 두 사업이 상호 배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사업수행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보건복지부 사업은 서비 스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우처 시스템이란 대상자에게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서비스 공급기관에 이를 제출하면 공급기관이 사회서 비스관리센터를 통해 해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바우처 시스템은 다양한 공급기관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 지원액 이상으로 책정된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 어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영역을 구축하는 체계에서 선호될 수 있는 시스 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공급자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바우처 시스템의 우월성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오히려 추가적 인 관리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중 공모형 사업과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은 실질적인 수행과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중복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 다. 복지부의 2007년도 상반기 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아동비만 관리 등 2개 사업과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등 10개 자체 개발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노동부의 공모형 사업은 근로자심리상 담지원프로그램(EAP) 제공사업,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 지원사업, 탈 성매매여성 동료상담원 일자리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고용 지원,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 생활지원인력 배치, 행자부 민관협 력 코디네이터 배치사업,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사업, 청소년쉼터 전문상담사 배치지원, 장애인근로자 근로보조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두 부처의 사업 자체의 성격을 보면 보건복지부 사업의 경우 서 비스 대상자의 욕구(need)를 중심으로 개별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비스수요가 보편적이고 전략적 투자 필요성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10대 사회서비스를 발굴한 것이다. 반면, 노동부 사업의

경우 상당수의 사업이 집합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노동부의 공모형 사업 중 장기적으로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보육도우미 인건비지원사업, 청소년쉼터 전문상담사 배치지원 등이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복지서비스 영역과 중복의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업들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과의 중복보다는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로의 도입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 나) 전달체계 중첩 및 중복수급의 가능성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중 공모형 사업과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은 논리적으로 볼 때 상이한 공급주체에 의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른 사업명으로 공급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서비스가 중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부나 복지부가 앞으로 추가하는 사업들 간에 유사성이 발생할 경우 중복성의 우려가 있으며, 이는 노동부와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등 사회서비스 관련 부처들 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복지부가 2007년 하반기 사업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가 실행된다면 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심리상담지원프로그램(EAP) 제공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설사 두 프로그램이 서로 상이한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된다 할지라도 프로그램 내용의 개발과 운영비용의측면에서는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서비스 질의 차이가 나타나거나 고용 조건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이러한 유사 사업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주체가 유의해야 할 필요이 있으며 사업 영역에 대한 상호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사한 사업이 공급 차원에서 중복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대 상자가 중복 수혜하는 최종 소비에서의 중복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주요 한 최종 전달체계로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전달과정에서 수혜자 에 대한 스크리닝(screening)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노동부는 비영리단체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있고,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수 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사업이 시행되고 수혜자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들 기관 간에 조정할 수 있는 매개가 필요 하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관리센 터를 노동부 공모형 사업의 수행기관들과 연결시키는 방안도 조정 방안 으로 검토될 수 있다.

#### 3) 중복 여부의 결론 및 정책제언

이들 사업은 2007년의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성 여부 를 판단하기에 앞서 각각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두 사 업 모두 부족한 사회서비스 영역을 공모를 통해 발굴해 내고, 이에 대한 국 가의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아직까지는 중복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경우 사회서비스의 대 상과 사업의 내용에서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사업의 목적, 사회서비스 선정방식, 일자리 지원대상, 수혜자 측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중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노 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등에서 대상을 중심으로 놓 고 볼 때 나타날 수 있는 중복의 문제 유형이다.

게다가 사업발굴의 일차적 담당자인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 공 모형 사업이나 지역복지서비스 사업의 두 사업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사 업을 발굴하여 수행해 내기가 쉽지 않다. 현행 방식에서는 두 부처의 서 비스 공급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 상이한 공급체계를 택하는 경우 수혜 대상자에게서도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서비스 연계와 지속 이 어려워지는 만큼 연계된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즉, 〈표 IV-5〉처럼 바우처를 활용해 지역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I유형)으로 하고, 그외 바우 처를 제공하더라도 지역복지서비스가 아니거나 바우처를 활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노동부의 부처공모형사업(II유형)으로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두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복지부 프로그램은 수혜대상자의 요구 (need)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 중심이며, 노동부의 경우 지역에 필요한 공 공재적 서비스 프로그램이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대상자 중심 지원 프로그램과 집합적 소비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구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중심으로 역할을 구분할 경우 복지부의 경우 저소득·취약계층(여성, 장애인, 노인 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에 중심을 두고, 노동부의 경우 2007년 사업 중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생활지원인력 배치, 행자부 민관협력 코디네이터 배치사업 등과 같이 특정한 개인의 서비스 소비가 아닌 지역사회에 대한 집합적 소비 프로그램과 노동 관련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특화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표 Ⅳ-5〉지역복지서비스 영역구분

		지역복지서비스 여부	
		유	무
바우처 활용유무	9	l 유형	∥유형
	무	유형	

#### 라. 간병서비스 사업

#### 1) 사업의 비교

#### 가) 사업의 개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 녀가장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해 복권

기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수혜대상으로 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특히 임신·출산·육아 로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 등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의 2007년 예산은 73,900백만 원으로 민간기관 에 위탁하여 시행하거나 지자체가 직접시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으로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 계비의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급여는 1일 28,000원(실 비 없음)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5대 표준화자활사업 중 간병사업은 자활대상자로 하 여금 간병도우미로서 일하게 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보호환자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무료간병서비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화자 중 가병이 필 요한 자로서 간병을 책임질 부양의무자 등이 없는 경우(간병을 책임질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곤란한 경우에는 실비를 받는 유료간병서비스 실 시)이며 우선 순위는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 애인 ③ 기타 차상위계층 및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비해 보다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문간병인력으로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자활사업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보충적 소득보 장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군·구,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및 노인복지관 등이 사업수행기관이 되어 공익 형, 교육·복지형, 인력파견형 등의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월20만 원씩 7개월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영역 중 간병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노노케어(老老

care)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하고 일정 내용의 교육을 받은 65세 이 상의 노인이 지역사회 내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가사, 간병 및 말벗 등)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노인일자리사업 중 복지형 일자리사업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 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로 책정되어, 지역 내 독거 노인 및 거동불편노인 중 고연령자를 우선 대상으로 가사간병지원(취사, 세탁, 청소, 건강관리 안내 등), 정서지원서비스(상담, 말벗), 기타 생활지원 (외출동행, 응급상황 대비 정보전달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익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 · 사회복지 ·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 취약계층에는 일자리를 제공 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사회서비스 공급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7년에 전국 382개 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 중 다수가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지원사업의 수행은 주로 NGO 단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취 업 취약계층(장기실직자, 여성, 고령자, 자활대상자 등) 등을 고용하여 독 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간병, 가사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 영리단체에게 참여근로자 1인당 월 77만 원('07년)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 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수행기관별로 별도의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 악이 어려우나 가사간병 도우미 파견과 유사한 서비스의 내용을 가지는 일자리사업이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나) 공통점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지원사 업,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은 모두 간병서비스 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다른 세 사 업과는 달리 노인돌봄에 초점을 두고 있다.

#### 다) 차이점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지원사 업,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은 일자리 지원대상 및 서비스 수혜대상에서 그 차이가 있다.

먼저 일자리 지원대상을 보면,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만이 간병서비스제공자로 활동할 수 있는 반면 자활근로사업은 기초 생활보장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한다. 사회적 일자리지원 사업 은 취업 취약계층 및 일반인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자)이 그 지원대상이 된다.

서비스 수혜대상자를 보면,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의 경우는 노인이, 자활

〈표 Ⅳ-6〉 간병서비스 사업의 비교

	가사간병도우미	사회적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지원	자활근로사업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업수 행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업 목적	질환자 및 소년소녀가 장 등 취약계층에게 무 료 가사간병 복지서비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수 익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적정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 리를 창출하여 취업취약 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 공하고, 사회적으로 유 익한 사회서비스 공급도 확대	여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보 충적 소득보장 및 건 강하고 활기찬 노후생	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 로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일을 통한 빈
지원 대상		취업취약계층(장기실직 자, 여성, 고령자, 자활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근로능력이 있는 기 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지원 형태	인건비를 지원받는 방 문도우미가 수혜자에게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정액, 직접 수행	자치단체 경상보조	지자체 보조 (서울 50%, 지방 80%)
지원 내용	일당 임금 26,000원 지원	참여근로자 1인당 월 77 만 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지원	-부대비용:	기능습득 및 근로기 회제공

근로사업은 취약계층이 그 수혜대상이 되며, 사회적 일자리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및 일반인이,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저소득 노인, 장애 인, 질환자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이 된다.

#### 2) 사업의 중복 여부 분석

#### 가) 사업대상 및 내용의 동일성 여부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의 경우 다른 영역과는 달리 고령자들의 취약한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중복성 평가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영역이다. 오히려 중복성의 문제보다 노인일자리를 계속 확충하고 있으나 희망노인에 비해 일자리 수나 수행기관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 우선적인해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보사연)에 근거하여 추정하여 볼 때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1.8%가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추정하면 2007년의 경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하는 노인이 56만 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자리의 확대 속도에 비해 사업수행기관과 전담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데다가, 사업시행 초기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았으나 사업이 대폭확대되었음에도 사업수행 인력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간병 영역의 경우 전문적 간병서비스가 아니며, 전문적 간병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지원기간도 연 7개월에 임금단가는 20만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근로조건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의 전체적인 근로조건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다른 영역의 간병 일자리와비교할 때 불평등한 요소를 안고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수행대상이 노인인 것을 고려할 때 노동강도와 근로시간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대상자의 욕구(need)에 따라서는 여타 사업과 중복하여 수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평가된다.

네 사업 중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은 가사간병 서비스제공이라는 점에서 사업내용이 동일하고 이용자, 참여자 및 지원 요건 등에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사업내용이라는 점에서 서비스 공급에 경합성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일자리 참여 대상 근로자를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차상위 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인 반면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지원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사 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으로 ①조건부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자활특례자 ④ 일반수급자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의 저소득층 이고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지원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장기실업자, 여성, 고령자, 자활대상자), 자활근로사업은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③ 기타 차상위계층 및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자로 무료간병 서비스 대상자이다. 다만, 사업수행방식에 있어 무료사업과 유료사업이 혼재 되어 있음에 따라 참여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도 차이가 있으며, 노동자성 등의 측면(사회보험 가입, 근로조건 등)에서도 유사한 참여자와 유사한 사업 수행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사회적 일자리지원사업과 복지부의 두 간병사업에서는 사업 대상 및 내용의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서비스 경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경합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일 자리지원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이 입증된 영역의 경우 해당 서비스 영역을 관리하는 부처의 안정적인 사회 서비스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 나) 전달체계의 중첩 및 중복수급의 가능성

보건복지부가 수행주체가 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과 자활근로사 업은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종 수

혜자의 중복성 문제는 내부의 체계(지자체, 자활후견기관 등 동일 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서 비스 수혜자의 경우 노동부와 복지부사업 간에는 중복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서비스이용자의 배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DB를 구 축해 시장에서 중복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중복 문제는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의 사회적 일자리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2006)에서 도 지적되었지만, 연구용역을 수행한 점검평가단은 두 사업 모두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 근거로는 먼저 자활사업과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모두 실직 빈곤층 및 취업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지원사업으로 노동통합정책의 성격을 갖는 다는 데 있다. 자활사업은 실직 빈곤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토록하여 취업잠재력을 개발하게 한다는 점에서 노동통합적 기능을 수행 하고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사업 또한 장기실업자,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동통합적 기능을 수 행하고 있다. 다만, 자활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 이 참여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다.

또한 두 사업 모두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서비스 공급확대정책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활사업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와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로 구분되며, 이 중 후자는 사회서비스 공 급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무료사업과 수익사업을 병행함으로써 단계적 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겨냥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 참여대 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중심 이며,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대부분이 사회서비스이며,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현재의 사업추진방식이 비영리민간단체로 하여금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유사하게 택하고 있어 자원투입의 중복과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제도와의 유기적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자활사업은 사회서비스 공급확충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급여체 계가 생계급여 수준에 머물고 있어 참여자의 근로활동을 유인하고, 인적 자본개발, 서비스 품질향상 등을 실현하는 데 제약이 있다. 사회적 일자 리 사업은 보다 규모화된 사업단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향을 갖고는 있으나 간병 영역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기관에 자원이 집중되고 있지 못해 소규모 사업이 재정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한 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상과 같이,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 중 간병과 관련된 영역은 기존 의 사회복지기관들과 사회단체를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택하고 있어, 복지부 의 다른 사업들(노인, 여성, 아동 관련 사회복지서비스)과 전달체계가 중복 또는 중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 사업의 수행방식, 수행 대상 등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참여자 및 수혜자들의 형평 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정이 요구된다. 인건비 책정 및 근로자성 인정 에서의 차이, 즉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시장지향형 사업단을 운영하더라도 수 익금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반면,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경우 다소 유동적 으로 사업의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는 점,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단기성·불안 정성 등으로 인해 참여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수혜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욕구가 있는 자에게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무차별평등의 원칙이 서로 다른 사업의 진 행에 따라 훼손될 수 있으며,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별로 공급량의 차 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수혜의 여부와 서비스 양과 질이 차 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3) 중복 여부에 대한 결론 및 정책제언

# 가) 노인일자리지원사업

현실적으로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서의 간병영역(노노케어 사업)은 다른

영역과의 경합이나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간병영역에서 노인 일자리지원은 여타의 노인분야 사회적 일자리 사업들 간에 부처 간 연계, 조정방안을 강구하고, 동일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근로조건, 임금수준 등이 서로 상이하게 계획되지 않도록 할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불충분할경우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나 사회적 일자리지원사업의 영역과 정보를 공유하고 보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계체계가 필요하다.

#### 나)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지원사업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지원사업은 모두 빈곤층 및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데나 이들 중 상당수가 반복적으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반복빈곤층 및 장기실직상태의 빈곤층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상당한 규모에 달한 위험계층에게 개입하여야 한다는 인식 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사 업은 일자리기근(Job Penury)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취업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사회 의 취약한 ALMP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먼저 빈곤층에게 현금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 일 자리를 창출하고 그 결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충한다 는 점은 복지제도의 건강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 또한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서 비스가 지역사회에 제공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되 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립과 소외, 빈곤으로 고통받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고용지원센터 등이 저소득층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미약한데, 이는 이들이 고용기회 및 인적 자본 개발의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실

험으로서 사회정책의 통합적 연계 및 운용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사업의 나름대로의 성과가 반영되어 사회서비스 공급역량을 확충하고 단계적으로 사회서비스시장(Social Service Market) 을 형성하고자 하는 전략이 범정부차원에서 받아들여졌으며, 나아가 이 러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사회 전체의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회투자국가 전략'의 배경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두 사업 모두에서 장 기적으로 사회서비스시장을 형성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유 효수요를 발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평가의 초점은 중복성 여부와 함께 사회서비스시장 형성에 적합한 체계 를 선택하고 있는가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과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간병사업의 경우 거의 유 사한 주체와 방식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통합 또 는 긴밀히 연계된 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미 상당 부 분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업에서 상이한 대상자에 대한 불평등한 지원의 문제가 존재한다. 수혜대상자의 경우 어느 사업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는가에 따라 서비스 질의 차이가 나타날 우려가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수발(장기요양)에 대한 사회보험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제도로 포괄되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에도 가사 지원서비스는 사회서비스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일관된 서비스 기준과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는 간병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 해당 기관에 대한 기초통계를 구축하고,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가사간병사업 또한 기타 사업과 마찬가 지로 임금수준 향상 및 고용안정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지원사업에서의 간병영역은 복지부의 간병 관련 사업들 및 여타 사회복지서비스 영역과 서비스 경합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혜자 에 대한 정보공유 및 중복조정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서비

스 공급에서의 경합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서비스 경합은 오히려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수혜자의 중복수혜 문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는 경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함께 간병영역에 대한 체계화,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종 합적인 관리 등을 위한 조정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조정 방안으로는 사회서비스센터를 활용하여 수혜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연계·조정으로부 터 간병영역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특정 부처로 이관·통합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모색해 볼 수 있다.

간병영역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체계와 자격관리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별로 이루어지는 교육체계를 연계하여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산모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돌봄노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인력양성이 공동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돌봄노동 인력양성센터'로 성격을 규정해 인력수급 조절, 인력양성과 서비스의 표준화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산정책처의 연구보고서(2006)에서 제기한 다음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들 사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사·간병 서비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법률로서 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가사·간병서비스 수혜자의 지적 판단 능력·상태·질병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방식(바우처 방식, 민간위탁방식, 제3섹터 활용방식, 직접수행방식)과 참여 사업수행단체의 자격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된사업운영체계의 구축을 통한 서비스 수혜대상 그룹의 중복성 문제 해결,수혜자 그룹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별 가격 차등화(무료 포함)를 통한 시장성 제고,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통합 및내실화가 요구된다.

# 기계

이상으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총량적인 평가와 일부 사업의 중복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 의 현황분석을 위해 각 사업들을 정책대상과 정책수단으로 구분하여 활 용실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개별 사업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춘 기존 평가방식에 비해 사업들을 종합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자리 지원사업이 정책대상별로 어떤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각 정책대상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선택한 정 책수단이 바람직한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기초 개요도를 제 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이를 통한 효율화방안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업들 혹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성과 사업의 성과제고 방안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필요성은 주로 정책대상에 관한 원칙이고 사업의 성과제고 문제는 정책수단에 관한 논의이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의 설정이다. 특정의 개별 사업들이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기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사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고용능력제고를 재정지원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시장기능의 보완성 차원, 즉 노동시장의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능력제고에 초점을 맞추 어야 한다.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노동시장 취약계 층에 초점을 맞추고 시행되고 있다. 다만 문제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범 주가 분명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각 계층에 대한 사업수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이는 일자리 지원사업이 각 부처단위로 수행되는 관계로 정책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런 이유로 특정대상에 사업의 편중성이 나타나 기도 하고 어떤 계층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한편, 일자리 지원사업의 정책대상을 고려함에 있어 노동공급 측면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는 상당수 일자리 지원사업이 또 다른 측면, 즉 해당 산업의 수요라는 관점을 함께 고려하고 있기때문이다. 가령, 각 부처에서 해당 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들이나 혹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지원사업의 정책대상이 이들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숙련이라는 관점에서 불일치가 존재할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일자리는 고용취약계층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가 시장기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하에 이들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사중손실'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과 인력정책이 혼재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개념 및 범주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적극적 노동시장의 범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이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분류를 시도하였다. 적 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공급자의 관점에서 고용취약계층

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수요의 측면은 고려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현실적인 접근은, 고용취약계층과 부 합하지 않는 노동수요와 관련한 인력정책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 업의 분류에는 제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산업의 수요, 가령 IT관 련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부족에 대비한 학과 교육프로그램의 지원, 훈련 기관의 육성 및 지원, 보조금 지급, 관련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사업 등 과 같은 사업프로그램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범주에는 포함 시키지 않는 방안이다. 아니면 보다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이들 사업들을 모두 포괄하여 일자리 지원사업에 포함시키는 것도 방안이다. 이는 재정 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일자리 창출정책의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튼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고용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다 면 일자리 지원사업 재조정이 필요하다. 즉, 현행 일자리 지원사업 중 사회 서비스 기능에 초점을 맞춘 특정 분야나 청년층 중 고용취약계층과 같은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모두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시 장기능을 통해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사업들은 가급적 축소하고 재정을 통 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시장기능의 보완적요소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일자리 지원사업의 전면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정책대상그룹을 고용사각지대 계층으로 구체화하여 이들에 대해 취업능력 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취약계 층에 대한 단기일자리 위주의 사업은 지속적인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우려 가 큰 만큼 이러한 사업은 지양하고 노동수요에 부응하는 취업능력제고 → 취업유인 정책수단 제공 → 안정적인 일자리 → 빈곤탈출의 연계고리가 이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취업능력제고 시까지 소득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에 역점을 두고 시 행할 필요가 있다. 이울러 정책대상집단의 노동시장 상황과 연계된 사업의 탄력적 운용이 뒷받침되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자. 이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정책수단에 관한 논의로서 사업의 효율화나 성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사업의 효율화 측면에서 보면 전달체계의 기능적 효율화가 언급될 수 있다. 사업의 성과와 관련하여서는 각 정책목표 대상의 고용성과 혹은 취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이 문제된다.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주로 지적된 주요 논점은 사업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단기일자리 혹은 낮은 질의 일자리라는 점이고, 전달체계와관련하여서는 사업의 중복성 및 사업 간 유기적 연계의 부족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지적은 모두 정책수단과 관련되어 있다. 각 정책대상집단에게 어떠한 정책수단이 적합할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보다 많은 연구를통해 검증해야 할 것이지만 현재와 같이 특정 정책대상집단이 선택할 수있는 정책수단이 한정되어 있거나 혹은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의 정책수단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창출된 일자리의 고용의 질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간 유기적 연계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수행하여야 한다. 보조금 사업의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훈련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맞춤식 훈련을 통한 취업가능성 제고 및 창출된 일자리의 고용안정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정책대상별 유효한 정책수단의 발굴 및 지원후 사후관리를 통해 일자리의 지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가령, 창업의 경우 사후관리 및 컨설팅 기능을강화하여 창업지원이 일회성 융자형태의 지원을 벗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유사 사업 간의 전달체계의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의공유화를 모색하고 나아가 전달체계의 유기적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이루

어지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총괄적 조정기능과 평가체계가 결합될 필요가 있다. 총괄적 조정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한 정기적인 사업평가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총괄적인 조정기능의 역할은 크게 1) 유사 중복사업의 검토 및 사업의 재조정 기능, 2) 사업 간 전달체계의 시너지효과 기능제고를 통해 거래비용의 축소, 3) 노동시장 여건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및 기존 사업의 예산 재조정 기능 수행, 4) 사업의 성과관리(계획-집행-성과-사후관리), 5) 평가체계의 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의 평가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크게 두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총괄평가이다. 이는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목표집단별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의 수혜대상 및 정책수단별 분류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1)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 2) 일자리지원이 필요한 목표집단의 발굴 및 이에 적합한 사업의 방향제시, 3) 기존 사업의 예산배정 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별 혹은 유형별 일자리 지원사업의 심충평가이다. 이는 정책수단이나 정책대상이 유사한 사업군을 대상으로 심충평가를 수행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의 중복성 검토, 전달체계의효율화,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도모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혹은 폐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율화방안을 정리하였다.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일자리지원 사업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일자리의 양적 측면)하고 일을 통해 지속 적인 소득안정(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고영선·윤희숙·이주호,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한국개발연구원, 2004.
- 2.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지원사업 평가」, 2006.
- 3. 금재호·김승택·윤미례, 「노동행정에 있어서 성과관리제도 도입방안」, 2004.
- 4. 기획예산처, 「2005, 2006, 2007년도 일자리 지원사업」, 각 연도
- 5.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2004.
- 6. 김석진, 「선진국 사례로 본 일자리 창출 포인트 6」, 『LG주간경제』, 2004.
- 7. 노동부, 「중기 고용정책 기본계획(2004~2008년)」, 노동부, 2003.
- 8. 유경준,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2.
- 9. 이규용·이해춘·이인재·박성재·이지은, 「일자리 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등 성과분석 체계 구축」, 기획예산처, 2005.
- 10. 이규용·이인재·이해춘·박성재·이지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 성과평가」, 기획예산처, 2006.
- 11. 재정경제부, 「일자리 만들기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재 경경제부, 2004.
- European Commission, Impact Evaluation of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2002.
- Fay, Robert. G.,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es: Evidence from the Programme Evaluations in OECD countries,"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18, Paris: OECD 1996.

- 14. IMF, Unemployment and Labor Market Institutions: Why Reforms Pay Off, 2003.
- 15. Jackman, R., "What can Active Labour Market Policy do?"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Discussion Paper No. 226, March 1995.
- Martin, John P, What Works among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Experiences, OECD Economic Studies, 2000.
- 17. New Zealand Department of Labour, "Evaluation of Job Action", Market Research and Evaluation Team, Strategic Support Group, New Zealand Employment Service and Evaluation Unit, Labour Market Policy Group, August 1995
- 18. OECD, Jobs Strategy: Assessing Performance and Policy, OECD, 1999.
- 19.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Safety Net Policies, OECD, 2000.
- OECD, Labour Market Performance and the OECD Jobs Strategy,
   OECD Economic Outlook, 1999.
- OECD, Labour Market Policies and Public Employment Service, OECD, 2001.
- 22.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 〈부록 1〉 정책수단별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부표 1〉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 , , ,					
정책수단	목표집단 소분류기준	사업명	소관부처	예산의 성격	2007(계획)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학(원) 재학생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지원	여성부	여성발전기금	9.5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청년층 일반	해외취업지원(알선)	노동부	일반회계	14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여성 (전업주부 등)	여성창업활성화 중기청		일반회계	24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전문인력	학교기업육성	교육부	국가균형발전위 특별회계	150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고용지원센터 육성	노동부	일반회계	34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축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49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0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21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고용정보망 운영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25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중장기인력수급전망기초통 계생산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14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중장기인력수급전망기초통 노동부 고 계생산		고용보험기금	7.8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중장기인력수급전망기초통 계생산 노동부 고용보험		고용보험기금	18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종합직업체험관 (Job World)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276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실업계고교 취업지원기능확충	노동부	없음	신규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인적자원 종합정보망 구축	교육부	없음	4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지역고용창출 및 인적지원 개발지원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97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 활한 이행촉진	교육부	일반회계	21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뉴패러다임 확산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19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노사협력능력개발지원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5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채용박람회지원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자체	15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	노동부	일반회계	147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지역별인력 및 직업훈련수 요조사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5.7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노인인력기관운영지원	복지부	일반회계	30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고령자인재은행지원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8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장애인취업지원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9
공공고용서비스와 행정	대상자없음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지원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31

〈부표 2〉 노동시장 훈련

정책수단	목표집단 소분류기준	사업명	소관부처	예산의 성격	2007(계획)
훈련	고졸 미취업자(실업자)	우선선정직종훈련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1925
훈련	고등학교 재학생	기능사양성 특별훈련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279
훈련	고등학교 재학생	기업공고연계맞춤형 인력 양성프로그램	중기청	일반회계(기금)	70
훈련	대학(원) 재학생	고부가가치특별인력양성	교육부	일반회계	30
훈련	청년 실업자(미취업자)	신규실업자직업훈련	노동부	일반회계	420
훈련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노동부	일반회계	18
훈련	장애인	장애인취업지원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2
훈련	장애인	산재장애인직업훈련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 혐 및 예방기금	133
훈련	저소득자(기초생계비수 급자, 차상위계층)	자활훈련	노동부	일반회계	57
훈련	저소득자(기초생계비수 급자, 차상위계층	자활훈련	노동부	일반회계	27
훈련	취약계층일반	고용촉진훈련	노동부	일반회계	70
훈련	재직근로자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0
훈련	여성(전업주부 등)	전업주부재취업훈련지원	여성부	일반회계	4.5
훈련	실업자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금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1575
훈련	국민일반	기능사양성 특별훈련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228
훈련	국민일반	고용촉진훈련	노동부	일반회계	12
교육, 연수체험	대졸 미취업자(실업자)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산자부	일반회계	100
교육, 연수체험	대졸 미취업자(실업자)	해외취업지원(연수제)	노동부	일반회계	90
교육, 연수체험	대졸 미취업자(실업자)	해외취업지원(인턴제)	노동부	일반회계	0
교육, 연수체험	고등학교 재학생	Biz Cool 프로그램 활성화	중기청	일반회계	10
교육, 연수체험	대학(원) 재학생	청년무역인력 양성	산자부	일반회계	0
교육, 연수체험	대학(원) 재학생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중기청	일반회계	25
교육, 연수체험	대학(원) 재학생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정통부	일반회계	18.5
교육, 연수체험	대학(원) 재학생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파 견	정통부	일반회계	3
교육, 연수체험	대학(원) 재학생	대학생 창업연수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6
교육, 연수체험	대학(원) 재학생	대학생 영농창업연수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0
교육, 연수체험	대학(원) 재학생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쉽	교육부	국가균형발전위 특별회계	20
교육, 연수체험	청년 실업자(미취업자)	중소기업청년채용패키지	중기청	일반회계	105
교육, 연수체험	청년 실업자(미취업자)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노동부	일반회계	347
교육, 연수체험	청년 실업자(미취업자)	관광분야 청년인턴채용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 금	10
교육, 연수체험	실업자	농업인턴쉽 지원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4.2
교육, 연수체험	전문인력	문제해결형연구지원	교육부	일반회계	59
교육, 연수체험	국민일반	KOICA개발협력단 사업	외교부	일반회계	285

## 〈부표 3〉고용 인센티브

정책수단	목표집단 소분류기준	사업명	소관 부처	예산의 성격	2007(계획)
직접:고용창출, 고용유지등을 위해 인건비 지원	청년 실업자(미취업자)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1006
직접:고용창출, 고용유지등을 위해 인건비 지원	취약계층일반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 노동부 고용보험기 려금		고용보험기금	460	
직접:고용창출, 고용유지등을 위해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 용지원	산자부	일반회계	60
직접:고용창출, 고용유지등을 위해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중소기업전문인력 채용지원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384
간접: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국민일반	중소기업고용환경 개선지원금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64
간접: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국민일반 중소기업신규업종 노동부 고용보험 진출지원		고용보험기금	25	
간접: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국민일반	교대제전환지원금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230

### 〈부표 4〉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수단	목표집단 소분류기준	사업명	소관부처	예산의 성격	2007(계획)
단기일자리	청년 실업자(미취업자)	구인업체 개척사업('06년 완료)	노동부	일반회계	06년완료
단기일자리	고령자	노인일자리 지원	복지부	일반회계+균특 회계	763
단기일자리	저소득자 (기초생계비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취업촉진	노동부	일반회계	14
단기일자리	저소득자 (기초생계비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복지부	일반회계	2594
단기일자리	저소득자 (기초생계비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복지부	일반회계	0
단기일자리	전문인력	문화원형창작디지털콘텐츠화	문화관광부	일반회계	40
단기일자리	전문인력	통합복지콜센터	복지부	일반회계	32
단기일자리	전문인력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	정통부	일반회계	271
단기일자리	국민일반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행자부	일반회계	41
단기일자리	국민일반	행정정보 DB구축	행자부	일반회계	515
단기일자리	국민일반	국민연금 상담사 채용	복지부	국민연금기금	171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층 일반	정보화마을프로그램매니저	행자부	일반회계(기금)	20
사회서비스 일자리	저소득자 (기초생계비수급자, 차상위계층)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복지부	일반회계	151
사회서비스 일자리	저소득자 (기초생계비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사간병도우미	복지부	복권기금	739

## 〈부표 4〉계속

(ナル 4/ 게キ					
정책수단	목표집단 소분류기준	사업명	소관부처	예산의 성격	2007(계획)
사회서비스 일자리	저소득자(기초생계 비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후견기관 기능 활성화	복지부	일반회계	270
사회서비스 일자리	취약계층일반	사회적 일자리 제공	노동부	일반회계	1215
사회서비스 일자리	취약계층일반	숲가꾸기	산림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981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인력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여성부	일반회계(기금)	2471.6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인력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여성부	일반회계(기금)	1327.3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인력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여성부	여성발전기금	19.2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인력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여성부	여성발전기금	23.3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인력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복지부	일반회계	366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인력	의료급여 관리(사례관리사)	복지부	일반회계	60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인력	특수교육지원 인력확충	교육부	일반회계	65,2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인력	깨끗한 학교 만들기	교육부	일반회계	172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인력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육성기금	26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인력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아카데미)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육성기금	120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인력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관광부	복권기금	55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인력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문화관광부	일반회계(기금)	15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인력	분야별 예술강사 풀제운영지원	문화관광부	일반회계	178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인력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화관광부	국민체육기금	143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인력	5대강 환경지킴이	환경부	일반회계(기금)	40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인력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 계	82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인력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산림청	일반회계	114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인력	산림보호강화	산림청	일반회계	328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문인력	정신보건센터운영	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 금	88
사회서비스 일자리	국민일반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	여성부	일반회계	26.9
사회서비스 일자리	국민일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복지부	일반회계	236

## 〈부표 4〉계속

정책수단	목표집단 소분류기준	사업명	소관부처	예산의 성격	2007(계획)
사회서비스 일자리	국민일반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보호사업	복지부	일반회계	26
사회서비스 일자리	국민일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복지부	일반회계(기금)	296
사회서비스 일자리	국민일반	노인돌보미 바우처	복지부	일반회계	322
사회서비스 일자리	국민일반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복지부	일반회계	771
사회서비스 일자리	국민일반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복지부	국가균형발전위 특별회계	150
사회서비스 일자리	국민일반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복지부	일반회계	50
사회서비스 일자리	국민일반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농림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9
사회서비스 일자리	국민일반	자원봉사 도우미	행자부	일반회계(기금)	17
사회서비스 일자리	국민일반	장애아동특수교육보조원	교육부	일반회계	197
사회서비스 일자리	국민일반	방과 후 학교	교육부	일반회계(기금)	610
사회서비스 일자리	국민일반	고궁연장운영	문화재청	일반회계(기금)	16
사회서비스 일자리	국민일반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	문화재청	일반회계	29
사회서비스 일자리	국민일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문화관광부	일반회계	60
사회서비스 일자리	국민일반	박물관 연장운영	문화관광부	일반회계	33
사회서비스 일자리	국민일반	미술관 연장운영	문화관광부	일반회계	11

## 〈부표 5〉 창업 인센티브

정책수단	목표집단 소분류기준	사업명	소관부처	예산의 성격	2007(계획)
창업인센티브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여성창업자금지원	여성부	여성발전기금	사업종료
창업인센티브	여성(여성가장, 실업자)	자영업창업지원	노동부	근로자복지진흥기금	80
창업인센티브	장애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복지부	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 회계	160
창업인센티브	장애인	장애인취업지원	l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기금	30
창업인센티브	장애인	장애인취업지원	누포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기금	88
창업인센티브	저소득자 (기초생계비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창업자금 지원	복지부	일반회계	20
창업인센티브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지원	노동부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50
창업인센티브	전문인력	여성창업자금지원	여성부	여성발전기금	사업종료

## 〈부록 2〉 수혜집단별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 〈부표 1〉 장애아

수혜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4.7LH =1	지원	금액	지원	인원	1인당 7	[원금액			
	자에이기조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여성부	-	23.3	0	192	-	0.121			
	이글으로시던				내용						
			저소득층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제공								
		소관부처	지원		지원		1인당 7				
	중증장애인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활동보조인	복지부	0	296	0	11000	-	0.027			
	지원	내용									
		장애인 바우처					101-011				
	장애인	소관부처	지원		지원		1인당 7				
	주민자치센터	W-11.1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도우미 지원사업	복지부	0	50	0	2000	_	0.025			
				E 110111 F00	내용	###E O.D. !!	11.21				
장애아			지워		석원, 장애인 지원		· ·	-10170H			
2010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1원금액 2007			
	장애아동특수	교육부	87.4	197	2452	4000	0.036	0.049			
	교육보조워	业五十	01.4	197	 내용	4000	0,030	0.049			
	114112	내용 특수교육보조원, 종인반전담강사.									
					,고고고, 8 년 !실보조인력 9	,					
			지원		지원		1인당 7	[원금액			
	E 4 7 0 7 101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특수교육지원 인력확충	교육부	0	65.2	0	604	-	0.108			
	신역적공				내용						
				특수교	육지원인력 인	건비 지원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1인당 7	[원금액			
	정신보건센터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운영	복지부	38	88	315	560	0.121	0.157			
	T.O.				내용						
					운영비 지원						

### 〈부표 2〉 청소년(초중고)

수혜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액				
	소선무서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복지부	98	366	902	4540	0.109	0.081			
(초중고)	시력이공센터 운영지원	내용								
(32077)	T 9/10	공부방 운영비 1800개소								
		(월 200만원/1개소)								
				인건!	비 1인 100민	원/월				

## 〈부표 2〉계속

수혜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시 기타를 다	지원	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액				
	20177 A A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깨끗한 학교	교육부	0	172	0	4231	ı	0.041			
	만들기		내용								
				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					
		소관부처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액				
		2011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청소년위원 회	16	26	300	400	0,053	0.065			
		내용									
				위기청소년	크에 청소년동	한자 지원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액				
	분야별	2.ゼーハ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예술강사	문화관광부	89	178	1431	2000	0.062	0.089			
	풀제운영지원				내용						
				예술관련 전	过공자 강의(시	시간당 4만원	)				

## 〈부표 3〉 취약이동, 청소년

수혜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A 고나브 루티	지원	지원금액		인원	1인당 지원금액			
	011505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요보호이동 그룹홈형태보호사업	복지부	9	26	120	352	0.075	0.074		
	그룹무입네도오시합			내용						
			공동생활가	정 176세대 (	세대당 2	62천원/월	<u>월</u> )			
	방과 후 학교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1인당 제	[원금액		
		조선구시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취약아동.		교육부	40	610	476	10335	0.084	0.059		
청소년		내용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1인당 제	[원금액		
		소선구시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청소년 방과후	청소년위원회	77	120	600	900	0.128	0.133		
	활동지원	내용								
	(아카데미)	아카데	아카데미 200개소 운영 아카데미 운영담당 책임자(180만원), 실무지도자(110만원), 아카데미 강사(시간당25,000원~35,000원)							

## 〈부표 4〉 노인

	사업명		사업내용							
		A 7LH 구I	지원	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액			
	독거노인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복지부	0	236	0	7200	-	0.033		
					내용					
			생활	지도사 선발	발 및 교육실	시(1인당 36년	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소관부처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액			
		エセナハ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노인		복지부	0	322	0	4683	-	0.069		
	비구시	내용								
				돌	봄서비스 저	몽				
	나를 되아게 중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액			
	사회취약계층 대상	エゼナバ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대성 문화예술교육	문화관광부	50	55	303	225	0.165	0.244		
	지원				내용					
	시견	아동	복지시설 및	Ļ 노인장애 <sup>(</sup>	인 시설 대성	예술 강사	및 교보재 기	1원		

## 〈부표 5〉 일반국민

수혜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소관부처	지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원금액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여성부	2196.6	2471.6	40745	43935	0.054	0.056			
		내용									
		보육교사 인건비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1인당 지	[원금액			
	 산모신생아	エピナバ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도우미 지원	복지부	38	151	864	1418	0.044	0.106			
	1 1 1 1 1 1				내용						
			출산가정 도우미서비스 제공(도우미 지원단가 60만원)								
	의료급여 관리 (사례관리사)	소관부처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액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복지부	37	60	3686	6034	0.010	0.010			
		내용									
일반국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원봉사 도우미	소관부처			지원		1인당 지				
		케지브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행자부	해당없음	17	해당없음	496	_	0.034			
		내용 센터별 코디네이터 2명 지원									
			전터널 .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액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정보화마을	행자부	0	20	0	305	_	0.066			
	프로그램매니저	생사후 0 20 0 305 - 0,000 내용									
		네ㅎ 340개 정보화 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1인당 110만원/월)									
	고궁연장운영	소관부처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액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문화재청	0,6	16	11	36	0.055	0.444			
					 내용						
		관람권 매표 및 문화재 관람 제공									

## 〈부표 5〉계속

수혜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1 211-110	1 110		지워	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액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문화재특별관리 비 지원	문화재청	0	29	0	356	-	0,081			
	비 시전		내용								
			국자지정 문화제 관리비 지원								
		A 코타브루티	지원금액		지원	인원	1인당 지원금액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박물관 연장운영	문화관광부	30	33	29	92	1.034	0.359			
		내용									
		연장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소관부처	지원		지원		1인당 제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미술관 연장운영	문화관광부	2	11	12	15	0.167	0.733			
					내용						
			-101		인건비 및 운		.01=1 =	101701			
		소관부처	지원		지원		1인당 제				
	생활체육지도자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지원	문화관광부	125	143	1237	1400	0.101	0.102			
		내용									
			생활체육협의회 배치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월146만원 지급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약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	소관부처	시면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환경부	71	82	492	528	0.144	0.155			
		된성구   71   62   492   526   0,144   0,105   내용									
		자연환경안내원 인건비 및 부대비									
일반국민	산림서비스증진	소관부처	지워		지원		1인당 7	[]워귿앤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산림청	24	114	200	767	0.12	0.149			
	사업	내용									
		저소득층 고용확대 및 산림서비스 요원 인건비 지원									
		17185	지원	금액	지원	인원	1인당 제	[원금액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숲가꾸기	산림청	1579	1981	10198	11133	0.155	0.178			
					내용						
					<u>  </u> 건비 및 사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1인당 제	[원금액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산림보호강화	산림청	13	328	87	3263	0.149	0.101			
		내용									
					및 산림서비스			101-11			
		소관부처	지원		지원		1인당 제				
	공공도서관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개관시간 연장운영	문화관광부	5	60	80	333	0,063	0.180			
	COTO			MAYON O	내용	Mul +101					
			т101		인건비 및 운 T		1015	1의그애			
		소관부처	지원 2006		지원		1인당 제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부	2006	2007	2006	2007 1400	2006 0,009	2007 0,011			
	양성배치	군외인성구	- 11	10	내용	1400	0.009	0.011			
		내용 월45만원 지원									
	실·사건전 시전										

## 〈부표 6〉 저소득계층

수혜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지역복지 서비스	소관부처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액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복지부	0	771	0	17400	_	0.044		
	혁신사업	내용								
		0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1인당 지원금액			
	방문보건사업	2.50十八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왕군보신시합 활성화	복지부	0	150	0	2000	-	0.075		
	투 유지	내용								
			의료취약계층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가사간병 도우미	소관부처	지원금액		지원	인원	1인당 지원금액			
		エピナバ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저소득계층		복지부	612	739	11124	10833	0.055	0.068		
		내용								
		사회적 일자리 제공 및 방문 도우미 서비스 제공								
	사회적 일자리 제공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	인원	1인당 제	[원금액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노동부	483	1215	8502	12000	0.057	0.101		
		내용								
		공익성 높은 일자리 제공(인건비 월77만원)								
	자활후견기관 기능 활성화	소관부처	지원		지원		1인당 제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복지부	261	270	1340	1340	0.195	0,201		
					내용					
		기관 운영비 지원								

## 〈부표 7〉 영유아

수혜대상	사업명	시업내용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소관부처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액				
		소선구서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여성부	988.8	1327.3	34940	36674	0.028	0.036			
		내용									
영유아		민간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8 में प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사업	소관부처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액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여성부	-	26.9	0	798	-	0.034			
		내용									
		돌보미 이용비용 지원									

## 〈부표 8〉 결혼 이민자

수혜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결혼 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액		
			2006	2007	2006	2007	2006	· 2007		
		여성부	-	19.2	0	208	-	0.092		
		내용								
겨충시INITI		결혼이민자가정 도우미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농촌여성결혼이 민자 지원	소관부처	지원	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액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농림부	0	19	0	300	1	0.063		
		내용								
			방문교육도우미 프로그램 지원							

### 〈부표 9〉

사업명	사업내용									
5대강	A 교니터 중1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액				
	소선무서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환경부	5	40	7	167	0.714	0.240			
[ 원경시점이	내용									
		환경지킴이 채용, 인건비 및 부대비								
	人과브ᅯ	지원	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액				
	エゼナバ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노이인자리 지위	복지부	520	763	83038	110000	0,006	0.007			
그 그 그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내용									
	일자리지원-월20만원보수 및 교육비 등 지원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사회적일자리)						1인당 지원금액				
	소관부처						2007			
	보지브						0.037			
	·-									
자활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1인당 지원금액			
	소관부처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복지부	0	0	0	0	-	_			
				내용						
		기초생	활보장수급		계층 1일 2-	3만원 지급				
	5대강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 지원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사회적일자리) 자활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관부처 환경부 환경부 보기부 보기부 보기부 보기부 보기부 보기부 보기부 보기부 보기부 보기	소관부처         지원           2006         환경부         5           환경부         5           소관부처         지원           2006         복지부         520           내활근로 (차상위계층 사회적일자리)         소관부처         지원           자활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소관부처         지원           소관부처         지원         2006           복지부         2245           사회적일자리)         조관부처         지원           소관부처         지원           조관부처         조엔	1 전	지원	지원 - 전 - 전 - 전 - 전 - 전 - 전 - 전 - 전 - 전 -	8			

#### ◆ 執筆陣

- 김주섭(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박성재(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일자리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 발행연월일 | 2008년 10월 27일 인쇄

2008년 10월 31일 발행

•발 행 인 박기성

• 발 행 처 **한국노동연구원**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35

☎ 대표 (02) 782-0141 Fax:(02) 786-1862

• 조판 · 인쇄 │ (주)이환 D&B (02) 2254-4301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등록번호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715-7